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충성 관련 보훈급여 공제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임완섭

김문길·곽윤경·이주미·변소연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임완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김문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 이주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곽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변소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보고서(수시) 2025-08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충성 관련 보훈급여 공제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141-7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b.2025.08>

발|간|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시행 이후 적용 범위의 확대와 보장 수준의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또한 도입 당시에는 통합급여 형태로 급여가 한꺼번에 제공되었지만,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현재까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욕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개별 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용 범위와 보장 수준 그리고 급여의 형태까지 광범위한 영역과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보충성의 원리는 아직 까지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훈제도는 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에서 대상자의 기여에 초점을 맞춘 사회보험과 기여와 상관없이 자산조사 등을 통해 급여가 실시되는 공공부조제도와는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는 제도이다. 하지만 보훈급여도 정부에서 정책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공적이전 소득의 한 종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에 필요한 소득평가액 산정에 있어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공적이전소득은 소득평가액 반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등은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는 급여들인데, 이러한 예외를 확대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적이전소득에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늘어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과 이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들이 받는 일부 급여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훈급여와 공공부조급여간의 관계성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제도 및 급여 간 정합성 제고에 필요한 특성 및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는 우리원의 임완섭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김문길 연구위원, 이주미 부연구위원, 곽윤경 연구위원, 변소연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로 이뤄졌다. 짧은 기간,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연구 결과는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연구자의 개별 연구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 | |
|-------------------------------|-----------|
| 요약 | 1 |
| 제1장 서론 | 3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5 |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7 |
| 제3절 보훈급여 공제 현황 | 11 |
| 제2장 미국 | 17 |
|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 19 |
|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 30 |
| 제3장 영국 | 41 |
|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 43 |
|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 49 |
| 제4장 호주 | 65 |
|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 67 |
|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 74 |
| 제5장 캐나다 | 95 |
|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 97 |
|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 100 |

| | |
|--|------------|
| 제6장 국가 간 비교 및 정책 함의 | 115 |
| 제1절 국가 간 비교 | 117 |
| 제2절 프랑스와 일본에서 전후 공공부조와 보훈 관계의 논의 | 128 |
| 제3절 정책함의 및 검토 사항 | 135 |
| | |
| 참고문헌 | 145 |
| | |
| Abstract | 155 |

표 목차



| | |
|---|-----|
| 〈표 1-1〉 보훈 급여 공제 현황 | 5 |
| 〈표 1-2〉 비교분석표(안) | 10 |
| 〈표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및 선정 기준 | 11 |
| 〈표 1-4〉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12 |
| 〈표 1-5〉 재원 마련 및 전달체계 | 13 |
| 〈표 1-6〉 공공부조제도와 보훈급여제도의 관계 | 14 |
| 〈표 1-7〉 보훈급여금 공제 현황 | 15 |
| 〈표 2-1〉 미국의 주요 자산조사 프로그램의 특징 | 19 |
| 〈표 2-2〉 미국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별 세부 선정 기준 | 21 |
| 〈표 2-3〉 2026 회계연도 기준 (2025. 10. 1~2026. 9. 30) 최대 월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급여액 | 24 |
| 〈표 2-4〉 전통적 혜택 및 대체 혜택 플랜(ABP)에 따른 Medicaid 필수 및 선택 혜택 예시 | 26 |
| 〈표 2-5〉 월별 최대 주거지원 금액 (2026년 1월부터 적용, 연례 재인증 기준) | 26 |
| 〈표 2-6〉 재향군인 복지 및 혜택 관련 법의 비교 | 31 |
| 〈표 2-7〉 미국 제대군인부(VA) 조직 구조 | 32 |
| 〈표 3-1〉 영국 기준 공공부조 급여 및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의 차이점 | 44 |
| 〈표 3-2〉 통합 크레딧(UC) 기본수당(월) | 47 |
| 〈표 3-3〉 통합크레딧의 아동 부가수당(2025/26년 기준) | 48 |
| 〈표 3-4〉 통합크레딧의 장애인 또는 건강 관련 부가수당(2025/26년 기준) | 48 |
| 〈표 3-5〉 전쟁장애연금(일시금): 2025년 기준 | 54 |
| 〈표 3-6〉 전쟁장애연금(연금): 2025년 기준 | 55 |
| 〈표 3-7〉 전쟁연금제도 급여 | 56 |
| 〈표 3-8〉 연령별 GIP factor | 59 |
| 〈표 3-9〉 상해 요율에 근거한 보상금 | 60 |
| 〈표 4-1〉 호주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 및 수급자 수 (2025.6.기준) | 69 |
| 〈표 4-2〉 노령연금 급여수준 | 71 |
| 〈표 4-3〉 구직자 수당 소득 및 자산 요건 | 72 |
| 〈표 4-4〉 구직자 수당 급여 수준 | 73 |
| 〈표 4-5〉 보훈부의 소득 지원 또는 보상 연금을 받는 순 총인구수 (2025년 9월 기준) | 76 |
| 〈표 4-6〉 복무연금(Service Pension) 급여 수준 | 78 |
| 〈표 4-7〉 DVA 지급액과 사회보장 목적상 소득으로 처리되는 방식 | 91 |
| 〈표 5-1〉 캐나다 장애연금 급여액: 장애등급별·가구 유형별(2025년 1월) | 1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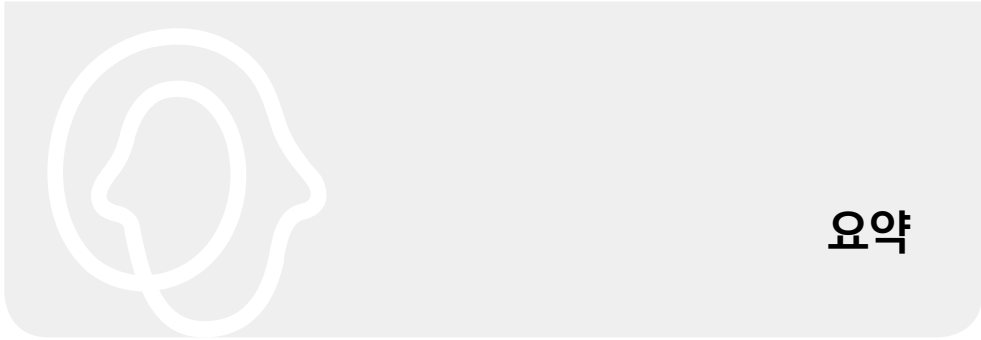
| | |
|--|-----|
| 〈표 5-2〉 고통·통증보상금(PSC)률에 따른 급여액(2023년 기준) | 107 |
| 〈표 5-3〉 추가 고통·통증보상금(PSC) 급여액(2025년 기준) | 108 |
| 〈표 5-4〉 피복수당 지급액(2025년 기준) | 109 |
| 〈표 5-5〉 특별장애수당 지급액(2025년 기준) | 110 |
| 〈표 5-6〉 간병수당 지급액(2025년 기준) | 111 |
| 〈표 6-1〉 공공부조와 보훈급여금의 관계 비교표 | 118 |
| 〈표 6-2〉 보훈급여금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공제 방향성 검토 | 143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그림 2-1] 2025년 3인 가구의 주별 TANF 월 최대 급여액 | 23 |
| [그림 3-1] 구 6개 공공부조 급여와 Universal Credit의 관계 | 44 |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적이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으로 반영이 원칙이지만,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는 보훈급여금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소득평가액으로 반영이 제외되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이 제외되어 있으며, 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보훈급여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에 주요 선진국의 보훈급여와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간의 관계성을 맥락적으로 파악하여, 보훈급여에 대한 공제 여부 및 방향성에 대한 근거자료 및 정책 함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보훈제도와 공공부조제도 급여 간의 관계와 주요 특성을 파악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보훈급여금의 공제 여부 및 정도 등 향후 보충성 적용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정책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정책 함의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를 사례로 공공부조 제도와 보훈급여 제도를 검토하였다. 사례국가로는 보훈과 공공부조 제도가 모두 발전된 선진국 중에서, 관련 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는데, 해당 국가들은 주로 영미형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는 공공부조 중심의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특성으로 한다. 사례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별 공공부조제도와 보훈제도의 주요 현황과 급여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프랑스와 일본에서 전후 공공부조와 보훈 관계의 논의 과정도 살펴보았다. 이 중 핵심은 공공부조 제도에서 보훈 관련 급여에 대한 소득 반영 여부의 정도인데, 해당 부문은 보훈급여 지급액을 공공부조의 선정 또는 지급과 관련한 소득산정에 포함하는지 여부, 전액 또는 일정 비율 반영 등 산정 방법, 보훈

급여와 공공부조를 선택하도록 하는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일부 국가(영국 등)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반영 여부도 검토하여 그 특성과 함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은 기본적으로 보훈급여를 공공부조 소득산정에 포함하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해주는 특정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장애 상태를 인정하여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의 재량권이 크므로 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프랑스에서도 기본적으로 보훈급여들이 공공부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만 추가비용 보전에 해당되는 간병가산 수당은 RSA의 소득산정에 제외된다. 영국과 호주는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일부)제외하고 있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최근 도입된 유니버설 크레딧(UC)에서는 전액 공제하는 반면, UC 이전의 급여에서는 일부만 공제하고 있다. 호주는 2022년 이후 제도 개편으로, 조정장애연금(ADP)으로 통칭되었던 4가지 재향군인 보상금에 대해 사회보장소득 심사가 면제되어, 더 이상 사회보장 소득자산조사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추가 지출을 보전하는 수당에 대해 공제하는 국가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이연금처럼 핵심적인 보훈급여금이 공제되지 않는다. 즉 모든 국가에서 모든 보훈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러한 적용은 보훈보상의 수준과 사회보장급여와의 관계 및 그 수준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사례를 볼 때, 현재 비공제되는 상이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한국의 보훈급여금에서 수당은 추가 지출 보전의 성격과 함께 대상별 보장수준을 제고하는 역할도 컸기 때문에, 상이등급이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적 공제는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가비용적 성격이 큰 수당의 경우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쳐 공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보훈급여 공제 현황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공적이전소득인 보훈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임(보충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등에 따른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 일부 보훈급여금이 예외적으로 소득 반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

-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의 경우 전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공제되고 있으며,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등은 일부 공제되고 있음.

• 보훈 급여 공제 현황

〈표 1-1〉 보훈 급여 공제 현황

| 구분 | 지원 제도 | 공제액 |
|----------------|-----------------------------------|----------------------|
| 소득 산정 제외 | 생활조정수당 | 전액 |
| | 참전명예수당 | 전액(1인가구 중위소득 20% 이하) |
| |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 전액 |
| | 생계지원금 | 전액 |
|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 장애인연금 수준 |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 장애인연금 수준 |
| | 상이 보훈대상자(본인) 보상금(2026년 예정) | 장애인연금 수준 |
| 소득 산정 | 보훈보상금 | 비공제 |
| |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고령수당, 전상수당, 간호수당 | 비공제 |
| | 무공영예수당, 6.25전몰자녀수당, 4.19혁명공로수당 | 비공제 |

자료: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 또한 상이 보훈대상자(본인) 보상금은 2026년부터 공제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보훈급여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상정되어 있음.

□ 하지만 보훈급여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공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작성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의 일부가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공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훈급여가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보훈급여는 금전적 기여와 가입 기간으로 결정되는 사회보험과 기여와 상관없이 자산조사 등을 통해 급여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공공부조와 구별되며, 보훈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보훈급여와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간의 관계성을 맥락적으로 파악하여, 보훈급여의 공제 여부 및 방향성에 대한 근거자료와 정책 함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소득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어, 관련 해외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여 정책판단의 근거자료로 제공

○ 주요 선진국의 보훈제도(급여 중심)와 공공부조제도 급여 간의 관계와 주요 특성을 파악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보훈급여금 공제 여부 및 정도 그리고 정책 방향성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적 함의 제시

- 일부 보훈급여가 예외적으로 소득 반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한 향후 부처의 정책 방향성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 사례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공공부조 제도와 보훈급여 제도의 개요
 - 사례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보훈제도의 주요 현황
 - 사례국의 공공부조 제도와 보훈제도의 주요 급여와 특성 제시
 - * 유럽 및 일본에서 전후 공공부조와 보훈제도 관계의 논의 포함

- 사례국 공공부조 및 보훈 급여의 세부 요건, 지급 금액, 소득 반영 여부 등 관계성 검토
 - 세부요건: 보훈급여 요건이 희생*(사망, 장애 등), 공헌, 참전, 노령, 본인·유족, 저소득 중 어느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분류할 수 있는 정보 포함
 - * 1) 희생과 공헌 유무와 무관하게 저소득 또는 노령 군인 일반에게 지원하는 급여는 우리나라의 보훈급여와 성격 상이
 - 2) 장애, 질병 등 관련 소득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추가 지출요인에 따라 소득제외 검토 가능 등
 - 소득 반영 여부: 보훈급여 지급액을 공공부조 시 고려 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전액 또는 일정 비율 반영 등 산정 방법, 보훈급여와 공공부조를 선택하도록 하는지 등을 검토
 - 위 언급된 사항 이 외에도 보훈급여와 공공부조 급여의 관계성 및 공공부조 급여수급 여부와 급여수준 설정에서 보훈급여 처리 관련 사항을 파악

- 사례국가 비교 연구 및 정책함의 도출
 - 국가별 사례를 공통의 분석 틀로 파악하여 비교
 - 사례국 간 비교를 통해 보훈급여의 소득평가액 산정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관련 함의 도출

2. 연구 방법

가. 연구 추진 방법

□ 문헌 고찰

- 주요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사례국의 보훈보상 및 공공부조 체계 파악
-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통해 정책함의 도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구축

□ 분석 제도 및 국가

- (제도) 유사 제도 간 비교를 위해, 타 국가 공공부조는 저소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여금 없이 현금 지원하는 제도 중심
 - 보훈급여 역시 별도 기여금이 없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조사
-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파악하되, 유럽 및 일본에서 전후 공공부조와 보훈제도 관계의 논의 포함
 - 사례국가는 보훈 및 공공부조 제도가 모두가 발전된 선진국 중에서, 부처의 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

□ 통계자료 분석

- 국가별 행정집계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공공부조와 보훈보상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제시
- 필요 시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분석하여 보훈대상자의 보훈보상과 복지 급여 수준의 실태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국내·외 사례 그리고 정책함의 도출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나. 사례연구 분석 내용

- 국가별로 주요 공공부조 제도와 보훈 제도의 주요 현황과 공공부조와의 관계 작성
- 국가별로 주요 공공부조 급여
 - 국가별 주요 공공부조 제도 현황 및 주요 내용: 국가별 상황에 따라 복수의 제도 작성
 - 개요: 제도명, 근거법
 - 제도의 성격(목적, 보상적 성격의 유무 등)
 - 연혁(간략히), 현황
 - 대상 및 선정기준
 -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기타: 자원, 전달체계
- 국가별 보훈 급여 현황 및 공공부조 급여와의 관계
 - 국가별로 주요 공공부조 급여(또는 대상선정)에 영향을 주는 보훈급여 조사
 - 해당 보훈급여 개요: 제도명, 근거법, 제도의 성격(목적, 보상적 성격의 유무 등), 주요 연혁, 현황
 - 대상 및 선정기준
 -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기타: 자원, 전달체계
 - 공공부조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훈제도(급여)와 해당 공공부조의 관계:
 - 공공부조에 영향을 주는 보훈급여의 세부 요건*, 소득 반영 여부**와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도 등(해당 보훈 급여가 대상자 선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포함), 해당 공제 후 공공부조 급여 수준 및 공공부조를 받는 보훈대상자 규모(통계나 관련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

10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충성 관련 보훈급여 공제에 대한 해외연구 사례

- 공공부조 수급 결정을 위한 소득 산정시 보훈급여가 제외된(또는 일부 공제된) 이유 또는 근거를 맥락적 차원에서 제시
- * 희생과 공헌 유무와 무관하게 저소득 또는 노령 군인에게 지원하는 급여는 우리나라의 보훈급여와 성격 상이
- ** 장애, 질병 등 관련 소득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추가 지출요인에 따라 소득제외 검토 가능 등

○ 비교 분석: 국가 간 비교 분석 및 정책 함의

- 비교분석표(안)

〈표 1-2〉 비교분석표(안)

| 국가 | 공공부조명 | 보훈급여명 | 급여성격 | 급여요건 | 지급금액 | 소득산정시 공제여부 및 범위 |
|----|-------|-------|------|------|------|-----------------|
| | | | | | | |

제3절 보훈급여 공제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5).
 - 비기여형 복지제도로 조세를 기반으로 하며,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함.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중에서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 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 등으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보건복지부, 2025).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재산·이전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가구의 총소득 수준을 의미함.
 - 부양의무자의 경우 가족 중 일정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하였으나, 2025년 기준 대부분 완화되어 부부·부모 중심으로만 적용됨.

〈표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및 선정 기준

| 주요 대상 | 선정 기준(2025년 기준중위소득 연계) | 급여 형태 | 비고 |
|--------------------------------------|--|-------|----------------------------------|
|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 능력 여부는 무관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 2025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9만 7,773원 | 현금+현물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부모·자녀 제외 대부분 완화) |

자료: “2025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5, 보건복지부 보고서 내용을 저자가 일부 수정함.

□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기준중위소득 연계, 가구규모 및 지역, 소득·재산 상황, 물가·생활비·정책방향에 따라 제도별 급여 수준이 결정됨(보건복지부, 2025).

12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충성 관련 보충급여 공제에 대한 해외연구 사례

- 기준중위소득 연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부여되며, 급여 수준 또한 기준중위소득에 연동되어 산정됨.
- 가구규모 및 지역: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이 급여액 산정 시 반영됨.
- 보충성 : 수급자로 선정되고 보장되기 전에 자신의 가용 자원(소득, 재산 등)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보건복지부, 2025, p.173)
- 물가·생활비·정책 방향 고려: 물가상승률, 노인·저소득층 생활실태 변화,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등이 급여 수준 및 기준 변경에 반영됨.

○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자격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급액이 결정됨.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자격기준 완화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경향이 있음.

〈표 1-4〉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구분 | 주여급여 | 급여 수준 |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 생계: 지급기준(중위 32%)-소득인정액 의료:본인부담 급여범위는 의료급여 규정 정를 따름 주거: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로 범위 교육:교육활동지원비 등 정액지원 |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생계32%, 의료40% 주거 48%, 교육 50%)을 적용해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 |

자료: “2025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5, 보건복지부 보고서 내용을 저자가 일부 수정함.

□ 기타(재원, 전달체계 등)

- 조세 기반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됨. 급여·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며, 비율은 급여·사업별 지침에서 매년 확정 공시됨(보건복지부, 2025).
- 접수·심사·지급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조사·지급 등 현장 집행을 담당함.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통합창구로 활용 가능함.
- 의료급여의 경우 요양기관이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및 평가 후 국고·지방비로 급여비가 지급됨.

〈표 1-5〉 재원 마련 및 전달체계

| 재원(재정조달 방식) | 전달체계(주관·집행·창구) |
|--|---|
| 일반회계 기반 국고보조사업(국비+지방비). 급여별로 국고 부담 비율이 정해져 지자체가 분담 | 소관:보건복지부/운영:시·군·구 창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급여별 집행은 지자체가 지급 관리 |

자료: “2025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5, 보건복지부 보고서 내용을 저자가 일부 수정함.

2. 보훈급여금과의 관계

가. 보훈급여금 개요

- 국가보훈제도는 전쟁·독립운동·공무수행 등으로 국가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및 그 유가족 등에 대해 예우·지원하는 제도임(국가보훈기본법, 2024).
 - 국가보훈부가 중심 부처이며, 국가보훈기본법 등 보훈 관련 법률에 근거
 - 보훈대상자 지원항목으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생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가 있음.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유족이 대상임.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개별 여건 등도 고려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항목으로 보훈 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기타지원 사망 시 예우 지원이 있음.
 - 독립유공자는 보상금, 사망일시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국립묘지 안장,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재원 및 전달체계
 - 보훈급여는 국가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재원이 마련됨.
 - 보훈부→기획재정부 협의→국무회의 심의→국회 예산 심의 및 확정 과정을 통해 예산이 편성됨.

- 보훈급여제도는 국가보훈부가 주관 기획·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
 - 보훈부 산하 또는 위탁된 기간 및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 자격 심사, 지급이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나 소속기관이 수혜자 접수 및 자격 조사 등을 담당하고, 보훈처 예산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차이점과 관계

- 공공부조 제도는 가구 소득·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보훈급여 제도는 보훈대상자에 대해 국가가 희생·공헌을 인정하여 예우·생활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자산기준 충족이 핵심이 아닌 희생과 공헌에 대한 공적 인정을 우선시 함.
- 보훈급여는 소득을 일부 반영하나 유공자 유형, 상이등급, 유족의 관계(배우자·자녀·부모), 사망 여부 등을 중시하며, 공공부조처럼 소득·재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음.

〈표 1-6〉 공공부조제도와 보훈급여제도의 관계

| 항목 | 공공부조제도 | 보훈급여 제도 |
|------------|--|--|
| 대상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보훈유공자로 인정된 본인 혹은 유족 등이 법률에 따른 유공자 등록 > 유공자 유형별로 선정기준이 다름 |
| 지급금액 | 유형별로 지급 금액이 다름 | 유형별로 지급 금액이 다름 |
| 소득반영 여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반영 | 일부 반영 |
| 지급 방식 및 조건 | 가구 단위로 신청·심사·급여지급이 이루어짐. 재산·소득 조사를 병행함 | 유형별로 다름 |
| 특이사항 | 매우 낮은 소득·재산 가구 중심->형평성·복지효과 중심 |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보상 차원 명예성과 복지성이 혼합된 제도로 유형·등급별로 차 등 있음. |

자료: “2025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5, 보건복지부 보고서;
 보훈부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0> 예우보상- 보훈대상 내용을 저자가 일부 수정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훈급여금은 공적이전소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보훈급여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공제되고 있음.

〈표 1-7〉 보훈급여금 공제 현황

| 보훈급여명 | 급여요건 | 지급금액 | 소득산정시 공제여부 및 범위 |
|---------------|------------------------------|---------------|-----------------------------|
|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 중 생계곤란 | 24.2~37만원 | 전액 |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자 | 45만원 | 전액 (1인가구 중위소득 20% 이하 금액) |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 참전자 중 후유의증 | 59.6~123.4만원 | 장애인연금 수준 (25년 43.3만원)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 고엽제후유증자 2세 환자 | 137.1~219.8만원 | 장애인연금 수준 (25년 43.3만원) |
| 보훈보상금 | 전사, 순직자 및 상이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 45.6~754.7만원 | 비공제 |
| 부양가족수당 | 부양가족 있는 보상금수급자 | 10만원 | 비공제 |
| 고령수당 | 60세 이상 보상금수급자 | 9.7만원 | 비공제 |
| 무공영예수당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 51~53만원 | 비공제 |
| 6·25전몰자녀수당 | 6.25 전사자 자녀 | 58.5~169.4만원 | 비공제 |
| 4·19혁명공로수당 | 4.19 건국포장자 | 46.1만원 | 비공제 |
| 간호수당 | 간호 필요 중상이자 | 214~321만원 | 비공제 |
| 중상이부가수당 | 중상이자 | 122.1~289.9만원 | 비공제 |
| 전상수당 | 전쟁 중 상이 | 9만원 | 비공제 |

자료: 보훈부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0> 예우보상- 보훈대상 내용을 저자가 일부 수정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미국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제 2 장 미국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1. 개요

- 미국의 공공부조는 단일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 제도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음 (usa.gov, 2025).
-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현금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80여개 정도의 반빈곤프로그램이 존재(임완섭 외, 2015)
-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보충적소득보장(SSI),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의료부조(Medicaid), 주거 지원 등이 있음 (임완섭 외, 2015).

〈표 2-1〉 미국의 주요 자산조사 프로그램의 특징

| 구분 | 프로그램명 | 연방관할 부처 | 주 운영 주체 | 주요 대상 |
|-------|---------------------------|------------------------|-----------------|--------------------------|
| 현금 지원 | 빈곤가정일시부조 (TANF) | 보건복지부 (HHS) | 주정부 복지기관 | 부양 자녀가 있는 극빈 가구 |
| | 보충적소득보장 (SSI) | 사회보장국 (SSA) | 사회보장국 (SSA)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시각장애인 |
| 식품 지원 |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SNAP) | 농무부 (USDA) | 주정부 복지기관 | 저소득 가구 |
| 의료 지원 | 의료부조 (Medicaid) | 보험청 (CMS),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 | 주정부 의료기관 | 저소득 아동, 임산부, 성인, 노인, 장애인 |
| 주거 지원 | Public Housing & Vouchers | 주택도시개발부 (HUD) | 지역 공공주택기관 (PHA) | 저소득 가구 |

자료: Burke, V. (2001). Cash and non-cash benefits for persons with limited income: Eligibility rules, recipient and expenditure data, FY1998-FY200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Medicaid.gov. (2025). About us. <https://www.medicaid.gov/about-us> ; Moffitt, R. A. (2003). Welfare programs and labor supply (NBER Working Paper No. 916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9168/w9168.pdf ; Moffitt, R. A. (Ed.). (2003). Introduction. In Means-tested transf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pp. 1-1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we, G., & Roberts, T. (2002). Welfare rules databook tables: State policies as of July 2000. Urban Institut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Ways and Means. (2000). Background material and data on program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각각의 제도들은 미국 보건복지부, 농무부, 주택도시개발부, 사회보장국 등 여러 연방 부처와 주정부에 의해 분절적으로 관리
- 정리하면, 각기 다른 입법적 근거와 자원, 행정 규칙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파편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미국 공공부조 시스템의 핵심 특징임.
 - 이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는 현금, 식품, 주거 등 각기 다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복잡한 관료 체계를 개별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겪게 됨.
 - 이는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함.

2. 대상 및 선정 기준

□ 공통적인 선정 기준

○ 소득과 자산 기준

- 대부분 공공부조 제도는 연방정부가 매년 가구 규모에 따라 발표하는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FPL)을 기준으로 소득 상한선을 설정
 - 프로그램별로 소득상한선은 다소 차이를 보임.
 - 예를 들어, 의료부조(Medicaid)는 2014년 「환자보호와 부담적정보험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 P.L. 111-148, 개정됨)」에서 연방빈곤선(FPL)의 133% 이하 소득을 가진 비고령 성인을 대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congress.gov, 2025.4.30)
- 소득뿐만 아니라 신청 가구가 보유한 현금, 은행 예금, 주식 등의 유동 자산 (liquid assets)이 일정 한도 이하여야 함.

○ 시민권 및 체류 신분

- 모든 연방 공공부조 제도의 혜택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적격 외국인에게만 제공
 - 적격 외국인이란 연방 법률에 따라 정의된 특정 이민 신분을 가진 자로,

영주권자(LPR), 난민, 망명자, 특정 조건의 입국 허가자(parolee) 등을 포함(Federal Student Aid, 2025).

- 1996년 복지개혁법(PRWORA)에 따라, 1996년 8월 22일 이후 미국에 입국한 대부분의 적격 외국인인 연방 공공부조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함. 단,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 인도주의적 이민자는 이 규정에서 면제(ACF, 2025.7.8)

□ 주요 공공부조 제도별 세부 선정 기준

○ 프로그램별 세부 선정 기준은 아래 <표 2-2>와 같음.

<표 2-2> 미국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별 세부 선정 기준

| 구분 | 프로그램명 | 소득 | 자산 |
|-------|--------------------|--|--|
| 현금 지원 | 빈곤가정 일시부조 (TANF) | 주정부가 소득 상한선, 공제 항목 등 세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계하므로 주별 편차가 매우 큼. | 주정부가 자산 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므로 주별 편차가 매우 큼. |
| | 보충적 소득보장 (SSI)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 월 최대 급여액(FBR)에서 법정 공제액을 제외한 산정 소득을 차감하여 지급액을 결정함.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2025년 기준 개인 월 967달러, 부부 월 1,450달러를 수령함. | 전국적으로 통일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2025년 기준 자산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이며, 이 한도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지 않아 수십 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음. |
| 식품 지원 |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NAP) | 가구의 총소득(Gross Income)이 FPL의 130% 이하, 각종 공제 후 순소득(Net Income)이 FPL의 100% 이하 | 연방 차원에서 대부분의 가구에 대한 자산 심사가 면제되었으나, 일부 주는 여전히 자체 기준을 적용하기도 함. |
| 의료 지원 | 의료부조 (Medicaid) | 연방 최소 기준이 있으며, 주정부가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어 주별 편차가 큼. (임산부) 연방 최소 기준은 FPL 133% 이상, 대부분의 주에서 FPL 200% 내외까지 확대 적용 (아동) 연방 최소 기준은 FPL 133% 이상이며,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과 연계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FPL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 (ACA 확대성인) ACA Medicaid 확대를 채택한 주에서는 소득이 FPL 138% 이하인 모든 성인(부양 자녀 유무, 장애 유무와 무관)에게 자격을 부여 | 임산부, 아동, 저소득 부모 등 MAGI (수정 조정 총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그룹은 일반적으로 자산 심사가 면제됨. 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Non-MAGI 경로를 통해 자격을 얻는 경우, 대부분 주에서 자산 한도를 적용함. |

| 구분 | 프로그램명 | 소득 | 자산 |
|-------|---------------------------|---|---|
| 주거 지원 | Public Housing & Vouchers | 지역공공주택기관(PHA)은 HUD가 설정한 소득 기준, 즉 지역중위소득(AMI)의 50% (very low-income) 또는 80% (low-income) 이하인 가구를 주된 대상 | 명시된 연방 차원의 통일된 자산 기준은 없으나, 각 지역 공공주택기관(PHA)이 자체 규정을 둘 수 있음. |

자료: congress.gov(2025.9.29.)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A Primer on Eligibility and Benefits,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2505> ; congress.gov (2025.2.26.)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482>; congress.gov (2025.4.30) Medicaid: An Overview,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3357> ; KFF (2025.10.8.) Medicaid 101, <https://www.kff.org/medicaid/health-policy-101-medicaid/?entry=table-of-contents-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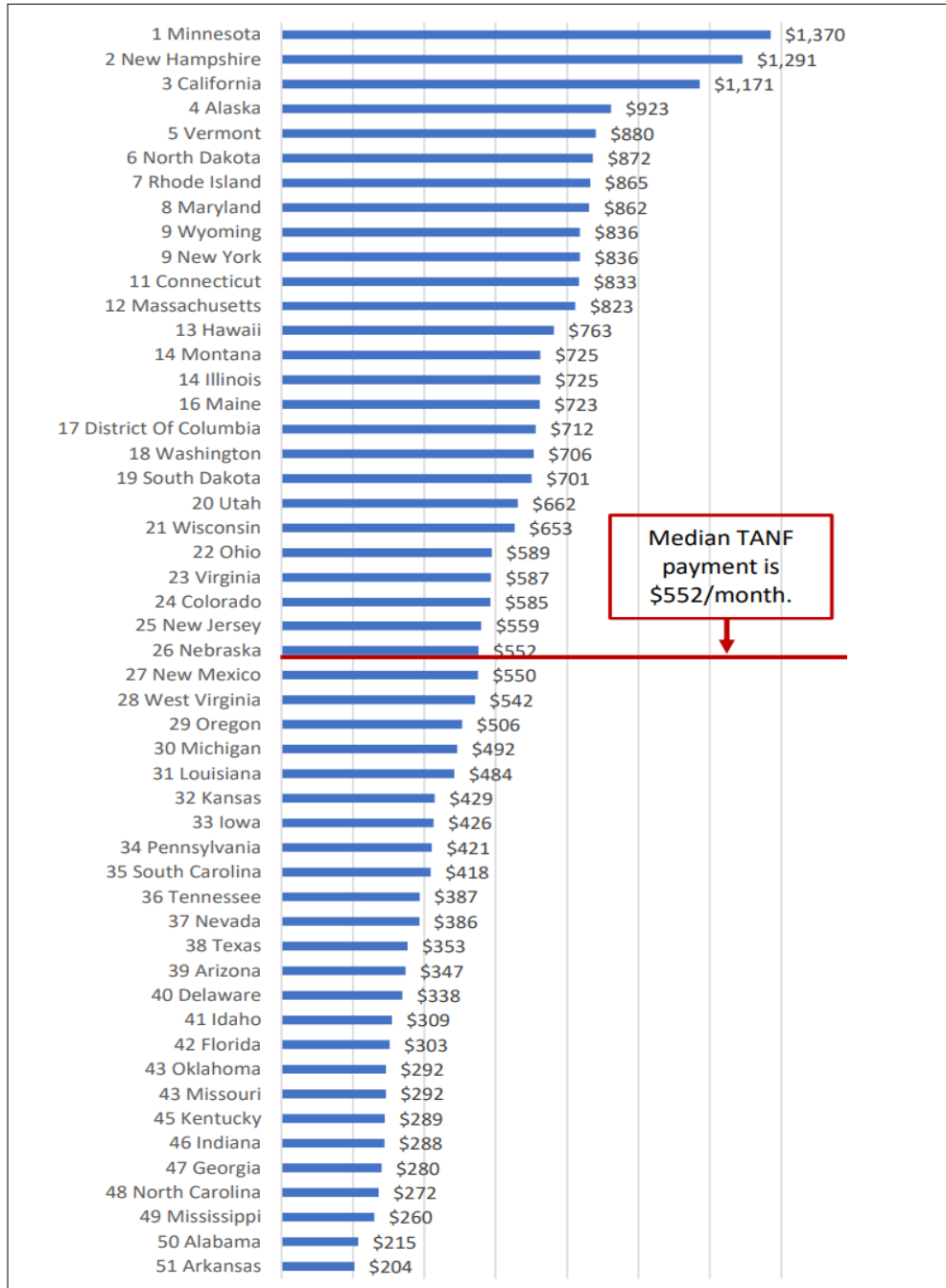
3.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주요 프로그램별 급여 수준 및 산정 방식

○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 연방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종 소득 기준과 수급액은 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마다 수급액의 차이가 발생(임완섭 외, 2015, p.148).
- 주마다 기준이 달라 소득 등에 따라 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이하며, 몇 개월 이상 등 일정 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액이 삭감되어 지급됨.
- 구성원 수에 의해 지급액은 상이하며, 오직 위스콘신과 아이다호의 경우에 가족 수에 상관없이 수급액이 일정

[그림 2-1] 2025년 3인 가구의 주별 TANF 월 최대 급여액



자료: nccp (2024) A 50-State Comparison of TANF Amounts ,
<https://www.nccp.org/wp-content/uploads/2024/11/TANF-Benefit-Amounts-2024-FINAL.pdf>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 월 급여액은 가구의 식비 부담 예상액과 최대 급여액의 차이로 계산
(congress.gov, 2025.9.29)
- 순현금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급여액을 받는 반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구는 최대 급여액에서 순소득의 30%를 뺀 금액을 받음.
- 월 급여액 = 월 최대 급여액 - (가구의 월 순소득 × 0.30)

〈표 2-3〉 2026 회계연도 기준 (2025. 10. 1~2026. 9. 30) 최대 월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급여액

| Household size | 48 States and DC | Alaska ^a | Hawaii | Guam | U.S. Virgin Islands |
|------------------------|------------------|---------------------|--------|-------|---------------------|
| 1 person | \$298 | \$385 | \$506 | \$439 | \$383 |
| 2 people | 546 | 707 | 929 | 806 | 703 |
| 3 people | 785 | 1,015 | 1,334 | 1,157 | 1,009 |
| 4 people | 994 | 1,285 | 1,689 | 1,465 | 1,278 |
| 5 people | 1,183 | 1,529 | 2,010 | 1,743 | 1,521 |
| 6 people | 1,421 | 1,838 | 2,415 | 2,095 | 1,827 |
| 7 people | 1,571 | 2,031 | 2,668 | 2,315 | 2,019 |
| 8 people | 1,789 | 2,314 | 3,040 | 2,637 | 2,300 |
| Each additional person | 218 | 282 | 371 | 322 | 281 |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2025).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Fiscal year 2026 cost-of-living adjustments (pp. 4-5). <https://fns-prod.azureedge.us/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snap-cola-fy26memo.pdf>

○ 보충적 소득보장(SSI)(congress.gov, 2025.2.26.)

- 월 급여액 = 월 최대 FBR - 월 산정 소득
 - 산정 소득은 총소득에서 법으로 정해진 각종 공제(예: 월 소득 첫 20달러 공제, 근로소득 첫 65달러 및 초과분의 50% 공제)를 반영한 금액임
-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소득이 없는 수급자의 연방 최대 급여액 (FBR)은 개인 월 967달러, 부부 월 1,450달러임
 - 일부 주는 연방 급여에 더해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state supplement)을 추가로 지급하여 급여 수준을 높이기도 함.
- 최대 급여액과 실제 평균 수령액의 차이(congress.gov, 2025.2.26)
 - 실제로 많은 수급자들이 사회보장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실제로는 최대치보다 적은 금액을 받음. 예를 들어, 2025년 1월 기준 전체 수급자의 평균 연방 SSI 수령액은 월 714달러임. 특히 사회보장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은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수령액은 월 590달러로 더 낮음.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소득 공제액(월 20달러, 근로소득 65달러)과 자산 한도(2,000달러 /3,000달러)가 수십 년간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고 거의 고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공제 및 한도의 실질 가치가 크게 하락

○ 의료부조(Medicaid)

- 급여 형태는 현금이 아닌 의료 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함.
- 각 주정부는 연방 법률이 정한 필수 혜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재량에 따라 선택 혜택을 추가할 수 있음(<표 2-4> 참조) (congress.gov, 2025.4.30).

〈표 2-4〉 전통적 혜택 및 대체 혜택 플랜(ABP)에 따른 Medicaid 필수 및 선택 혜택 예시

| 혜택 유형 | 전통적 혜택 | 대체 혜택 플랜 (ABP, alternative benefit plan) |
|-------|--|--|
| 필수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병원 서비스 • EPSDT (21세 미만) • 연방정부 지정 의료기관 서비스 • 가족 계획 서비스 • 응급 및 비응급 의료 교통수단 • 임신 관련 서비스 • 요양 시설 돌봄 (21세 이상) • 의사 진료 서비스 • 재가 의료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서비스 • 조기 및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 서비스 (21세 미만) • 연방정부 지정 의료기관 서비스 • 가족 계획 서비스 • 응급 및 비응급 의료 교통수단 • 산모 및 신생아 돌봄 • 예방 서비스 • 처방약 • 재활 서비스 •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 |
| 선택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 진료소 서비스 • 처방약 • 물리, 작업, 언어 치료 서비스 • 성인 치과 서비스 • 개인 돌봄 서비스 | <p>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하위 그룹의 경우, 전통적 혜택을 받거나 ABP 플랜에 등록할 수 있는 옵션 제공</p> |

자료: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n.d.). Title XIX of the Social Security Act and related federal guidance.

○ 주거 지원

- 바우처 지급기준 및 공공요금 보조금 지급 기준표는 뉴욕시 주택공사 (NYCHA)가 바우처 소지자 대신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최대 보조금 금액임.
- NYCHA의 지급 기준표는 주택도시개발부가 정한 주택 규모별 적정시장임 대료(Fair Market Rent)를 기준으로, 공시된 FMR의 90~110%에서 설정
 - NYCHA의 2025년 7월 1일 기준 지급 기준액은 다음과 같음.

〈표 2-5〉 월별 최대 주거지원 금액 (2026년 1월부터 적용, 연례 재인증 기준)

(단위: 개, 달러)

| 침실 수 | 0 | 1 | 2 | 3 | 4 | 5 | 6 | 7 | 8 |
|--------|-------|-------|-------|-------|-------|-------|-------|-------|-------|
| 지급 기준액 | 2,646 | 2,762 | 3,058 | 3,811 | 4,111 | 4,728 | 5,345 | 5,962 | 6,579 |

자료: <https://www.nyc.gov/site/nycha/section-8/voucher-payment-standards-vps-utility-allowance-schedule.page>

- 수급자는 지급 기준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총 임대료 부담이 조정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함(nyc, n.d.).

4. 자원 및 전달체계

□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 자원

- 연방정부

- 주정부에 정해진 액수의 총액 교부금(Block Grant) 형태로 예산을 지원 (ASPE, 2025)
- 연방 차원의 TANF 지출은 연간 165억 달러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1996년 개혁 이전 프로그램의 1995년 회계연도 지출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ASPE, 2025)

- 주정부

-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정부는 1994년 회계연도에 빈곤 가구에 지출했던 주정부 예산의 최소 75%를 TANF 관련 활동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함(근로참가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80%로 상향)(ASPE, 2025; 임완섭 외, 2015, p.149).

○ 전달체계

- 주정부의 재량권

- 연방 가이드라인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 이에 따라 주정부가 직접 소득 및 자산 기준, 급여 수준, 근로 요건 등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ASPE, 2025)

- 지방정부(카운티)

- 신청 접수와 자격 심사 등의 행정 업무는 주의 감독하에 카운티 지원 사무소(County Assistance Office) 또는 지역 사회 복지부(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를 통해 수행(Purdy, 2025)

- 급여 전달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월별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 (Purdy, 2025)

□ 보충적 소득지원 (SSI)

○ 재원

-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주된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 조세 수입으로 충당 (congress.gov, 2025.2.26)
- 주정부는 기본 재원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각 주정부의 사정에 따라 연방 급여에 더해 주정부 차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여 주별 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congress.gov, 2025.2.26).

○ 전달체계

- 연방정부 기관인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이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congress.gov, 2025.2.26.)
- 사회보장국(SSA)은 직접 자격이 있는 개인(65세 이상 노인, 시각장애인, 중증 장애인)에게 월별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SNAP)

○ 재원

- 연방정부가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급여 재원의 100%를 연방기금으로 부담 (Jones, 2025.7.24)
- 급여 자체는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하지만,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담(Jones, 2025.7.24)

○ 전달체계

- 주정부는 연방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 구체적으로 주정부 또는 카운티의 사회복지기관(human services department)이 신청접수, 자격심사, 급여계산 및 발급업무를 수행(Jones, 2025.7.24)
- 급여는 현금이 아닌 전자급여이체 카드로 월별로 지급되며, 지정된 식품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Jones, 2025.7.24.).

□ 의료부조(Medicaid)

○ 재원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동기금으로 재원을 부담
- 주정부가 의료비를 먼저 지출하면, 연방정부는 연방 의료 지원 비율에 따라 정해진 비율(최소 50% 이상)만큼 주정부에 상환하는 매칭펀드 방식임 (Rudowitz et al., 2025.10.8; 임완섭 외, 2015, p.158).

○ 전달체계

-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면서, 자체적인 추가 자격 그룹 설정, ACA 확대 여부 결정 등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Rudowitz et al., 2025.10.8; 임완섭 외, 2015, p.158)
- 급여 전달은 서비스 대가 지불과 관리 의료로 나뉨(congress.gov, 2025.4.30).
 - 주정부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병원, 의사)에게 진료 건당 비용을 직접 지불
 - 주정부가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1인당 일정액을 지불하면, 민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 담당

□ 주거 지원

○ 재원

-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가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청으로 배정하여 이들이 관리를 담당(HUD, n/d)

○ 전달체계

- 전국의 약 3,800개의 지역 공공주택청이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 (Enterprise, 2019)
- 급여 전달은 공공주택과 주택선택바우처로 구성(HUD, n/d)
 - 공공주택청이 소유 및 관리하는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직접 임대
 - 공공주택청이 자격 있는 가구에 바우처를 발급. 가구는 민간 임대 시장에서 직접 주택을 찾고, 공공주택청이 보조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1. 개요

□ 역사¹⁾

○ 초기 (1636 ~ 1930년)

- 1636년:미국 보훈제도의 시초. 플리머스 식민지(Pilgrims of Plymouth Colony)가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군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 1776년: 독립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한 연금 지급 법률이 제정되며 처음으로 제도화됨.
- 1862년: 일반연금법(The General Pension Act) 제정. 남북전쟁 참전 용사 및 평시 복무자 그리고 그 유족(미망인, 자녀)까지 혜택을 확대

○ 발전 (1930 ~ 2000년)

- 세계대전, 한국 및 베트남 전쟁, 걸프전쟁 등을 거치면서 참전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발전함.
-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제대군인처(Veterans Administration)를 내각(Cabinet) 지위로 격상하는 법안에 서명
- 1989년 내각의 14번째 부서인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로 공식 출범함.

○ 현대 (21세기 이후)

- 이라크 전쟁(2003-2011)과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21)의 참전용사 까지 보훈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장됨.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이 현대 보훈법의 중요 부분으로 다뤄짐.

1) 노기호, 박철수, 2025 & 박혜란, 2010 & 황정하, 2013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관련 법령

○ 기본 법령은 미국 연방 법률 제38편(Title 38, U.S.C.)으로 이는 미국의 모든 보훈 관련 법령의 근간이 됨.

- 여기서는 보훈대상자의 장애 보상, 의료 혜택, 교육 지원, 취업 및 재고용 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을 규정함(노기호·박철수, 2025).

○ 주요 법령

- 재향군인 복지 및 혜택 관련 대표적인 법은 1958년 제정된 미국 재향군인 지원법(Veterans Benefits Act), 2008년 제정된 Post-9/11 GI Bill (2008), 1984년 제정한 Montgomery GI Bill이 있음(〈표 2-6〉 참조).

〈표 2-6〉 재향군인 복지 및 혜택 관련 법의 비교

| | Veterans Benefits Act (1958) | Post-9/11 GI Bill (2008) | Montgomery GI Bill (1984) |
|----------|------------------------------|---|--------------------------------|
| 주요 목적 | 참전용사 전체 혜택 | 교육 지원 (9/11 이후 복무자) | 교육 지원 (현역·예비역) |
| 법적 근거 | Title 38 U.S.C. | Post-9/11 Veterans Educational Assistance Act of 2008 | Montgomery GI Bill Act of 1984 |
| 학비 지원 방식 | 일부 교육 지원 포함 | 대학에 직접 지급 | 학생이 납부 후 상환 |
| 생활비 지원 | 해당 없음 | 가능 (MHA 지급) | 불가능 |
| 사용 기한 | 해당 없음 | 15년 (또는 무제한) | 전역 후 10년 |

자료: 노기호, 박철수 (2025), 한국과 미국의 보훈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p. 16.

- 장애보상 및 의료지원법

- 상이군인 보상법(Disabled Veterans' Compensation Act), 재향군인 건강관리법(Veterans' Health Care Eligibility Reform Act), 재향군인 및 간병인 지원법(Caregivers and Veterans Omnibus Health Services Act of 2010) 등이 있음(노기호·박철수, 2025).

- 재향군인 고용 및 차별 방지 관련 법

- 재향군인 재고용 권리법(Uniformed Services Employment and

Reemployment Rights Act, USERRA),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재향군인 기회 확대법(Veterans Opportunity to Work(VOW) to HireHeroes Act of 2011) 등이 있음 (노기호·박철수, 2025).

□ 정부 조직

-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장관급 조직으로, 제대군인의 건강관리(Veterans Health Care), 제대군인 연금(Veterans Benefits), 국립묘지(National Cemeteries) 등 크게 3개 업무를 소관(US Department of Veteran Affaris, 2025a)

〈표 2-7〉 미국 제대군인부(VA) 조직 구조

| 구분 | 제대군인의료처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VHA) | 제대군인보상처 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VBA) | 국립묘지 관리처 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NCA) |
|-------|---|---|---|
| 주요 활동 | 미국 최대 규모의 통합 의료 시스템 운영 수술, 중환자 치료, 정신 건강, 정형외과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연간 830만 명 이상의 재향군인 진료 | 초기 재향군인 등록 및 자격 여부 결정 5가지 주요 비(非)의료 혜택 라인 관리 (주택 용자 보증, 보험, 직업 재활 및 고용, 교육, 보상 및 연금) | 재향군인과 그 가족에게 국립묘지 안식처와 기념 헌사 제공 총 530만 명(재향군인 400만 명 포함) 안장 410만 개의 묘지 관리 |
| 인력 | 약 371,000명의 의료 전문가 및 지원 인력 고용 | 33,400명 | |
| 주요 시설 | 172개 의료 센터 1,138개 진료소 (sites of care) | | 155개 국립묘지 운영 약 23,000에이커의 토지 관리 |

자료: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25a) VA Structure, [https://www.ruralhealth.va.gov/aboutus/structure.asp#:~:text=VA's%20Administrations,%2C%20their%20families%2C%20and%20survivors](https://www.ruralhealth.va.gov/aboutus/structure.asp#:~:text=VA's%20Administrations,%2C%20their%20families%2C%20and%20survivors;);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24.5.2.) VBA embracing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to enhance customer experience, [https://news.va.gov/130935/vba-embracing-organizational-transformation-to-enhance-customer-experience/#:~:text=When%20it%20came%20to%20the,our%20workforce%20to%2036%2C000%20employees](https://news.va.gov/130935/vba-embracing-organizational-transformation-to-enhance-customer-experience/#:~:text=When%20it%20came%20to%20the,our%20workforce%20to%2036%2C000%20employees.).

- 2024년 9월 기준, 미국 연방 제대군인부 공무원은 482,381명으로, 전체 연방 인력 대비 20.9%를 차지함 (USAFacts, 2025).

- 이는 미국 연방정부 전체 민간 인력 5명 중 1명(약 21%)이 제대군인부 소속 임을 의미하는 막대한 규모임.
- 2010년 이후, 부처 인력이 56.4%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제대군인부가 연방정부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위상이 크게 확대됨.

□ 보훈 예산

- 2024년도 기준, 총지출액은 3,250억 달러로, 연방정부 전체 지출(6조 7,800억 달러) 대비 4.8% 비중을 차지함 (USAFacts, 2025).
- 제대군인부 예산은 1980년대 이후 일부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
- 2024년 기준 제대군인부 지출 규모는 연방기관 중 5위에 해당함.
 - 참고로 2024년 연방정부 지출 상위 기관은 보건복지부(25.4%), 사회보장청(22.4%), 재무부(19.5%), 국방부(13.5%) 순임.

2.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자는 재향군인이고, 그들의 가족 및 현역 복무 시절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함(US Department of Veteran Affairs, 2025a).
 - 유가족 역시 부처의 3개 행정청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대상임.
 - 제대군인보상처(VBA)는 재향군인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에게도 총체적 생애주기적 관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선정은 제대군인보상처(VBA)에서 모든 혜택(의료, 연금, 장묘 등)을 받기 위한 자격 심사 및 최초 등록을 담당(US Department of Veteran Affairs, 2025a)
 - 최종 선정된 자는 제대군인보상처에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국립묘지 관리처에 안장 자격을 요청하거나, 제대군인보상처에 각종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3.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장애보상금 (Disability Compensation)

○ 결정 방법

- VA가 판정한 장애 등급(10~100%)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월 지급액이 결정됨(congress.gov, 2025.10.30; USA Facts, 2024.8.20).

○ 급여 수준 (2025년 2.5% COLA 반영 기준) (VA, 2024.12.2)

- 장애등급 10%(월 175.51달러) ~ 장애등급 100% (월 3,831.30달러)
- 급여액은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유무에 따라 법정 금액이 추가로 가산됨.

□ 재향군인 연금 (Veterans Pension)

○ 결정 방법

- 정부가 정한 최대 연간 연금액에서 수급자의 산정 소득을 뺀 차액을 지급함 (VA, 2024.12.2).

○ 급여 수준 (2025년 기준)

- 부양가족이 없는 재향군인은 최대 연간 지급액: 연 16,965달러(월 1,413달러)
- 부양가족, 간호수당(A&A) 자격 등에 따라 최대 연간 지급액이 인상됨(VA, 2024.12.2).

□ 간호수당 (Aid and Attendance, A&A)

○ 결정 방법

- (재향군인 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의 최대 연금액이 간호수당 등급으로 인상(Senior Veterans Service Alliance, n/d)

○ 급여 수준 (2025년 기준)

- 부양가족이 없는 재향군인 당사자는 최대 연간 연금액이 월 1,413달러 (기본)에서 월 2,358달러로 인상됨. 즉, 간호수당으로 약 월 945달러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음(Senior Veterans Service Alliance, n/d).

4. 공공부조와의 관계:

공공부조와 보훈급여의 세부 요건, 지급 금액, 소득 반영 여부 등

□ 미국 제대군인부의 소득 평가 방법

○ 보훈급여의 이중적 성격

- (1) 보상적 급여 - 장애보상금

- 군 복무와 직접 연관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재향군인의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비자산조사) 오직 장애등급(10 ~100%)에 따라서만 지급(VA, 2024.12.2)

- (2) 보충적 급여 - 재향군인연금

- 복무와 연관이 없는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인 저소득 재향군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 의회가 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자산조사 기반의 보충적 지원(VA, 2025.7.18)

○ 공공부조 소득 산정의 기본 원칙

- 소득으로 산정(원칙적 비공제)

- 미국의 대표적인 연방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상기 두 가지 유형의 보훈급여 모두를 비근로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산정함.

- 보충적 소득보장(SSI) : 장애보상금과 재향군인 연금 모두 소득으로 산정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 장애보상금과 재향군인 연금 모두 소득으로 산정됨.

□ 주요 공제 항목 (예외): 추가 지출 요인의 선별적 공제

- 미국 시스템은 보훈급여 자체를 제외하기보다,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해주는 특정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장애 상태를 인정하여 추가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임.

- (보충적 소득보장, SSI) 간호 수당(A&A)의 소득산정 예외

- 근거: 사회보장국(SSA) 정책은 급여 중 간호 수당(Aid and Attendance)

및 재가 수당(Housebound)으로 지급되는 추가 금액을 보충적 소득보장의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제도의 목적: 이 수당은 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이 아니라, 간병인 고용 등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특수 목적 급여로 간주되므로 소득에서 전액 제외됨.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SNAP) 장애인 자격 부여를 통한 의료비 공제

- 근거: 장애보상금(또는 연금)을 받는 재향군인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규정상 장애인으로 자동 분류될 수 있음.
- 추가 지출요인 공제: 이 장애인 자격은 일반 수급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월 35달러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함. 즉, 보상금 자체는 소득으로 잡히지만, 그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의료 비용을 소득에서 다시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충성을 조정함 (TN.GOV, n/d).

○ (빈곤가정일시부조, TANF) 주별 상이한 처리

- 근거: 빈곤가정일시부조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총액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정부의 재량권이 매우 큼.
- 주마다 정책이 상이함.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는 보충적사회보장(VA 급여의 영향을 받아 감액된)을 받는 아동을 빈곤가정일시부조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아동의 소득(SSI)도 산정하지 않는 대신,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만큼(예: 2인 -> 1인)의 급여를 지급함.

□ 세부 항목별 공공부조와의 관계

○ 장애보상금 (Disability Compensation)

- 보충적소득보장(SSI)과의 관계
 - 비근로 소득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특별 공제는 없음(congress.gov, 2025.2.26).
 - 공제 후 급여 수준은 보충적소득보장의 월 최대 급여액(2025년 개인 967

달러)에서 20달러(일반 소득 공제)를 공제한 뒤, 남은 제대군인부의 보상금은 산정 소득으로 처리되어 그 금액만큼 보충적소득보장 지급액에서 차감됨(SSA.GOV, n/d).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과의 관계
 - 비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비공제
 - 제대군인부 장애보상금 수급자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규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 이 자격은 (1) 더 높은 자산 한도를 적용받게 하고, (2) 월 35달러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함(FRAC, 2023).

○ 재향군인 연금 (Veterans Pension)

- 보충적소득보장(SSI)과의 관계
 - 비공제 (소득으로 산정). 보충적소득보장과 제대군인부 연금은 둘 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조사 기반 현금 지원임(congress.gov, 2025.2.26).
 - 사회보장국(SSA)은 제대군인부 연금을 비근로 소득으로 간주, 20달러(일반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1:1로 삭감함(congress.gov, 2025.2.26).
 - 재향군인 연금(월 1,413달러)이 SSI 최대 급여액(967달러)보다 높아, 제대군인부 연금을 받으면 보충적소득보장 급여는 0이 되므로 사실상 동시 수급이 어려움(congress.gov, 2025.2.26).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과의 관계
 - 소득 산정 시, 비근로 소득으로 포함됨.
 - 제대군인부의 연금 수급자는 자격 요건상(65세 이상 또는 장애) 노인(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의 특별 규칙(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FRAC, 2023).

○ 예외 - 간호수당 (Aid and Attendance, A&A)

- 보충적소득보장(SSI)과의 관계
 - 소득 반영 여부: 전액 공제 (소득으로 미산정)

- 사회보장국 정책 매뉴얼은 제대군인부의 간호 수당 및 재가수당을 보충적 소득보장 목적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함(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12.5.17).
- 생활비가 아닌,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 비용(예: 간병인 고용)을 보전하기 위한 특수 목적 급여로 간주되므로 소득에서 전액 제외됨(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12.5.17).
-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과의 관계
 - 소득 반영 여부: 주별로 상이함(Hanson and Andrews, 2009).
 - 보충적소득보장(SSI)과 달리,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은 연방 차원에서 간호수당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주정부의 해석에 따라 다름.
 - 예를 들어, 뉴욕주는 간호수당을 보전이 아닌 정기 소득으로 보아,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소득 산정 시) 전액 소득으로 포함 (비공제) (New York State, 2014.11.10).

5. 재원 및 전달체계

□ 장애보상금

- 재원: 연방정부 일반 세수(납세자 세금). 연방 예산의 의무 지출로 분류됨(VA, n/d).
- 전달체계: 제대군인부 산하의 제대군인 혜택 관리청(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VBA)이 신청 접수, 자격 심사(등급 판정), 급여 지급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담당함.

□ 재향군인 연금

- 재원: 연방정부 일반 세수. 의무 지출로 분류됨.
- 전달체계: 제대군인부 산하의 제대군인 혜택 관리청(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VBA)에서 관리 및 지급

□ 간호수당

- 재원: 기본 급여(장애보상금 또는 연금)와 동일하게 연방정부 의무 지출에 포함됨.
- 전달체계: 제대군인부 산하의 제대군인 혜택 관리청(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VBA)이 판정 및 지급



제3장

영국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제 3 장 영국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1. 개요

- 영국은 자유주의형 복지레짐의 대표적인 국가로 잔여적이고 선별인 복지제도인 공공부조제도의 정책적 중요도가 매우 큰 국가임.
- 따라서 제도의 효율성을 통한 복지제도의 효율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지향점이며,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여러 차례 복지개혁이 실시됨.
 - 복지제도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대적인 개편은 2013년 부터 이뤄진 통합크레딧의 도입임¹⁾.
- 영국의 주요 공공부조제도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노령층 대상의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PC)과 근로능력이 있거나 근로 연령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급여 형태의 통합크레딧(Universal Credit, UC)을 꼽을 수 있음.
- 통합 크레딧(UC) 도입 이전 영국은 근로능력이 있거나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매우 세분화된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부조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음.
- 이러한 급여에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아동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주거급여(housing benefit credit),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 support allowance) 등이 있으며,
 - 기존 공공부조 체계에서 대상자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의 급여를 중복수급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욕구 및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됨.

1) 이하의 내용은 임완섭 외(2024), p.96를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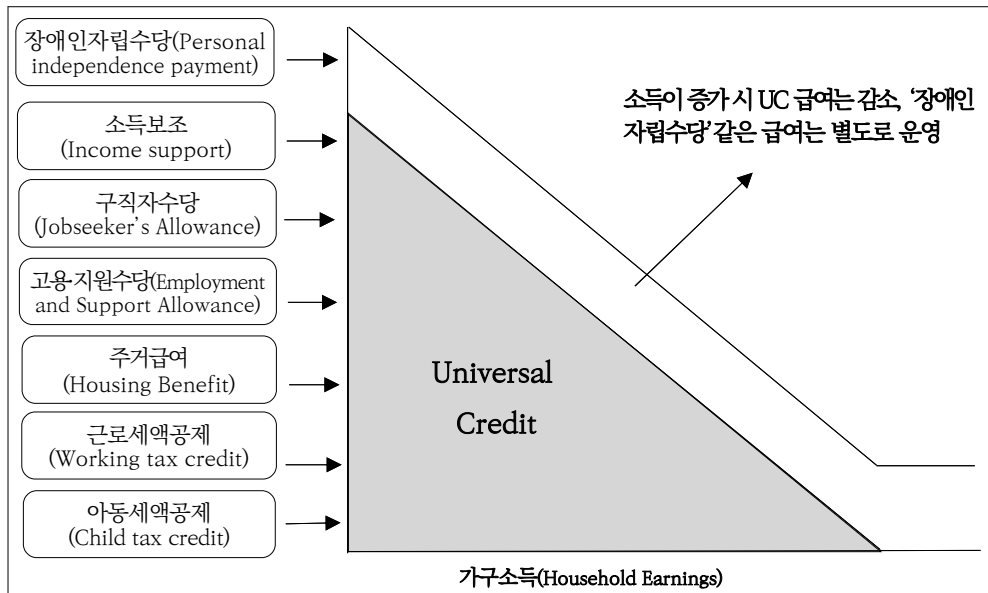
- 하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낮은 근로유인 효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2013년 보수당 연정은 위 여섯 개의 공공부조급여를 통합하여 하나의 급여제도로 운영하도록 공공부조 개편을 수행(임완섭 외, 2024, p.96)

〈표 3-1〉 영국 기존 공공부조 급여 및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의 차이점

| 구분 | 기존 6개의 공공부조 제도 |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
|-----------------|--------------------------------|------------------------|
| 지원 대상 | 실업 빈곤층 | 실업 빈곤층 및 근로 빈곤층 |
| 운영 기관 | 개별 급여 담당 기관 | 노동연금부(DWP) |
| 한계공제율 | 급여별 소득기준별 상이 | 55% |
| 급여 신청 방법 | 확대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급여 지급 | 은행계좌 통해 1~13주 간격으로 지급(급여별로 다름) | 은행계좌 통해 매월 급여지급(후불) |
| 급여 상한 | X | ○ |
| 수급자 의무 | X | ○ |
| 취업 여부에 따른 급여 제공 | X | ○ |

자료: 노대명 외(2014). p.187, 〈표 2-6-2〉; 여유진 외(2023). p.153, 〈표 5-1〉 재인용

〔그림 3-1〕 구 6개 공공부조 급여와 Universal Credit의 관계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Impact Assessment for Universal Credit」, pp. 7, chart 1, 2010.10 임완섭 외(2011). p.70, 그림 1 재인용

- 당초 2017년까지 통합 크레딧이 앞서 언급한 6개 급여를 완전히 대체할 계획이었지만, 제도 간 완전한 통합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의 통합 시점은 2028/29년 회계 연도까지로 미뤄지고 있음(Kennedy, 2023; 여유진 외, 2023, p.96 재인용).

2. 대상 및 선정 기준

□ 통합크레딧(Universal Credit)²⁾

- 저소득층이거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18세 이상인 영국 거주자이면서 국가연금 수령 연령(66세) 미만인 경우 해당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 자격(Eligibility)
 - 만 18세 이상 국가연금수급연령(66세) 미만의 영국 거주자이면서 16,000 파운드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자(2025년 기준)
 - 만 16세와 17세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건강상태, 장애, 아동양육, 임신 및 출산, 부모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조건이 있음.
 -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있거나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은 자는 통합크레딧의 적용대상이 되나, 기타 외국국적인 자와 난민신청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임완섭 외, 2024, p.98).
 - 자산요건(<https://www.gov.uk>에서 제시하고 있는 UC 정리)
 - UC를 청구하려면 혼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현금, 저축 및 투자액이 16,000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함.
 - 6,000~16,000파운드라면 유니버설 크레딧 지급액이 줄어들고 해당 구간에서 250파운드마다 급여액은 4.35파운드씩 줄어듦.
 - 250파운드가 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35파운드가 차감

2) 임완섭 외. (2024).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 기초연구. pp.97-98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영국정부홈페이지(<https://www.gov.uk>)를 통해 관련 사항을 업데이트 하였음.

- 파트너가 있는 경우, 파트너의 자산도 함께 자산조사의 심사대상이 됨. 이때의 자산 요건 역시 16,000파운드, 독신가구와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구분 없이 자산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음(임완섭 외, 2024, p.98).

○ 수급자 책무 요건

- UC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책무(claimant commitment)'에 동의해야 함. 수급자 책무에 따라 UC 급여 수급자는 일자리를 준비하고 구해야 하며, 이미 일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 수입을 늘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됨.
- 이를 위해 수급자는 'work coach'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work coach'는 구직 활동, 교육 기회 제공, 지역 내 일자리 찾기 등의 업무를 지원(<https://www.gov.uk>)
- 급여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자에는 원칙적으로 주당 35시간을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해야함.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단 장애 및 건강 상태, 돌봄노동 여부, 아동(13세 미만) 양육 여부 등에 따라 구직활동의 정도는 조정됨(임완섭 외, 2024, p.98).

□ 연금크레딧

○ 개요

- 영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의 '0'층에 해당하는 주요 제도로 공공부조 성격의 연금크레딧(PC)을 꼽을 수 있음(임완섭 외, 2020, pp.81 ~ 82).
 -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PC)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공공부조제도로, 보장크레딧(Guarantee Credit, GC)과 저축크레딧(Savings Credit, SC)으로 구성됨.
 - 보장크레딧(GC)은 급여 기준선보다 대상(개인 또는 부부)의 인정소득이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급여로 지급하여 최소생활수준을 보장
 - 저축크레딧(SC)은 신국가연금제도의 도입과 함께 2016년 4월로 폐지되어 현재는 기존 수급권자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저소득 노인에게

해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급여로, 저축크레딧 기준선 이상 보장크레딧 급여액 이하의 구간에서 저축할 때마다 일정 급여를 지급

- 연금 크레딧(PC)은 국가 연금 수급 연령이 넘었지만 저소득층인 경우 생활비 지원을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https://www.gov.uk>)
 - 연금 크레딧을 받으려면 영국, 스코틀랜드 또는 웨일즈에 거주해야 하며 국가 연금 수령 연령(66세)에 도달해야 함.
 - 파트너가 있다면, 신청서에는 파트너도 포함되어야 함. 파트너와 함께 해당 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신청자의 파트너 모두 국가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거나, 둘 중 한 명이 국가연금 수급 연령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주택 수당을 받고 있어야 함.

3.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UC는 기본수당(standard allowance), 부가수당(extra amount)으로 구성(여유진 외, 2024를 바탕으로, ‘영국정부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을 업데이트함.)
- 기본수당은 연령 및 혼인 여부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2025년 현재 25세 미만 독신은 월 316.98파운드, 25세 이상 독신은 월 400.14파운드를 기본수당으로 수급하고 있음.
- 파트너가 있는 경우, 두 사람의 연령이 25세 미만일 경우 월 497.55파운드를 수령하고 두 사람 중 한 명이 25세 이상일 경우 월 628.10파운드를 수령

〈표 3-2〉 통합 크레딧(UC) 기본수당(월)

(단위: 파운드)

| 가구별 상황 | 2024/25 | 2025/26 |
|-----------------------|---------|---------|
| 청구자가 미혼 이고 25세 미만 | 311.68 | 316.98 |
| 청구자가 독신이고 25세 이상 | 393.45 | 400.14 |
| 파트너가 있고 두명 모두 25세 미만 | 489.23 | 497.55 |
| 파트너가 있고 두명 1인이 25세 이상 | 617.60 | 628.10 |

자료: <https://www.gov.uk/universal-credit/what-youll-get>

- UC 수급가구는 아동 양육 및 자녀의 장애 등에 여부에 따라 부가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됨.
 - 미성년 자녀 양육 시, 첫 번째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92.81 파운드(2017년 4월 이후 출생일 경우)의 부가수당이 지급되며, 두 번째 자녀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부가수당이 지급됨.
 - 직장에 다니는 경우 보육비의 최대 85%까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파트너가 있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녀야 함(단,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표 3-3〉 통합크레딧의 아동 부가수당(2025/26년 기준)

| 가구별 상황 | 월 부가수당 |
|-----------------------------------|--|
| 첫 번째 자녀(2017년 4월 6일 이전 출생)의 경우 | 339파운드 |
| 첫 번째 자녀(2017년 4월 6일 이후 출생)의 경우 | 292.81파운드 |
| 두 번째 자녀 및 기타 적격 자녀의 경우 | 자녀 1인당 292.81파운드 |
|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 158.76~ 495.87파운드 |
| 육아 비용 (보육서비스 기관 이용, 부모가 일할 경우) | 최대 85% 지원(자녀 1인 1,031.88파운드, 2인 이상일 경우 1,768.94파운드) |

자료: <https://www.gov.uk/universal-credit>

- 한편, UC 수급자가 근로능력에 제한이 있는 아래와 같은 부가수당 수급 가능
 - 근로능력 및 근로 관련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423.27파운드를, 근로능력이 제한적이고 2017년 4월 3일 이전에 건강 관련 UC 또는 고용지원수당(ESA)을 신청한 경우 158.76파운드 수령 가능

〈표 3-4〉 통합크레딧의 장애인 또는 건강 관련 부가수당(2025/26년 기준)

| 장애의 정도 | 월 부가수당 |
|--|-----------|
| 근로능력 및 관련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 423.27파운드 |
| 근로능력이 제한적이고 2017년 4월 3일 이전 건강 관련 UC 또는 고용지원수당(ESA)을 신청한 경우 | 158.76파운드 |

자료: <https://www.gov.uk/universal-credit>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1. 개요

- 영국의 보훈제도 중에서 소득보장형태의 제도는 전쟁연금제도와 군인보상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명확히 보훈보상제도라 할 수 있지만 군인보상 제도는 보훈보상과 군인재해보상이 결합된 형태임.
- 주요 보훈보상제도는 크게 군인보상제도(Armed Force Covenant), 군연금제도(Armed Force Pension), 군인보상금제도(Armed Force Compensation Scheme) 등을 꼽을 수 있음(임완섭 외, 2018, pp. 96~97).
- 군연금제도(Armed Force Pension)는 비기여식으로 운영되는 군인직업연금으로, 국방부에서 전역 군인들에게 지급
 - 금전적 차원의 개별 기여가 없이 급여가 지급되는 점은 군인 및 그 가족들의 희생과 공헌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군인보상제도(Armed Force Covenant)는 전역 후 대상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2012년부터 서비스 제공
 - 특히 대상자의 보건, 교육, 주택, 제도의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을 국회에 매년 보고
- 전쟁연금제도(War Pension Scheme)는 2005년 4월 6일 이전을 기준으로, 군복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장애 또는 부상자들을 위한 제도로, 일시금 및 매월 지급되는 급여 제공
- 2005년에 도입된 군인보상금제도(Armed Force Compensation Scheme)는 전역군인에게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써, 상해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일시금 또는 매월 급여(소득보장지급: Guaranteed Income Payment) 제공³⁾

3) 영국의 보훈 보상 관련 주요 흐름은 하태연(2006, pp.5~6)을 참고바람

2. 대상 및 선정 기준

- 영국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상금과 의료 및 취업 등의 지원 제도가 있음.
 - 여기서 보상금 제도는 대상자의 장애발생 시점에 따라 전쟁연금제도(War Pensions Scheme)와 군인보상금제도(Armed Force Compensation Scheme)로 구분됨.

- 군인보상금제도(Armed Force Compensation Scheme, AFCS)
 - 군인보상금제도(AFCS)는 2005년 4월 6일 이후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 보상하는데, 대상자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비과세 일시금 및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소득보장지급(Guaranteed Income Payment, GIP)을 지급함.⁴⁾
 - 소득보장지급(GIP)(박동순, 2025, p.19).
 - 보훈 대상자의 상해 정도가 직업역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될 때 대상자인 상이군인의 군복무 중 수입과 연금 그리고 부상 시 연령 등을 계산하여 급여 수준을 책정
 - 근로능력(수입능력) 감소를 1~11단계로 구분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또한 군연금 지급액 및 퇴직 연령까지 남은 기간 등 연령요소를 반영
 - 군인보상금제도(AFCS)는 군인들에게 일회성 지원금이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임.⁵⁾
 - 2005년 4월 6일 이전에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겪은 사람의 경우 전쟁연금제도(WPS)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armed-forces-compensation-scheme-afcs#overview>에서 25.12.30 인출

5) 제도설명:

<https://community.veteranuk.com/what-should-military-leavers-know-about-the-armed-forces-compensation-scheme/>

- 군복무 중 사망한 경우 AFCS 청구도 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에게 혜택이 지급됨.
- 군인보상금제도(AFCS) 운영 방식
 - AFCS는 '무과실' 제도로, 영국군이나 그 어떤 개인도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즉, 보상금을 받더라도 관습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동일한 부상에 대해 두 번 이상 보상받을 수는 없음.
 - AFCS에 따른 보상은 두 가지 기본 형태(일시금, 정기적 급여)로 제공됨. 먼저 일시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발생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보상하기 위한 일회성 비과세 지급임.
 - 그리고 보장소득지급(GIP)은 군복무 중 전역하는 날로부터 남은 생애 동안 매달 비과세로 지급되는 연금임. 일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부상자에게만 지급되며, 부상이 향후 승진 가능성 또는 전역 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됨.
- 군인보상금제도(AFCS) 대상자
 - 예비군을 포함한 영국 육군, 해군, 공군의 모든 군인은 AFCS(군복무 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음.
 - 전쟁 연금 제도와는 달리, 현역 및 예비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므로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
- 군인보상제도 보장 부상 유형
 - 모든 유형의 질병이나 부상은 이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금액은 질병이나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짐(정신 질환도 포함).
 - 모험 훈련, 운동 또는 군 간 육상 경기와 같은 조직적인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사고 행사, 출퇴근, 승인되지 않은 스포츠 활동, 그리고 대부분의 미끄러짐 및 낙상 사고 중 발생한 부상 및 질병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

□ 전쟁연금(War Pension Scheme)⁶⁾

- 전쟁연금제도는 군복무 중 부상, 질병 또는 장애를 겪은 사람들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군인보상금제도(Armed Forces Compensation Scheme)의 전신임.
 - 전쟁연금제도는 군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보상을 참전용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
 - 또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시민의 배우자에게도 적용
- 2005년 4월 6일 이전 군복무자에게 이 제도가 적용되며, 영국 정부가 운영하며, 지급액 수준은 의회에서 결정함. 연금은 주급 또는 월급으로 지급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음.
 - 2005년 4월 6일 이후의 부상 및 장애 발생은 군인보상제도(AFCS)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전쟁연금 내의 급여들은 기본적으로 전역 이후에 지급되며, 복무 중일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없음(Ministry of Defence, 2017a; 임완섭 외, 2018, p.429 재인용).
- 전쟁연금은 주간 또는 월간 연금을 받는 경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지만, 일시불로 일시금이 지급됨.
 - 장애 정도가 20% 미만인 경우 일시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20% 이상의 장애를 겪고 있는 전직 군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연금이 지급됨.
- 전쟁연금 과세 대상 여부
 - 전쟁연금제도는 비과세이며 자산 심사도 받지 않음. 세율은 정부에서 정함.

6) Veteran UK 홈페이지. 전쟁연금 관련:
<https://community.veteranuk.com/war-pension-scheme-what-is-it-how-is-it-calculated-and-how-much-will-you-get/>

○ 전쟁장애연금(War Disablement Pension, WDP)⁷⁾

- 전쟁장애연금(WDP)은 앞서 언급한 전쟁연금제도(WPS)의 핵심적인 급여로서 영국군 복무 중 발생했거나 악화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참전 용사에게 보상하는 제도임. 다만 2005년 4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보상
 - 전쟁장애연금(WDP) 신청 자격
 - 군 제대자로서, 영국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부상이나 질병을 겪고 있으며, 대상자의 장애 발생 시점이 2005년 4월 6일 이전이어야 함.
 - 전쟁장애연금(WDP) 유형
 - 20% 미만의 장애에 대해 지급되는 비과세 일시금
 - 20%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주 또는 매월 지급되는 지속적인 비과세 지급금(연금형태)
 - 한편, 소음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고 장애 정도가 20% 미만인 경우, 연금이나 일시금이 지급 안됨.
 - 전쟁장애연금(WDP) 수급을 위해서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발생한 장애를 진단받아야 하는데, 전쟁 이후에 발생한 장애도 신청 가능(박동순, 2025, p.19).
 - 한편, 보충수당적 성격의 급여도 수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실업수당, 상시개호수당, 저소득 직업 수당, 전쟁 연금수급권자의 이동(mobility) 수당 등”이 있으며, 보충수당에 해당되는 소득 역시 비과세됨.
- 부상(injuries)에 의한 보상은 군복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전역 후에 군복무로 인해 더 심해졌을 것으로 사료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임완섭 외, 2018).
- 군복무 중(작전, 훈련, 체력교육과 활동, 군에서 허가한 스포츠 활동,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 등에서 발생한 모든 부상을 포함)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 신

7) 노스 래너크셔 의회 홈페이지.

[https://www.northlanarkshire.gov.uk/benefits-and-money/disability-and-carer-benefits/war-disablement-pensions#:~:text=What%20is%20it?%20The%20War%20Disablement%20Pension,service%20in%20His%20Majesty's%20\(HM\)%20Armed%20Forces.](https://www.northlanarkshire.gov.uk/benefits-and-money/disability-and-carer-benefits/war-disablement-pensions#:~:text=What%20is%20it?%20The%20War%20Disablement%20Pension,service%20in%20His%20Majesty's%20(HM)%20Armed%20Forces.)에서 '25.12.30인출

청에 시간제약은 없으나 입은 부상이나 장애가 군생활과 인과관계에 있다는 검사 결과는 7년이 지난 후에는 바뀔 수 있음(Ministry of Defence, 2017a; 임완섭 외, 2018 재인용).

- 전쟁연금제도 관련 결정은 증거에 기반하되, 대상자가 처한 상황, 장애와 관련된 의학지식이 반영되어 결정
 - 상이의 정도는 진료 및 진료 기록, 의사와의 상담기록 등이 모두 고려되어 평가되며, 군 복무가 대상자의 장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짐(Ministry of Defence, 2017b, 임완섭 외, 2018, p.429 재인용).

3.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전쟁장애연금(War Disablement Pension)

- 해당 제도의 급여는 일시금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으로 구분
- 장애율에 대한 평가가 20% 미만일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3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장애 기간 및 영속성의 특성이 고려됨.⁸⁾

〈표 3-5〉 전쟁장애연금(일시금): 2025년 기준

| 장애율 | 장애 기간 | 금액(파운드) |
|--------|---------------|---------|
| 1-5% | 1년 미만의 임시적 기간 | 631 |
| | 1년 이상 임시적 기간 | 1,268 |
| | 무기한 | 3,801 |
| 6-14% | 1년 미만의 임시적 기한 | 1,409 |
| | 1년 이상 임시적 기한 | 2,808 |
| | 무기한 | 8,449 |
| 15~19% | 1년 미만의 임시적 기한 | 2,469 |
| | 1년 이상 임시적 기한 | 4,922 |
| | 무기한 | 14,777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b(<https://www.gov.uk>)

8)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ar-disablement-pension-2019-rates/war-disablement-pension-rates-2025>

-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은 개인에게 한 번 주어지는 보상금 형태이나(6년 기준), 급여 지급 6년 이후 다시 받은 의학적 검사에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연금 수령 가능(Ministry of Defence, 2017a; 임완섭 외, 2018 재인용).

○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전쟁연금의 급여 및 수당들은 전년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매년 인상됨.

〈표 3-6〉 전쟁장애연금(연금): 2025년 기준

(단위: 파운드)

| 장애율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주당 | 47.8 | 71.7 | 95.6 | 119.5 | 143.4 | 167.3 | 191.2 | 215.1 | 239.0 |
| 연간 | 2,494 | 3,741 | 4,988 | 6,236 | 7,483 | 8,730 | 9,977 | 11,224 | 12,471 |

주: 기준은 주당 금액이며 매주 수요일에 지급됨.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b(<https://www.gov.uk>)

□ 위 제시된 전쟁장애연금 일시금과 연금 외의 관련 추가적 수당들은 아래와 같음

- 전쟁연금에서는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위한 유족 보상금(Compensation for Bereavement)이 별도로 존재(임완섭 외, 2018)
 - 사망원인이 2005년 4월 5일 이전 군복무와의 인관관계가 성립해야 지급되며, 해당 급여에는 배우자 연금과 추가적인 수당들이 있음
- 주택수당(Rent Allowance)은 주당 최대 68.20파운드, 연간 3,559파운드가 지급됨. 노령수당(Age Allowance)은 배우자의 연령이 65세에 도달하면 자동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금액은 주당 65~69세까지 20.70파운드, 70~79세 39.70파운드, 80세 이상은 59.00파운드가 지급됨.9)
 - 자녀수당(Child Allowance)은 첫째 자녀에게는 주당 28.45파운드, 둘째 자녀에게는 31.70파운드가 지급됨.

9)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ar-disablement-pension-2019-rates/war-disablement-pension-rates-2025>

□ 영국의 전쟁연금 수준

- 전쟁연금제도는 주로 장애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함. 장애 수준은 백분율로 측정되며, 장애 수준 20% 미만과 장애 수준 20% 초과인 두 가지 범주로 나뉨.
- 연령 또한 수령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65세가 되면 추가 연령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연령 수당은 65~69세, 70~79세, 그리고 80세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뉨.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매주 또는 매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됨.
 - 전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 지정된 기간 동안의 군복무와 관련된 경우,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 모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 이미 군에서 전역했다면 신청 가능 기간에 제한은 없음.
 - 단, 전역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청구하는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함. 그 이전에 청구된 경우, 군에서 청구가 거부되려면 청구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군에서 입증해야 함.
 - 전쟁연금제도의 운영
 - 전쟁연금제도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영국 재향군인회(Veterans UK)가 연락을 하거나 청구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표 3-7〉 전쟁연금제도 급여

(단위: 파운드)

| 전쟁연금제도 혜택 | 2022년 4월 (주당) | 2023년 4월 (주당) |
|---------------------------|---------------|---------------|
| 군대 독립 지원금 | 156.90 | 172.75 |
| 전쟁 연금 | | |
| 장애연금(100% 요율) 담당자(연간 파운드) | 10,436.00 | 11,490.00 |
| 다른 계급 | 200 | 220.2 |
| 65세부터 지급되는 연령수당 | | |
| 40~50% | 13.35 | 14.70 |
| 50% 이상이지만 70% 미만 | 20.60 | 22.70 |

| 전쟁연금제도 혜택 | 2022년 4월 (주당) | 2023년 4월 (주당) |
|------------------------------------|---------------|---------------|
| 70% 이상이지만 90% 미만 | 29.30 | 32.25 |
| 90% 이상 | 41.20 | 45.40 |
| 장애수당(일회성 지급) | | |
| 지정된 경미한 부상(분) | 1,274.00 | 1,403.00 |
| 지정된 경미한 부상(최대) | 9,513.00 | 10,474.00 |
| 1~5% 톱 | 3,181.00 | 3,502.00 |
| 6~14% 톱 | 7,072.00 | 7,786.00 |
| 15~19% 톱 | 12,369.00 | 13,618.00 |
| 보충수당 | | |
| 실업수당 | | |
| 개인의 | 123.60 | 136.10 |
| 성인 의존도 증가 | 68.70 | 75.65 |
| 첫째 아이에 대한 증가 | 16.00 | 17.60 |
| 이후 자녀에 대한 증가 | 18.75 | 20.65 |
| 장애수당 | | |
| 더 높은 비율 | 24.45 | 26.90 |
| 중간 요금 | 16.00 | 17.60 |
| 낮은 비율 | 8.00 | 8.80 |
| 상시출석수당 | | |
| 특별가 하루 종일 | 151.00 | 166.20 |
| 중간 요금 하루 종일 | 113.25 | 124.65 |
| 기본 요금 하루 종일 | 75.50 | 83.10 |
| 반일 요금 | 37.75 | 41.55 |
| 편의 수당 | | |
| 더 높은 비율 | 32.50 | 35.80 |
| 낮은 비율 | 16.25 | 17.90 |
| 이동성 보충제 | 72.00 | 79.25 |
| 저임금 직업에 대한 수당(최대) | 75.44 | 83.04 |
| 치료수입한도(연간이율) | 7,904.00 | 8,684.00 |
| 매우 심각한 장애 수당 | 75.50 | 83.10 |
| 중증장애 직업수당 | 37.75 | 41.55 |
| 의류 수당(연간 파운드) | 258.00 | 284.00 |
| 교육 수당(연간 파운드)(최대) | 120.00 | 120.00 |
| 유족(배우자) 급여 | | |
| 유족(배우자)-기타 계급(자녀가 있는 기본 계급)(주간 금액) | 151.70 | 167.00 |

| 전쟁연금제도 혜택 | 2022년 4월 (주당) | 2023년 4월 (주당) |
|--|---------------|---------------|
| 유족(배우자)-장교는 두 전쟁 모두에서 더 높은 비율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을 받음(연간) | 8,068.00 | 8,883.00 |
| 40세 미만의 자녀 없는 배우자(남편)(기타)(주당 금액) | 36.34 | 40.01 |
| 유족(배우자) - 장교는 두 전쟁 모두에서 연봉이 낮았음 | 2,802.00 | 3,085.00 |
| 1973년 보충 유족(배우자) 연금 | 101.49 | 111.74 |
| 연령 수당 | | |
| (a) 65세에서 69세 | 17.30 | 19.05 |
| (b) 70세에서 79세 | 33.25 | 36.60 |
| (c) 80세 이상 | 49.35 | 54.35 |
| 아동수당 | | |
| 첫째 아이에 대한 증가 | 23.80 | 26.20 |
| 이후 자녀에 대한 증가 | 26.50 | 29.20 |
| 고아연금 | | |
| 첫째 아이에 대한 가산 | 27.25 | 30.00 |
| 이후 자녀에 대한 가산 | 29.80 | 32.80 |
| 배우자로 거주하는 미혼 부양가족(최대) | 149.35 | 164.65 |
| 임대료 수당(최대) | 57.10 | 62.85 |
| 성인 고아 연금(최대) | 116.60 | 128.40 |

자료 : War Pensions Scheme. benefit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ousing-benefit-adjudication-circulars-2023/a-22023-war-pensions-uprating-for-the-financial-year-ending-march-2024>

□ 군인보상제도(AFCS)(임완섭 외, 2018)

- 군인보상제도(AFCS)는 군복무의 결과로 생긴 전역군인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통증 보상의 일환으로 크게 2가지 형태로 지급됨(Brooke-Holland, 2017).¹⁰⁾
 - 보장소득지급(Guaranteed Income Payment)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경증 장애의 경우 일시금(Lump sum payment)이 지급됨.
- 보장소득지급(GIP)은 아래 상해 등급(표 3-10)에서 1~11등급까지의 상대적 으로 중증의 상해 및 질병 등급의 경우에만 지급됨.

10) 이하의 내용은 Brooke-Holland(2017). The Armed Forces Compensation Scheme House of Commons Library.을 발췌 및 요약한 것임.

- GIP의 계산은, 제대 시점 군에서 받은 급여수준과 제대 시 연령을 고려한 향후 소득상실기간에 대한 가중치(연령에 따른 생애 기대 소득의 상실을 반영함. 연령이 낮을수록 높음) 그리고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등급을 고려해서 계산함.
- 예를 들면, 연령이 23세이고 제대 당시 급여가 20,000파운드인 대상자가 다리를 잃어 등급 8로 판정된 대상자의 경우, 제대 당시 급여에 23세에 해당하는 GIP factor를 곱한 후 등급 8에 해당되는 GIP 급여 최대수준(100%)의 상대적 비율로 책정되는 미래 수입 감소비율을 적용(50%)
 - 제대 당시 급여 × GIP factor × 미래수입감소요율 = 20,000파운드 × 1.182 × 0.5 = 11,820파운드

〈표 3-8〉 연령별 GIP factor

| 연령 | GIP Factor | 연령 | GIP Factor |
|----|------------|---------|------------|
| 16 | 1.205 | 37 | 1 |
| 17 | 1.202 | 38 | 0.986 |
| 18 | 1.199 | 39 | 0.972 |
| 19 | 1.196 | 40 | 0.957 |
| 20 | 1.192 | 41 | 0.943 |
| 21 | 1.189 | 42 | 0.928 |
| 22 | 1.185 | 43 | 0.913 |
| 23 | 1.182 | 44 | 0.897 |
| 24 | 1.17 | 45 | 0.882 |
| 25 | 1.157 | 46 | 0.866 |
| 26 | 1.145 | 47 | 0.849 |
| 27 | 1.132 | 48 | 0.833 |
| 28 | 1.12 | 49 | 0.816 |
| 29 | 1.107 | 50 | 0.799 |
| 30 | 1.094 | 51 | 0.781 |
| 31 | 1.081 | 52 | 0.763 |
| 32 | 1.068 | 53 | 0.744 |
| 33 | 1.055 | 54 | 0.724 |
| 34 | 1.041 | 55 | 0.705 |
| 35 | 1.028 | Over 55 | 0.705 |
| 36 | 1.014 | | |

자료 : Ministry of Defence. (2023). Armed Forces Compensation Scheme Statement of Policy. JSP 765 (V10.0) Sept 23. p.56.

- 일시금 형태(Lump sum payment)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15단계의 상해요율표 (Tariff level of the injuries)에 근거하며, 추가 상여금(supplementary awards)도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
 - 또한 전역 후 재취업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경우 소득보장지급(GIP)에 따라 비과세 급여가 매월 추가적으로 지급

〈표 3-9〉 상해 요율에 근거한 보상금

| 등급 | 보장임금급여(GIPs) 레벨 |
|----|---|
| 1 | A그룹 : 1-4단계요율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군인의 미래 수입(군인연금과 군인월급)100%가 충당됨. 이 그룹의 해당되는 군인의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는 전역후 다시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되어 재취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모두 보장임금급여로 충당됨 |
| 2 | |
| 3 | |
| 4 | |
| 5 | B그룹: 5-6단계요율 75%의 미래 수입 (군인연금과 군인월급)이 지급됨. 이 요율 단계에 있는 군인들은 전역 후 개인이 원할 경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정되거나 재취업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정됨 |
| 6 | |
| 7 | C 그룹:7-8단계요율 50%의 미래수입(군인연금과 군인월급)이 지급됨. 이 요율 단계에 있는 군인들은 전역 후 개인이 원할 경우 일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사정되거나 재취업시의 월급이 약 50%정도로 줄어들것으로 사료되어 나머지 50%를 이 급여로 제공 |
| 8 | |
| 9 | D 그룹: 9-11단계 요율 30%의 미래수입(군인연금과 군인월급)이 지급됨. 이 요율 단계에 있는 군인들은 전역 후 개인이 원할 경우 일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사정되거나 재취업시의 월급이 약 30%정도로 줄어들것으로 사료되어 나머지 30%를 이 급여로 제공 |
| 10 | |
| 11 | |
| 12 | E 그룹: 11-15단계 요율 이 그룹에 속한 자는 재취업시에 어려움이 없을것이라 사정되어 보장임금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 13 | |
| 14 | |
| 15 | |

자료: Brooke-Holland (2017)

- 한편, 군인보상금 제도는 보상금제도의 적절성 문제등으로 인해 2010년 수정
 - 주요 내용으로 1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의 보상금 인상, 군복무 관련 정신 건강문제에 대한 보상금 인상, 복합적인 상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금 계산 제고 등이 포함됨(Brooke-Holland, 2017; 임완섭 외, 2018).

4. 공공부조와의 관계: 공공부조와 보훈급여의 세부 요건, 지급 금액, 소득 반영 여부 등

- 광범위한 급여 시스템에서 군인연금(military pensions) 및 장애 수당(disability payments) 처리
 - 영국의 급여 시스템에서 전역 군인에게 지급되는 지급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득 지원(income support),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소득 연계형 ESA, JSA(구직자수당) 또는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과 같은 기존의 자산 심사 급여는 모든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지만, 일부 소득은 공제됨.
- 군인보상제도(Armed Forces Compensation Scheme, AFCS)
 - 보장소득지급(Guaranteed Income Payment, GIP)의 소득 반영 관련
 - ‘GIP’는 유니버설 크레딧(UC)의 소득 산정에서 전액 공제됨.
 - 유니버설 크레딧(UC)으로 전환되고 있는 기존 자산심사형 급여(means-tested benefits)들 중 ‘income-related ESA’,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income support’의 경우 주당 10파운드까지 공제됨.
 -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에서도 부상이나 장애로 지급되는 AFCS 급여는 주당 10파운드까지 공제(Louisa Brooke-Holland, 2024, p.27)
 - 주거급여(HB)에서 주당 10파운드까지 공제하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주거급여 산정 시 이를 완전히 제외할 수 있음.¹¹⁾
 - 일시금 지급(lump sum AFCS payments)의 재산 반영 관련
 - 유니버설 크레딧(UC)에서 일시금들은 기본적으로 전액 재산으로 반영
 - 하지만 AFCS의 일시금이 개인상해(personal injury) 보상금으로서 인정되고, 신탁(trust)에 맡겨질 경우 유니버설 크레딧(UC)에서 해당 일시금은 재산에서 공제 가능¹²⁾

11) <https://questions-statements.parliament.uk/written-questions/detail/2025-06-30/63813?utm>

- 유니버설 크레딧(UC)에서 개인에 지급된 특정 보상금과 복지 지원금은 12개월 한도 또는 영구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보상금으로 개인 상해 및 질병 보상금이 있음. 즉, 개인 상해 보상금으로서 인정된 AFCS 일시금은 수령 이후 12개월 동안 UC의 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12개월 지난 후 신탁(trust)에 예치되거나, 개인연금상품(Annuity) 구입에 사용된 개인 상해 및 질병 보상금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됨.¹³⁾
- 앞의 기존 자산 심사형 급여들에 있어, 고통 및 정신적 피해로 인한 AFCS 일시금은 개인 상해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음 12개월(52주) 동안은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Louisa Brooke-Holland, 2024, p.27), 이는 주거급여(HB)에도 동일하게 적용됨.¹⁴⁾
- 주거급여(HB)에서 AFCS의 일시금은 재산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DWP, Decision Makers' Guide, para 52477¹⁵⁾, CPAG 홈페이지에서 재인용¹⁶⁾)
- “State Pension Credit Regulations 2002, Schedule V”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발생한 개인적 상해의 결과로 지급된 급여부터 유래하여 신탁에 보관된 금액은 연금크레딧의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보훈보상(CPAG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

○ 전쟁연금(War Pensions)과 부가 수당의 소득 반영 관련

- 전쟁연금(War Pensions)은 유니버설 크레딧(UC)의 소득 산정에서 전액 공제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AFCS 급여와 마찬가지로, 기존 소득심사 급여들 중에서

12)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 Advice for Decision Making: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91c86325a253e2c40d706e5/adm-ch-h2_capital-disregards.pdf

13) <https://www.gov.uk/guidance/universal-credit-money-savings-and-investments>의 내용을 발췌 및 수정

14) <https://hbinfo.org/wp-content/uploads/newsletters/benbrief2.htm?utm>

15)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9485f83080e72710b2e217/dmg-ch-52.pdf>

16) CPAG 홈페이지.

https://cpag.org.uk/welfare-rights/benefits-scotland/more-info/veterans-benefits?utm_source=chatgpt.com#footnote18_YHD9UIuTDj-bC6JCRFA2p8MqioUUVIIg5osMKrGZvPY_wjrUvwwgaYC

‘income-related ESA’,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income support’의 경우 주당 10파운드까지 공제됨.

- 주거급여(HB)에서도 주당 10파운드까지 공제하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전액 공제 가능
-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 전쟁연금(War Pension), 전쟁유족연금(war widow’s and widower’s pensions) 은 주당 10파운드까지 공제됨[Reg 17 (7) and Sch 4, para 1 State Pension Credit Regulations 2002 No.1792¹⁷⁾; CPAG 홈페이지에서 재인용¹⁸⁾].
 - 전쟁장애연금(War Disablement Pension)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상시 간병수당(Constant Attendance Allowance), 전쟁연금 이동보조금(Mobility Supplement), 극심한 장애를 가진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과 같은 부가 수당 성격의 급여는 연금크레딧(PC)에서 전액 공제됨[Reg 17 (7) and Sch 4, para 2-4 State Pension Credit Regulations 2002 No.1792¹⁹⁾; CPAG 홈페이지에서 재인용²⁰⁾].
 - 군인독립지원금(Armed Forces Independence Payment)도 연금크레딧에서 전액 공제됨.²¹⁾

○ 일시금(War Pensions Scheme의 gratuity)의 재산 반영 관련²²⁾

- 유니버설 크레딧(UC)에서 전쟁장애연금(war disablement pension) 관련 일시금(Gratuities)은 개인 상해 보상금으로 간주해야 됨. 이러한 경우 앞서 살펴본 AFCS의 일시금(lump-sum payment)과 마찬가지로 12개월 동안 급여 산정 시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음.
- 또한 해당 일시금이 신탁 계좌에 입금된 경우, 무기한으로 고려 대상에서

17)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2/1792/schedule/IV>

18) CPAG 홈페이지(상동).

19)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2/1792/schedule/IV>

20) CPAG 홈페이지(상동).

21) <https://questions-statements.parliament.uk/written-questions/detail/2025-06-16/60399?utm>

22) CPAG 홈페이지.

제외될 수 있음. 하지만 신탁에서 인출된 일시금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Income support, income-related ESA, housing benefit의 재산 산정에서도 AFCS 관련 일시금과 마찬가지로 전쟁장애연금 관련 일시금의 경우 개인 상해 보상금으로 간주하여 재산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음.
- War Pensions Scheme의 gratuity의 경우, 주거급여(HB)에서 재산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²³⁾
- 앞서 언급 AFCS의 일시금 산정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적 상해(personal injury)의 보상으로 신탁(trust)에 맡겨진 급여액은 연금크레딧의 재산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3) CPAG 홈페이지.



제4장

호주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제 4 장 호주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²⁴⁾

1. 개요

- 호주의 소득보장은 공공부조 중심으로 운영되고, 생활영역과 대상 및 형태에 따른 다양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음.
 - 노령·장애·상병·교육·노동·훈련·가족 등 영역별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노인, 아동, 청년, 실업자, 장애인 등 지원대상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됨. 이러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형태에 따라 연금과 수당, 세제급여 등의 유형으로 구분됨.
 - 공공부조성 급여는 그 특성상 자산조사가 이뤄지며, 이 외에도 연령과 장애 등의 개인적 특성 요건, 거주 요건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공공부조 급여들이 설계됨.
- 호주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성 및 요건이 존재
 - 첫째, 호주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지 않고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소득 및 자산 테스트는 호주 납세자에게 지속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타깃팅하는 데 사용
 - 호주에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
 - 자산조사는 연금, 수당, 세제급여 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

24) 본 내용은 박능후 외(2018) 및 임완섭 외(2024, pp.101-112)를 재인용한 것을 호주 정부 Guides to Social Policy Law Social Security Guide, Version 1.334 - Released 15 November 2025 (<https://guides.dss.gov.au/social-security-guide>) 등을 통해 업데이트하여 작성한 것임.

- 연금은 재산조사에서 초과 재산에 대해 일정한 비율씩 급여를 감액하는 비례적 감액 방식으로 적용되며
- 수당은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당지급이 일시 중단되는 cut-off 방식을 적용
- 세계급여 프로그램의 경우 재산 상황은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만을 고려하여 자산조사가 이루어짐.

○ 둘째, 대부분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

- 대표적인 수당 프로그램으로 양육수당(0~5세), 청소년수당(16~24세), 실업수당(22~65세 미만) 등이 있으며
- 연금 프로그램으로는 노령연금(65세 이상), 장애연금(16~65세 미만), 세계급여 프로그램인 가족세계급여(0~19세) 등이 있음.
- 다만, 특정 연령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여 급여의 중복 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셋째, 상호 의무 요건(mutual obligation requirements)은 참여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

- 상호 의무 요건은 참여 수당을 받는 모든 구직자에게 적용
 - 구직자 지급(jobseeker payment)
 - 청소년 수당 (기타) (youth allowance (other))
 - 한부모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single)) (when their youngest child turns)
 - 특별급여(special benefit) 등

○ 넷째, 민간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공공기관 등 전담 전문인력이 아닌 가족, 친지, 이웃이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특성을 가짐.

□ 이러한 특성을 가진 호주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4-1〉 호주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 및 수급자 수 (2025.6.기준)

(단위: 명)

| Payment type | Male | Female | Unknown | Total |
|---|-----------|-----------|---------|-----------|
| ABSTUDY (Living Allowance) | 3,315 | 4,710 | 0 | 8,030 |
| ABSTUDY (Non-Living Allowance) | 8,595 | 10,835 | 0 | 19,425 |
| 노령연금(Age Pension) | 1,185,460 | 1,481,920 | 0 | 2,667,380 |
| Austudy | 11,085 | 13,965 | 0 | 25,050 |
| 돌보미수당(Carer Allowance) | 171,225 | 507,740 | 0 | 678,965 |
| Carer Allowance (Child Health Care Card only) | 655 | 6,755 | 0 | 7,410 |
| 돌보미급여(Carer Payment) | 94,620 | 231,225 | 0 | 325,845 |
| 연방 임대료 지원 (Commonwealth Rent Assistance) | 260,780 | 284,000 | 0 | 544,780 |
| 장애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 440,050 | 390,805 | 0 | 830,855 |
| 건강관리카드(Health Care Card) | 525,605 | 838,955 | 5 | 1,364,565 |
| 구직자수당(JobSeeker Payment) | 482,755 | 400,945 | 0 | 883,700 |
| 저소득카드(Low Income Card) | 72,885 | 110,065 | 5 | 182,955 |
| 부모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Partnered) | 6,175 | 52,955 | 0 | 59,130 |
| Parenting Payment Single | 20,575 | 311,195 | 0 | 331,770 |
| Pension Concession Card | 1,920,215 | 2,618,930 | 5 | 4,539,150 |
| 긴급급여(Special Benefit) | 2,270 | 3,400 | 0 | 5,670 |
|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other)) | 51,215 | 50,245 | 0 | 101,460 |
|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student and apprentice)) | 63,835 | 95,040 | 0 | 158,870 |

자료: 호주 정부 공개데이터 홈페이지, DSS Benefit and Payment Recipient Demographics - quarterly data. (<https://data.gov.au/data/dataset/dss-payment-demographic-data> 2025.11.06. 다운로드)

□ 본 절에서는 이 중 유형별로 연금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노령연금(Age Pension), 수당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구직자수당(JobSeeker Payment)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노령연금(Age Pension)

- 현재 호주 공공부조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로 노년층의 기본 생활 수준을 지원하는 주요 소득 지원 지급금에 해당
 -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노년층에게 주요 또는 유일한 소득원으로 지원하거나, 다른 수입원에서 보충하는 역할
 - 호주에는 공식적인 은퇴 연령이 없지만, 연령연금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67세 이상이어야 하며, 거주 요건과 소득 및 자산조사를 적용
 - 67세 미만이라면 구직자수당(JobSeeker Payment)과 같은 다른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노령연금은 수급연령(67세)에 도달해야 하고 기타 규정(거주요건, 자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음.
 - 거주요건으로 노령연금 청구시점에 호주에서 생활하고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총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함.
 - 자산요건의 경우 소득조사는 본인과 파트너의 모든 소득을 평가하며, 여기에는 저축, 주식, 연금 등 금융자산도 포함되며, 자산의 경우 모든 자산 유형을 평가하며, 수급액은 자산 가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자산조사를 거쳐 가구 유형에 따라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전액 지급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되어 지급됨.
 - 기준선을 초과하는 소득 1 호주 달러당 독신가구의 경우 50센트, 부부가구의 경우 각 25센트씩 감액

- 노령연금은 2주 단위로 지급되며, 2024년 기준 노령연금의 기본액(basic rate)은 독신가구의 경우 2주당 1,020.6호주 달러, 부부가구는 노인 1인당 769.3호주 달러(부부합산 1,538.6호주 달러)임(Australian Government, p.13²⁵).

25) Australian Government(2024), A guide to Australian Government payments 1 July 2024 to 19 September 2024(<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sites/default/files/2024-06/co029-2407.pdf>)

〈표 4-2〉 노령연금 급여수준

(단위: 호주 달러)

| 2주마다 지급 | 단독(Single) | 부부 각각 (Couple each) | 부부 결합 (Couple combined) | 건강문제로 헤어져 있는 경우(Couple apart due to ill health) |
|--|------------|------------------------|----------------------------|---|
| 최대 기본요금 (Maximum basic rate) | 1,079.70 | 813.90 | 1,627.80 | 1,079.70 |
| 최대 연금 보조금 (Maximum Pension Supplement) | 84.90 | 64.00 | 128.00 | 84.90 |
| 에너지 보조금 (Energy Supplement) | 14.10 | 10.60 | 21.20 | 14.10 |
| 총액 | 1,178.70 | 888.50 | 1,777.00 | 1,178.70 |

자료: Services Australia 홈페이지 - Age Pension - How much you can get(<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how-much-age-pension-you-can-get?context=22526>)에서 2025.12.5. 인출

3. 구직자수당(JobSeeker Payment)²⁶⁾

- 구직자 수당은 실업 상태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성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구직 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구직 활동 등의 상호 의무가 부과됨
- 실직 중이거나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성인(22세 이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임
- 실직 중이며 일을 찾고 있는 경우 (Unemployed and looking for work)
 - 실직 상태인 경우
 - 풀타임 근무가 아닌 경우 (예: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 근무 중인 경우)
 -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인 경우
 -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
-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 평소 업무나 학업을 할 수 없는 경우 (Sick or injured and can't do your usual work or study)

2024.08.29. 다운로드)

26) 임완섭 외(2024, pp.101-112)를 재인용 및 Services Australia 홈페이지 - JobSeeker Payment를 참고하여 작성함(<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jobseeker-payment>)

-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재난 복구 수당(Disaster Recovery Allowance)이 종료된 후 소득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소득 및 자산 요건: 개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이 정해진 한도 이하

○ 소득요건 : 가족 상황별 지급금이 소득 기준에 따라 0으로 줄어드는 한도 (격주 기준)

○ 자산 요건: 주요 거주지를 제외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모든 자산의 종류와 가치를 포함

〈표 4-3〉 구직자 수당 소득 및 자산 요건

(단위: 호주 달러)

| 가구기준 | 주택소유자 | 비주택 소유자 |
|-----------------------|---------|---------|
| 독신 | 321,500 | 579,500 |
| 부부 | 481,500 | 739,500 |
| 한 명만 자격이 있는 경우, 합산 자산 | 481,500 | 739,500 |

자료: Services Australia 홈페이지 - Income and assets tests(<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come-and-assets-tests-for-jobseeker-payment?context=51411>)에서 2025.11.6. 인출)

□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2주마다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연령, 파트너 여부, 자녀 여부, 지난 14일 동안 본인 및 배우자(파트너)가 받은 소득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매년 3월 20일과 9월 20일에 요금 조정

〈표 4-4〉 구직자 수당 급여 수준

| 구분 | 2025년 9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최대 격주 지급액(호주 달러) |
|---|---|
| 단독 가구, 자녀 없음 | 793.60달러 |
| 단독 가구, 부양 자녀 있음 | 849.90 |
| 단독 가구, 55세 이상으로 소득지원급여를 9개월 이상 연속 수급한 경우 | 849.90 |
| 단독 가구, 주당 15시간 미만의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 849.90 |
| 동거 가구(파트너 있음) | 726.50 |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독 가구의 주 양육자는 구직활동 등 상호의무요건 (mutual obligation requirements) 면제 : 위탁 양육(foster caring) 법원 명령에 따라 부모가 아닌 친족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non-parent relative caring under a court order) 홈스쿨링(home schooling) 원격 교육(distance education) 대가족(large family) | 1,027.70 |

출처: Services Australia 홈페이지 - JobSeeker Payment(<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how-much-jobseeker-payment-you-can-get?context=51411>)에서 2025.11.06. 인출)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1. 호주 보훈제도 개괄

□ 재향군인 지원 및 보상 제도

○ 재향군인과 그 부양가족에게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는 3가지 주요 입법 제도는 다음과 같음(Michael Klappdor, 2024, p.5).

- 1986년 제정된 보훈법(Veterans' Entitlement Act, VEA)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전시 복무, 작전 복무, 평화 유지 복무 및 위험한 군복무를 수행한 사람, 1972년 12월 7일부터 1994년 4월 7일까지의 평시 군 복무를 수행한 사람, 1952년과 1965년 사이에 수행된 영국 핵실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혜택과 자격을 제공
- 1988년 안전, 재활 및 보상(방위 관련 청구)법 (DRCA)은 1949년 1월 3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수행된 평화시 및 평화유지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제공
 - 또한 1994년 4월 7일부터 2004년 6월 30일 사이의 특정 작전 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제공함
 - 2017년 DRCA는 안전, 재활 및 보상법(1988)의 국방 관련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구성
- 2004년 군사 재활 및 보상법(MRCA)은 2004년 7월 1일부터 수행된 모든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제공
 - 기존의 '(해외)참전용사 귀환 및 보상법(Repatriation Act 1920)', 동남아 위기 시의 참전 용사들을 위한 'Repatriation(Far East Strategic Reserve) Act 1956' 과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Repatriation(Special Overseas Service) Act 1962' 등 80여 개의 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황정하, 2013, p.139)

○ DRCA와 MRCA는 일시금 보상과 최대 노령연금 수령 연령까지 지급되는 정기적 지급을 모두 제공하는 근로자 보상 제도(Michael Klappdor, 2024, p.6²⁷⁾)

- 호주 생산성 위원회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재향군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뉨(Productivity Commission, 2019)
 - 책임 기반 지원: 이러한 지원에 대한 접근은 재향군인이 군 복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또는 사망)을 겪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 병행적 서비스 시스템: 특정 유형의 서비스를 받는 재향군인을 위해 DVA는 주류 보건, 지역 사회 및 복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종종 더 관대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Productivity Commission, 2019, p.134)
- 소득 지원 지급과 같은 일부 VEA 혜택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재향군인의 자격 복무 기간에 따라 결정(일반적으로 적대 세력의 위협에 처한 적에 대한 작전에서). 보상금 지급 및 복리후생과 같은 3가지 제도에 따라 제공 되는 기타 혜택은 복무 기간에 따라 달라짐(Michael Klapdor, 2024, p.6)
 - 하나 이상의 제도에 따른 자격은 서비스 기간과 보상을 발생시키는 사건 (예: 부상 또는 사망)의 시기에 따라 결정

□ 2024년 재향군인의 권리, 필요 및 지원에 대한 단순화 법안 제안

- 재향군인이나 그 부양가족이 세 가지 제도에 따라 보상 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일반적으로 DVA(재향군인청)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 복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책임의 결정 방식은 세 가지 제도 간에 다름(Michael Klapdor, 2024, p.7).

27) Michael Klapdor. (2024). Veterans' Entitlements, Treatment and Support (Simplification and Harmonisation) Bill 2024. Bills Digest No. 3, 2024-25.

〈표 4-5〉 보훈부의 소득 지원 또는 보상 연금을 받는 순 총인구수 (2025년 9월 기준)

| 보훈 관련 급여 | 인원수 |
|---|---------|
| 재향군인 복무연금(Veteran Service Pensioners) | 35,107 |
| 파트너 복무연금(Partner/Widow(er) Service Pensioners) | 30,660 |
| Total Service Pensioners | 65,767 |
| 소득보충지원금 수급자(Income Support Supplement) recipients | 19,234 |
|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Social Security Age Pensioners) | 3,831 |
| 의료카드 소지자(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holders) | 3,365 |
| 소득지원을 받는 장애보상금 수급자(Disability Compensation Payment recipients receiving Income Support) ¹⁾ | 28,029 |
| 소득지원을 받지 않는 장애보상금 수급자(Disability Compensation Payment recipients not receiving Income Support) | 46,660 |
| Total Disability Compensation Payment recipients | 74,689 |
| 소득지원을 받는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자(War Widow(er) Pensioners receiving Income Support) ¹⁾ | 19,204 |
| 소득지원을 받지 않는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자(War Widow(er) Pensioners not receiving Income Support) | 10,047 |
| Total War Widow(er) Pensioners | 29,251 |
| 자녀 유족연금(Orphan Pensioners) | 142 |
| Net Total ²⁾ | 147,096 |

주: 1) '소득 지원'에는 복무 연금, 노령 연금 또는 소득 지원 보충금 포함.

2) 중복으로 인해 각 항목은 총액에 합산되지 않음.

자료: 호주 보훈부 홈페이지 - Statistics about the veteran population (https://www.dva.gov.au/providers/raining-and-research-for-providers/research/statistics-about-the-veteran-population?utm_source에서 2025.12.5. 다운로드)

2. 주요 공공부조 급여(또는 대상선정)에 영향을 주는 보훈급여

□ 복무연금(Service Pension)²⁸⁾

○ 개요

- 복무연금은 재향군인과 그 배우자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재향군인 복무연금(Service Pension for Veterans)은 재향군인 본인에게, 파트너 복무연금(Service Pension for Partners)은 재향군인의 배우자에게 지급 되는 경우를 말함.

28)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Service Pension overview. <https://www.dva.gov.au/access-benefits/pensions-and-payments/service-pension-overview>

- 복무 연금은 소득 지원금이므로 소득과 자산에 따라 수령 가능 금액이 달라지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의 소득과 자산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 이는 재정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 복무로 인한 영향으로 근로 가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연금(SSI)보다 복무연금을 먼저 수령 가능
 - DVA에서 노령연금과 복무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Services Australia에서 제공하는 다른 사회보장연금이나 혜택(자녀 관련 지급금 제외)도 받을 수 없음.

○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연령, 장애 여부 또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복무연금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음.
 - 최소 60세 이상(근로연금 수급연령)이거나 영구적으로 근로 무능력(근로연금 무효)인 경우
-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의 파트너 및 부양가족은 특정 조건하에서 파트너 복무연금 (Partner Service Pension)을 받을 자격이 있음.
 -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연금 파트너 자격을 얻을 수 있음. 1)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의 현재 파트너, 2)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의 전 파트너, 3) 자격을 갖춘 복무를 마친 재향군인의 미망인 또는 홀아비 등

○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복무연금은 격주로 지급되며, 사회보장급여의 노령연금(Age pension)과 급여성격, 급여수준, 산정방식, 소득·자산 테스트 구조가 동일
 - 생활비 변화를 반영하여 분기별로 1월 1일, 3월 20일, 7월 1일, 9월 20일에 조정
- 2주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싱글인 경우 복무연금 1,079.70호주 달러와 연금 보충금 99.00호주 달러로 총 1,178.70호주 달러,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복무연금 813.90호주 달러와 연금 보충금 74.60호주 달러로 총

888.50호주 달러(2025년 9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

〈표 4-6〉 복무연금(Service Pension) 급여 수준

| Single rate | 2주당 최대액(호주 달러) |
|---------------------------|----------------|
| 복무연금(Service Pension) | 1,079.70 |
| 연금보충금(Pension supplement) | 99.00 |
| 총액 | 1,178.70 |
| Couples rate | 2주당 최대액 (각각) |
| 복무연금(Service Pension) | 813.90 |
| 연금보충금(Pension supplement) | 74.60 |
| 총액 | 888.50 |

자료: 호주 보훈부 홈페이지 - Service Pension overview(<https://www.dva.gov.au/access-benefits/pensions-and-payments/service-pension-overview>에서 2025.11.6. 인출)

- 지불 요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검토되며, 생활비에 따라 조정
- 상황에 따라 임대료 지원(rent assistance), 원격 지역 수당(remote area allowance)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료지원이란 민간 임대 주택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과세 정부 지원금을 의미
 - 원격 지역 수당은 2주마다 싱글이라면 18.20호주 달러,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1인당 15.60호주 달러, 가족세금혜택을 받는 경우 부양 자녀 한 명당 2주에 7.30호주 달러를 받음.
- 복무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수급자 할인카드를 제공
 - 재향군인 카드를 사용하면 호주에서 의료, 정신 건강 치료, 처방약을 구매할 수 있으며, 주, 지역 및 기업은 재향군인 카드 소지자에게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재향군인 카드는 호주 국방 재향군인 협약의 일부

□ 유족연금(Pension for orphans and war widow(er)s)²⁹⁾

○ 개요

- 전쟁 참전 용사 또는 적격 군복무로 사망한 참전 용사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에게 보상하기 위해 VEA(전쟁 참전 용사 연금)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유족연금은 기타 보상 지급액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즉, 소득이나 자산 검사가 없기 때문에, 수혜자는 재정 상태와 상황에 관계 없이 지급을 받음.³⁰⁾
- 전쟁 미망인/전쟁 미망인 연금이 1995년 3월 20일 이후에 지급되었고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경우, 전쟁 미망인/전쟁 미망인 연금은 사회 보장 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쟁 미망인/전쟁 배우자 연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경우(영세율 포함), 전쟁 미망인/전쟁 배우자는 사회 보장 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
 - 즉, 전쟁 미망인/전쟁 배우자 연금은 수혜자의 배우자의 사회보장 목적으로 일반 소득으로 평가됨(Guides to Social Policy Law Social Security Guide, 2025).³¹⁾
- 유족연금 수급자에게는 베테랑 골드 카드 발급
 - 이 카드를 소지하면 호주 내 모든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배우자는 소득 지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여 추가 정기 소득을 제공하는 연금

29)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Pension for orphans and war widow(er)s. <https://www.dva.gov.au/families-and-dependants/financial-programs-and-services/pension-for-orphans-and-war-widowers>

30) KSCclaims 홈페이지, Comprehensive Guide to DVA Pensions: Rates, Eligibility and Special Benefits. https://kscclaims.com.au/blog/dva-pension-guide/#Age_Pension_Feature_and_Comparison<https://www.dva.gov.au/families-and-dependants/financial-programs-and-services/pension-for-orphans-and-war-widowers>

31) 호주 정부 Guides to Social Policy Law Social Security Guide, Version 1.333 - Released 3 November 2025 - 4.3.5.40 About DVA war widow/ers pension, MRCA death benefits, DRCA death benefits & ISS (<https://guides.dss.gov.au/social-security-guide/4/3/5/40>)에서 2025.12.05. 인출

○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재향군인의 배우자(War widow(er)'s pension)
 - 전쟁 미망인 연금은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의 미망인이나 홀아비에게 지급
 - 호주 재향군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합법적으로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였으며 그 이후로 다른 사람과 재혼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
- 재향군인의 자녀(Orphan's pension)
 - 사망한 적격 재향군인의 부양 자녀 즉, 재향군인의 친자녀, 입양 자녀 또는 재향군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받던 자녀(해당 자녀는 16세 미만이거나 25세 미만이지만 아직 전일제 학업을 이수 중인 상태)
 - 자녀가 16세 이상이고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고립 아동 지원 제도(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 ABSTUDY, 대학원 장학금 제도(Post-Graduate Awards Scheme) 또는 재향군인 자녀 교육 제도(Veterans' Children Education Scheme)를 통해 호주 정부의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재향군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이 자동으로 부양가족에게 연금을 지급
 - 전직 전쟁 포로
 - 극심 장애가 있는 경우
 - 특별 요율로 장애 보상 지급을 받거나(양쪽 눈의 실명으로 인해 특별 요율 장애 보상 지급을 받던 재향군인 포함) 중간 요율로 장애 보상금을 받거나 임시 특별 요율로 장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 특정 장애로 추가 장애 보상금을 받는 경우

○ 급여 수준³²⁾

- 재향군인의 배우자(War widow(er)'s pension)
 - 전쟁 미망인 연금은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의 미망인이나 홀아비에게 지급
 - 1,200.80호주 달러 (에너지 보충금 포함)
- 재향군인의 자녀(Orphan's pension)
 - 사망한 적격 재향군인의 부양 자녀에게 지급
 - 한 명 - 128.00호주 달러 / 두 명 - 255.70호주 달러

□ 유족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Dependents)³³⁾

○ 개요

- 사망한 재향군인의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재향군인의 복무 기간에 따라 결정. 지급액은 교육 수당부터 유족 연금까지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 치료비도 지급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망과 관련된 혜택을 포함한 모든 신규 혜택 청구는 MRCA에 따라 고려
- MRCA에 따른 부양가족의 자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일시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적으로 종속된 파트너 연금
 - 재향군인의 사망이 군복무로 인한 경우 연령에 따라 조정되는 일시금 지급
 - 장례비용은 최대 14,639호주 달러까지 보상
- 2026년 7월 1일부터 1986년 재향군인 권리법(VEA)과 1988년 안전, 재활 및 보상(국방 관련 청구)법 (DRCA)에 따라 재활 및 보상에 대한 새로운 청구가 마감되고, DVA는 개선된 2004년 군인 재활 및 보상법(MRCA)에

32) 호주 보훈부 홈페이지 - Rates for the Disability Compensation Payment and War Widow(er)'s Pension) <https://www.dva.gov.au/access-benefits/payment-rates/compensation-payment-rates/rates-for-the-disability-compensation-payment-and-war-widowers-pension>에서 2012.12.05.인출

33)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Compensation for Dependents. <https://www.dva.gov.au/about-us/inquiries-and-reviews/veterans-legislation-reform/veterans-legislation-reform-resources/compensation-dependants>

따라 해당 날짜부터 제출된 청구를 고려

○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2026년 7월 1일부터 재향군인 사망 후 발생하는 모든 부양가족 청구는 MRCA에 따라 평가 및 지급
- 여기에는 재향군인이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사망했지만 2026년 7월 1일 이후에 급여를 청구한 경우도 포함
- 급여에는 치료를 위한 골드 카드(Gold Card) 이용권과 자격을 갖춘 부양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이용권을 포함

□ 영구장애수당(Permanent impairment payments under the MRCA)³⁴⁾

○ 개요

- 2004년 군사 재할 및 보상법(MRCA)에 따라 영구 장애(PI)를 초래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

○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2004년 7월 1일 이후 호주 방위군(ADF)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상이나 질병은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
-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며, PI 보상금은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장애와 생활 제한에 대해 지급
- PI 보상을 받기 위한 최소 장애 수준은 인정된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10점 이상의 장애 점수로 평가. 단, 청력 상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잃은 경우, 미각이나 후각을 잃은 경우 5점의 장애 점수만 필요

○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PI 정기 지급액은 PI 보상금의 최대 주간 요율에 해당 보상 계수를 곱하여 계산

34)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Permanent impairment payments under the MRCA. <https://www.dva.gov.au/access-benefits/claims-and-compensation-for-illness-or-injury/claims-if-you-were-injured-after-30-june-2004/permanent-impairment-payments-under-the-mrca>

- 장애 점수와 생활 수준 점수의 모든 조합에 대한 보상 계수는 GARP M에 명시. 전시/비전시 복무에는 평시 복무와 다른 계수를 적용
- PI 보상은 인정되는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장애 수준과 이것이 해당자의 생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결정. 여기에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모두 포함
 - 모든 인정된 질환을 종합하여 0점에서 100점까지의 총 장애 등급을 산정. 이 장애 등급은 부상 당시 해당자의 서비스 유형과 0점에서 7점까지의 생활 수준 등급을 합산하여 지급될 보상을 결정
 - 일반적으로, 해당자가 받아들이는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의 정도가 크고, 귀하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많이 미칠수록 귀하가 받을 수 있는 PI 보상도 커짐.

□ 특별 장애 연금(Special Rate Disability Pension, SRDP)³⁵⁾

○ 개요

- SRDP는 2004년 7월 1일 이후 군 복무로 인해 근로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사람들에게 (장애 수당 대신) 대체 형태의 정기적 보상을 제공

○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재향군인은 특별 등급 장애 연금(SRDP)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보훈부(DVA)는 영구 장애 보상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을 자동으로 평가하여,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향군인들은 SRDP 지급 또는 일시금 지급 중에서 선택
 - 50개 이상의 장애점에서 평가된 부상이나 질병이 있으면 무기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MRCA 장애 수당을 받고 있거나 연방 연금 상쇄로 인해 MRCA 장애 수당이 0으로 줄어들었거나 일시금 장애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당 10

35)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Special Rate Disability Pension. <https://www.dva.gov.au/access-benefits/pensions-and-payments/support-when-you-cannot-work/disability-compensation-payments/special-rate-disability-pension>

시간 이상 유급 근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활을 통해 주당 10시간 이상 유급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은 낮음.

○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특별 장애 연금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은 1) 지속적인 SRDP 지급(정기적이고 생활비 연계 재정 지원)과 2) 일시불 지급(영구장애 보상제도에 따른 일회성 보상옵션) 중 하나를 선택
- 다른 DVA 연금과 달리, 특별 장애 연금(SRDP)은 일시성 지급이 아닌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 또한 소득자산 조사를 받지 않아, 재향군인의 재정 상황이 자격 요건이나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SRDP는 특정 수준의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뿐만 아니라 군복무 관련 질환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재향군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
- 지급은 재향군인이 일시불로 받지 않는 한 평생 계속되므로, 소득과 자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서비스 연금과 비교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임.

□ 장애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 Payment)³⁶⁾

○ 개요

- 장애보상금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를 대신하여 수행한 전쟁 중 복무 또는 특정 국방 복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재향군인에게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비과세 연금임.

○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앓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
 -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분쟁에서 호주 방위군(ADF)으로 복무
 - 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 상선

36)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Eligibility for Disability Compensation Payments. <https://www.dva.gov.au/access-benefits/pensions-and-payments/support-when-you-cannot-work/eligibility-disability-compensation-payments>

- 해외의 특정 평화유지군의 일원
-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위험물로 지정된 해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ADF에 소속된 경우
- 1950~1960년대의 규정된 핵실험 구역에서 호주에서 진행된 영국 핵실험 프로그램 중 또는 규정된 핵실험 기간 동안 특정 작업 수행자
- 2004년 7월 1일 이전 전쟁 중에 ADF를 도운 특정 민간인 중
- (의학적으로 제대하지 않는 한) 1972년 12월 7일부터 1994년 4월 6일 까지 ADF에 복무한 경우(3년 자격 기간 완료 후) 또는 1972년 12월 7일 이후에 국민군인으로 복무 의무를 완수하거나 의료상 퇴역한 경우

○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지급되는 장애 보상금 수준은 전쟁 또는 국방 관련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수준에 따라 달라짐. 일반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이 높아짐.
- 장애보상 지급금에는 4가지 '범주'가 있음.
 - 일반 요율은 10% 단위로 최대 100%까지 지불 가능
 - 극심한 장애 조정 (65세 이상에게만 해당)
 - 중간 요율
 - 특별 가격
- 일반적으로 장애보상금은 DVA에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전부터 지급
 - 즉, 장애보상금 청구가 승인되면 연금은 다음 연금 지급일부터 지급되며, 청구서 접수 전 최대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했던 연금에 대한 체납금도 함께 지급
- 장애보상 지급 수당은 재정적 지원, 보상 또는 용맹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
 - VEA에 따라 간병인 수당, 의류 수당, 훈장 수당, 소득 손실 수당, 레크리

에이션 교통 수당, 차량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신청이 가능

- 간병인 수당(attendant allowance)은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에게 식사, 목욕, 옷 입기 및 기타 일상생활 활동을 돕는 간병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해당 수당은 재향군인이 전쟁 또는 방위 활동으로 인한 특정 절단, 실명, 뇌 및 척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상이나 질병을 앓거나 그 증상 또는 심각도가 유사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지급
- 의류 수당(clothing allowance)은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에게 의류의 개조, 훼손 또는 손상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 해당 수당은 재향군인이 전쟁 또는 방위로 인한 절단, 실명 또는 장애로 인해 의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지급
- 훈장 수당(decoration allowance)은 DVA 장애보상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적격 훈장을 받은 재향군인에게 지급
- 소득 손실 수당(loss of earnings allowance)은 적격 재향군인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급여, 임금 또는 소득 손실을 보상. 이는 전쟁 또는 국방 관련 장애 치료, 특정 진료 참석을 위한 수당일 수 있음. 또한 재향군인과 동행하는 재향군인의 공인 대리인 또는 수행원에게도 보상이 제공
- 레크리에이션 교통 수당(recreation transport allowance)은 전쟁 또는 방위로 인해 이동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적격 재향군인에게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이 수당은 재향군인이 전쟁 또는 방위로 인해 특정 신체 일부의 절단이나 실명과 같은 장애를 가진 경우 지급
- 차량 지원 제도(vehicle assistance scheme)는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개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이 지원은 재향군인이 군복무 또는 전쟁으로 인한 특정 절단, 완전 하반신 마비, 특정 절단과 유사한 증상 또는 심각성을 가진 경우 제공될 수 있음. 차량 등록, 보험 및 기타 부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 및 유지 보수 수당도 지급

□ 일시금 선급금(Lump sum advance)³⁷⁾

○ 개요

- DVA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든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 일시불 선급금은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 가정 유지 보수, 냉장고나 세탁기 긴급 교체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연금 지급률이나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기존 선급금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이러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3주치의 근속연금(service pension)을 선급받을 수 있으며
- 선지급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이후 13주에 걸쳐 이자 없이 상환

○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대상자
 - DVA로부터 복무연금(Service Pension),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Age Pension), 소득 지원 보조금(Income Support Supplement), 전쟁 미망인 연금(War Widow(er)'s Pension), 장애 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 Payment) 중 하나를 받고 있는 경우 일시금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
 - 또는 DVA로부터 받는 유일한 지급금이 재향군인 자녀 교육 제도(VCES)에 따른 혜택, 주택 담보 대출 제도 지불, 재향군인 지급금(Veteran Payment) 중 하나라면 DVA로부터 연금을 선지급 받을 자격이 없음.
- 자격요건
 - 일시금 선급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 1) 위에 언급된 자격 지급금 중 하나를 받을 자격이 있음.

37)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Lump sum advance. <https://www.dva.gov.au/access-benefits/pensions-and-payments/lump-sum-advance>

- 2) 귀하가 사전 연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 동안 DVA 또는 Services Australia로부터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 3)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 없이 선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 4) 호주 거주자이며,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호주에 있어야 함.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일시금 선급금을 받을 수 없음.
 - 1) 12개월 전에 이루어진 이전 선급금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경우
 - 2) DVA 또는 Services Australia에서 연금을 초과 지급했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 빚이 있는 경우
 - 3) 이용할 수 있는 선지급 금액이 허용된 최소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

○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 연금액은 지정된 최대 및 최소 선급 금액이나 받는 2주 연금의 비율, 지난 13주 동안 받은 이전 진전 사항, 아직 상환하지 않은 이전의 선급금 등에 따라 달라짐.

3. 공공부조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훈제도(급여)와 해당 공공부조와의 관계

- 호주의 보훈 급여에는 소득 지원 성격의 복무연금(Service Pension, Partner Service Pension), 유족연금(Pension for orphans and war widow(er)s) 등과 보상 성격의 장애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 Payment), 영구장애수당(Permanent impairment payments under the MRCA), 특별 장애 연금(Special Rate Disability Pension, SRDP) 등의 급여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존 보훈 관련 급여는 공공부조 소득 산정시 소득으로 산정³⁸⁾됨에 따라 사회 보장 연금 또는 급여 평가 시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ADP(연금 또는 급여)가 소득으로 포함되어 감액(0으로 감소 포함)된 사람에게

38) 호주 정부 Guides to Social Policy Law 홈페이지. <https://guides.dss.gov.au/social-security-guide/4/3/5/70>

‘DVA 방위군 소득 지원 수당(Defence Force Income Support Allowance, DFISA)’을 지급(ADP가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

○ DFISA는 2004년 재향군인 자격(클라크 검토)법의 통과와 함께 도입(호주 정부 Guides to Social Policy Law 홈페이지, n.d.)

- 예컨대, 사회 보장 연금 또는 혜택(주요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소득 테스트 적용으로 인해 해당 연금 또는 혜택의 지급률이 0%가 되며, ADP가 지급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RA 자격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연금이나 혜택의 비율이 0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

○ DFISA는 DVA 급여 지급일(매주 두 번째 목요일)에 DVA에서 지급하며, 200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전까지 지급되다가 사회 보장 소득 테스트 면제의 결과로 폐지(DVA 법안 개정안 통과, 2022³⁹⁾)

- DFISA 수혜자만 가족 지원법에 따라 DFISA가 보충하는 사회보장 연금이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FTB Part A 소득 심사는 면제

□ 즉, 기존의 경우 사회보장 목적상 소득으로 모두 간주되었던 점에서 DVA 방위군 소득 지원 수당(Defence Force Income Support Allowance, DFISA)을 통해 보전해주던 것에서, 후자인 보상 성격의 보훈 관련 급여금에 대해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는 법안 개정 및 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지원 성격과 보상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게 됨.

○ 법안 개정 배경⁴⁰⁾

1) 정책 진단·권고에 대한 정부 대응

39)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1). Veterans' Affairs Legislation Amendment (Exempting Disability Payments from Income Testing and Other Measures) Bill 2021. https://classic.austlii.edu.au/au/legis/cth/bill_em/valadpfitaomb20211039/memo_0.html?utm_source=chatgpt.com

40) Commonwealth of Australia Explanatory Memoranda. (2021). VETERANS' AFFAIRS LEGISLATION AMENDMENT (EXEMPTING DISABILITY PAYMENTS FROM INCOME TESTING AND OTHER MEASURES) BILL 2021. https://classic.austlii.edu.au/au/legis/cth/bill_em/valadpfitaomb20211039/memo_0.html?utm_source=chatgpt.com /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홈페이지.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d/bd2122a/22bd036?utm_source=chatgpt.com

- 특수/중증 상이연금(Totally and Permanently Incapacitated, TPI) Review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로 TPI 지급수준 검토(Tune Review)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보상급여를 사회보장 소득시험에서 제외하도록 개편
- 보훈 보상성 지급을 복지 소득평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A Better Way to Support Veterans의 권고의 이행

2) 형평성(Equity)·생활보장 측면의 문제 해소

- 보훈급여금이 사회보장 자산조사 시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해당 가구의 사회보장 급여액이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DFISA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 중증 상이자 주거비 지원에 대한 검토 결과 장애 정도가 클수록 임대료 보조(Rent Assistance)가 더 적게 책정되는 주거비 지원의 역차별 발생

3) 보훈급여금의 목적 및 성격 명료화

- 보훈급여금은 법률·지침·용어에서 ‘pension by way of compensation’으로 정리하면서 복지 차원이 아닌 ‘보상(compensation)’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반 생계보장 급여의 소득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4) 행정 단순화

- 보상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하면서 DFISA와 같은 보전성격의 수당이 불필요해짐.

□ 2022년 이후 제도 개편으로 조정 장애연금(ADP)으로 통칭되었던 4가지 재향군인 보상금에 대해 사회보장 소득 심사 면제 시행⁴¹⁾

○ 해당 연금은 보상성, 지급성 성격의 지원으로 다음과 같음.

- VEA 장애보상 지급(이전 명칭 장애연금)은 VEA 제2부 또는 제4부에 따른 연금(사망한 재향군인의 부양가족에게 제30조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제외)

41) 호주 정부 Guides to Social Policy Law 홈페이지. <https://guides.dss.gov.au/social-security-guide/4/3/5/10>

- 1986년 재향군인 자격(과도기 조항 및 결과적 개정)법 4(6)항 또는 (8B)항에 따라 지급되는 VEA의 전신에서 저축된 연금(자녀에 대한 연금 제외)
- MRCA 영구 장애 지급금(주간 또는 일시금) - MRCA(영구 장애) 섹션 68, 71, 75 또는 80에 따른 지급금
- MRCA 제4장 제6부에 따른 MRCA 특별 요율 장애연금

○ 즉, 2022년 1월 1일부터 이 금액은 더 이상 사회보장 소득자산조사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 이러한 사회보장 소득 테스트 면제의 결과로 보훈부의 소득 지원 수당(DFISA)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

□ 보훈 관련 급여 지급금의 소득 처리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앞서 언급하였듯이 호주의 보훈 관련 급여는 보상(compensation)적 성격 급여와 생계를 위한 소득지원(income support) 성격 급여가 병존
- 이러한 구분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소득·자산조사에서 소득으로 산입할지 여부에 대해 변화해 옴

〈표 4-7〉 DVA 지급액과 사회보장 목적상 소득으로 처리되는 방식

| DVA 급여 | 사회보장 목적의 처리 |
|---|--|
| 1973년 기존 수급자를 위한 복무연금(Service Pension) | 수혜자가 1973년부터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자격을 유지한 경우 소득으로 간주 - 복무연금 - 사회보장연금 관련 법률 - SSAct 섹션 23(1)-'근로 연금', 섹션 23(1)-'사회 보장 연금' - SSAct section 23(1)-'service pension', section 23(1)-'social security pension' |
| 1973년부터 모든 수혜자를 위한 복무 연금(Service Pension) | 사회보장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관련 법률 SSAct section 23(1)-'social security benefit' |
| 사회보장수급자의 파트너 (1.1.P.85)가 받는 복무연금 | 상대방 소득으로는 불산입되나, 본인 소득테스트에서는 소득으로 간주 사회보장 소득 지원 수급자는 파트너 요율을 납부 |

| DVA 급여 | 사회보장 목적의 처리 |
|---|--|
| <p>25,000호주 달러의 특별 지급 (1941년 12월 7일부터 1945년 10월 29일까지의 일본군에 의해 전쟁 포로로 잡혀 있는 호주 군인 및 민간인)</p> <p>관련 법률 Compensation (Japanese Internment) Act 2001 section 12(2) 보상(일본인 수용)법 2001년 제12조(2)</p> | <p>특별수당은 소득심사에서 제외 개인의 자산 가치는 영구적으로 25,000호주 달러 감소 개인이 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로 인한 소득은 일반 소득 테스트 규칙에 따라 계산</p> <p>예: 이는 해당 개인이 금융 투자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일반적인 소득 테스트 추정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p> <p>정책참조 SS Guide 4.3.2.35 Income exempt from assessment - s 8(11) exempt lump sums, 4.6.2.10 General provisions for exempt assets SS 가이드 4.3.2.35 평가 면제 소득 - s 8(11) 면제 일시금, 4.6.2.10 면제 자산에 대한 일반 규정</p> |
| <p>25,000호주 달러의 특별 지급 (1950년 6월 27일부터 1956년 4월 19일까지 북한군에 의해 전쟁 포로로 잡혀 있던 호주 군인 또는 그들의 생존한 배우자)</p> <p>관련 법률 Veterans' Entitlements (Clarke Review) Act 2004 section 13(2) 재향군인 자격(클라크 검토)법 2004년 제13조(2) 항</p> | <p>특별수당은 소득심사에서 제외 개인의 자산 가치는 영구적으로 25,000호주 달러 감소 개인이 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로 인한 소득은 일반 소득 테스트 규칙에 따라 계산</p> <p>예: 이는 해당 개인이 금융 투자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일반적인 소득 테스트 추정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p> <p>정책참조 SS Guide 4.3.2.35 Income exempt from assessment - s 8(11) exempt lump sums, 4.6.2.10 General provisions for exempt assets SS 가이드 4.3.2.35 평가 면제 소득 - s 8(11) 면제 일시금, 4.6.2.10 면제 자산에 대한 일반 규정</p> |
| <p>제2차 세계대전(WW2) 중 특정 수용소에 대한 보상금(25,000호주 달러) 지급:</p> <p>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주둔한 호주 전쟁 포로를 위해 한 사람의 파트너가 받은 일회성 지급금</p> <p>관련 법률 Social Security and Veterans' Affairs Legislation Amendment (One-off Payments and Other 2007 Budget Measures) Act 2007 section 10(2) 사회 보장 및 재향군인 문제 법률 개정(일회성 지급 및 기타 2007년 예산 조치)법 2007년 제10조(2)</p> | <p>특별수당은 소득심사에서 제외 개인의 자산 가치는 영구적으로 25,000호주 달러 감소 개인이 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로 인한 소득은 일반 소득 테스트 규칙에 따라 계산</p> <p>예: 이는 해당 개인이 금융 투자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일반적인 소득 테스트 추정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p> <p>정책참조 SS Guide 4.3.2.35 Income exempt from assessment - s 8(11) exempt lump sums, 4.6.2.10 General provisions for exempt assets SS 가이드 4.3.2.35 평가 면제 소득 - s 8(11) 면제 일시금, 4.6.2.10 면제 자산에 대한 일반 규정</p> |

| DVA 급여 | 사회보장 목적의 처리 |
|---|--|
| <p>전쟁포로 인정 보충서</p> <p>관련 법률 SSAct section 8(8) (viiiaa) 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Part VIB SSAct 섹션 8(8) (viiiaa) 1986년 재향군인 권리법 제6B부</p> | <p>전쟁포로 인정 보조금은 소득테스트에서 제외</p> |
| <p>VEA 장애 보상금(이전 명칭: 장애 연금)은 VEA 제2부 또는 제4부에 따른 연금임 (사망한 재향군인의 부양가족에게 제30조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은 제외)</p> | <p>2022년 1월 1일부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p> <p>관련 법률 SSAct section 8(8)(yia) Excluded amounts-general SSAct 섹션 8(8)(yia) 제외 금액-일반</p> |
| <p>자녀 장애연금 지급 (Disability pension payments for children)</p> | <p>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부양 자녀를 위한 추가 무료 구역(1.1.D.70)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부양 자녀를 위한 추가 무료 구역에 대한 2009-2010 예산안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는 4.2.1.20에서 확인할 수 있음</p> <p>관련 법률 SSAct section 8(8)(yia) Excluded amounts-general SSAct 섹션 8(8)(yia) 제외 금액-일반</p> |
| <p>재향군인 자녀 교육 계획(VCES) - 교육 수당(education allowance)</p> <p>관련 법률 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sections 116 to 118 1986년 재향군인 자격법 116조~118조</p> | <p>VCES는 SSAct제5조(1)항에 따라 규정된 교육제도로 명시 VCES를 수강하는 학생은 다중자격제외조항이 적용되므로 YA 또는 Austudy를 수강할 수 없음 VCES는 학생이 호주 정부의 교육 지원, 소득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제도에 따른 교육 수당 지급을 금지</p> |
| <p>유족(자녀) 연금 (Orphan's pension)</p> | <p>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p> |
| <p>소득 손실 공제(Loss of earnings allowance)</p> | <p>소득으로 처리</p> |
| <p>유족(배우자) 연금 War widow's or widower's pension (which may continue to be received after re-partnering)</p> | <p>소득으로 처리</p> |

94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충성 관련 보훈급여 공제에 대한 해외연구 사례

| DVA 급여 | 사회보장 목적의 처리 |
|--|---|
| 유족 지원금 (Bereavement payment) |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
| 장례 혜택(Funeral benefit) |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
| 소득 지원 보충금 (Income support supplement) | 1995년 3월 20일부터 유족(배우자)은 사회보장지원금(security income support payment)과 ISS(호주 전쟁 미망인(들)과 완전 부양 배우자에게만 지급되는 소득지원보조금) 중에서 선택 기회가 없음(4.3.5.40). 즉, ISS와 함께 복무연금, 사회보장연금, 또는 기타 사회보장 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음 2002년 9월 6일 개정으로 ISS 지급금은 파트너의 사회 보장 자격을 평가할 때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
| 적정 지원 연금(Adequate means of support pension, AMS) | 소득으로 처리 |
|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장애 자녀에 대한 적정 지원 연금(AMS) 지급 | 소득으로 처리 |
| DVA가 지불한 ES |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DVA 지급의 ES 구성 요소는 소득 테스트에서 제외 |
| MRCA 영구 장애 지급금(MRCA permanent impairment payment)은 주급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MRCA(영구 장애) 제68조, 71조, 75조 또는 80조에 따라 지급됨. | 2022년 1월 1일부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관련 법률 Act reference: SSAct section 8(8)(zoa) Excluded amounts-general(SSAct 섹션 8(8)(zoa) 제외 금액-일반) |
| MRCA(MRCA Special Rate Disability Pension) 제4장 제6부에 따른 MRCA 특별 요율 장애 연금 | 2022년 1월 1일부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관련 법률 Act reference: SSAct section 8(8)(zoa) Excluded amounts-general(SSAct 섹션 8(8)(zoa) 제외 금액-일반) |

법률 자료: SSAct section 8(8)(yia) Excluded amounts-general, section 8(8)(zoa) Excluded amounts-general, section 8(8)(zob) Excluded amounts-general, section 8(8)(y) Excluded amounts - general, section 23(1)-'income support payment', 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정책 자료: SS Guide 4.3.5.20 About DVA service pensions, 4.3.5.30 Overview of DVA compensation payments, 4.3.5.40 About DVA war widow/ers pension, MRCA death benefits, DRCA death benefits & ISS, 4.3.5.50 About DVA adequate means of support pension & DVA orphan's pension, 4.4.1.30 Scope of deeming

자료: 호주 정부 Social Security Guide 홈페이지, Home Social Security Guide 4 Income & assets 4.3 Ordinary income 4.3.5 Income from DVA 4.3.5.10 How income from DVA is assessed (<https://guides.dss.gov.au/social-security-guide/4/3/5/10>)



제5장

캐나다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제 5 장 캐나다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1. 캐나다 공공부조제도의 역사(略史)⁴²⁾

- 1950년대부터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의료보호(Medicare), 캐나다 부조플랜(Canada Assistance Plan, CAP)으로 운영되다가 1996년 구조개혁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 전환
- 공공부조제도에 해당하는 CAP는 1966년에 도입되었으며, 연방정부와 주/준주 간의 비용분담에 대한 약정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방정부는 50%의 예산을 지급해왔음.
- The Established Programs Financing(EPF)이 1977년 도입되었으며, 보건 및 고등 교육 분야의 비용 분담 프로그램을 대체
- 1995년에 발표된 1996-1996 회계연도 캐나다 연방예산안에서 CAP를 폐지하고, 보건의료제도와 사회부조제도가 통합된 형태인 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CHST)로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시킴.
 - CAP와 EPF가 하나의 블록 기금(block fund)인 CHST로 통합됨. 즉, 공공부조와 보건, 고등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게 됨.
 - 연방정부의 매칭이 폐지되고 총액을 주/준주로 이전하면서 공공부조의 책임은 주/준주로 사실상 이양하게 됨. 대신 연방정부는 아동수당(Canada Childs Benefit, CCB), 노인소득보장(OAS, GIS), 실업보험(EI) 등 비공공부조 성격의 소득보장에 집중

42)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programs/federal-transfers/history-health-social-transfers.html>)를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함.

2. 주와 준주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 캐나다는 각 주(Province) 및 준주(Territory)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부조(income assistance/social assistance/welfare) 제도를 운영
 - 각 주와 준주는 고유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동일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음.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각 프로그램마다 행정 규칙, 수급자격 기준, 급여수준, 특수 유형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상이함(Oliveira, 2025).
 - 뉴브런즈윅주, 온타리오주, 퀘벡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유콘 준주는 사회부조를, 매니토바주는 고용 및 소득지원(Employment and Income Assistance)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노비스코샤주, 노스웨스트준주, 누나부트준주는 소득지원(Income Assistance)을, 그리고 앨버타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서스캐처원주는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각각 운영⁴³⁾
 - 해당 프로그램들의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복지급여로 불리는 현금을 지급받으며, 취업 상담, 직업 훈련,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교육 기회 제공 등 취업 지원도 제공 받음.
- 캐나다의 주요 주와 준주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⁴⁴⁾
 - (새스캐처원주) 새스캐처원 소득지원(SIS)과 장애소득보장(SAID)으로 구성
 - SIS는 2019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 수급자가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 성인기본급여(Adult Basic Benefit)와 주거급여(Shelter Benefit)로 구성
 - SAID는 중증 및 지속적인 장애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2009년 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2012년 독립생활자까지 확대

43) The Canadian Encyclopedia 홈페이지(<https://thecanadianencyclopedia.ca/en/article/social-programs-in-canada#Children>)를 바탕으로 작성함.

44) Oliveira(2025). Social Assistance Summaries, 2024.를 바탕으로 작성

- 생계소득지원금, 장애소득지원금(Disability Income benefit), 특별필요지원금(Exceptional Need benefit) 등의 급여로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과금, 세탁비, 전화요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음(Oliveira, 2025. p.103).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용 및 지원(BCEA) 프로그램은 소득지원(일시적 지원)과 장애지원으로 구성

- 소득지원은 생계비와 주거비로 구성. 생계비는 식비, 피복비, 개인 및 가정용품 구입 비용을, 주거비는 실제 주거비용을 각각 지원
- 장애지원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 비장애인 수급자보다 높은 급여 지급
-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과 함께 일반보조금과 건강보조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BCEA 보충규정). 자녀 교육관련 추가비용이나 필수의료비와 관련된 교통비 등 일부 추가 비용 상쇄 목적으로 지급(Oliveira, 2025. pp.15-16)

○ (노바스코샤주) 고용지원 및 소득보조(Employment Support and Income Assistance: ESIA) 프로그램은 2001년 가족수당프로그램과 지방사회부조를 대체하여 도입

- 프로그램 중 소득보조는 표준가구율(Standard Household Rate: SHR)이라 불리는 수당형태로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 식료품, 피복, 주거비, 연료비, 공과금, 개인용품 등에 대한 지출을 충당하되, 가구 규모와 주거상황에 따라 상이한 급여를 제공
- 장애인 또는 질환자에게는 기본 생계비와 더불어 특별급여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Oliveira, 2025. p.55)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와 접근성지원(AccessAbility Supports)으로 구성

- 사회부조 프로그램은 가구 내 부양가족 수와 주거유형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급여수준 제공. 식료품비, 주거비, 개인경비, 의료비, 안경비, 장례비 등이 포함

- 접근성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8년 7월에 기존의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대체. 개인지원(생활기술 훈련, 보조기기, 재가지원 또는 개인간병 등), 주거지원(돌봄제공자 수당, 주택 및 차량 개조 비용 지원), 지역사회 지원(구직 및 일자리 유지 지원 등), 보호자 지원(가족구성원이나 돌봄제공자 대상 휴식 지원 등), 재정지원(사회부조에서 제공하는 비목 지원)(Oliveira, 2025. pp.80-81)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1. 캐나다 보훈제도의 개괄⁴⁵⁾

□ 캐나다 보훈제도는 전통적 프로그램(4개)과 제대군인 신현장(NVC)에 따른 프로그램(17개)의 총 2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전통적 프로그램은 제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전통적 제대군인 (Traditional Veterans, TV)을 위한 프로그램

- ①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s, DP), ② 의료급여·기타건강구매서비스 (Treatment Benefits and Other Health Purchased Services, TBOHPS), ③ 제대군인 자립지원프로그램(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VIP) 그리고 ④ 참전제대군인수당(War Veterans Allowance, WVA)이 포함되어 있음(김태완 외, 2021, p. 91).

○ 제대군인 신현장(NVC)에 따른 프로그램은 캐나다 현역·제대군인(Canadian Armed Forces Members and Veterans, CAFMV)과 왕립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을 위한 1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김태완

45) '가', '나'는 김태완 외(2021)의 내용을 발췌 및 업데이트(Veterans Affairs Canada 홈페이지)하여 작성

외, 2021, p. 92)

- ① 장애보상금(DA), ② 재활 및 제대군인 신현장 지원서비스(RNVCSS), ③ 소득상실급여(ELB), ④ 경력영향수당(CIA), ⑤ 캐나다군 소득지원(CFIS), ⑥ 보충퇴직급여(SRB), ⑦ 전직지원서비스·기금(CTS/G), ⑧ 퇴직소득보장급여(RISB), ⑨ 중대상해급여(CIB), ⑩ 가족돌봄구제급여(FCRB), ⑪ 돌봄인정급여(CRB), ⑫ 교육·훈련급여(ETB), ⑬ 제대군인·가족복지기금(VFWF), ⑭ 제대군인 비상기금(VFEF), ⑮ 고통·통증보상(PSC), ⑯ 추가 고통·통증보상(APSC), ⑰ 소득대체급여(IRB)(김태완 외, 2021, p. 103)

가. 장애급여 프로그램(DBP)

- 이들 세부 프로그램들 중 상이자에 대한 대표적인 현금급여 프로그램은 장애급여 프로그램(Disability Benefit Program, DBP)임.
- 장애급여 프로그램은 장애연금(DP)과 장애보상금(DA)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9년 4월부터 장애보상금은 고통·통증보상금(Pain and Suffering Compensation, PSC)으로 전환되었음.
- 장애급여는 비과세 급여로 상이대상자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 제도임. 급여액은 장애가 서비스와 관련된 정도(자격, entitlement)와 장애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장애의 심각성(평가, assessment)에 따라 결정
- 장애급여 수급 대상은 캐나다 군인 또는 재향군인,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RCMP)의 현직 또는 전직 대원, 제2차 세계대전 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상선 해군 포함) 또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특정 민간인임.
- 질병 또는 장애 진단을 받았을 경우, 해당 질환이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됨.
- 위와 같이 자격이 확인되면 장애연금 또는 고통·통증보상금 중 하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장애연금은 평생 매월 지급되며,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및 자녀가 있는 경우

급여가 추가됨. 제2차 세계대전 또는 한국전쟁에 캐나다군(CAF)으로 복무한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됨. 기타 캐나다군 복무자는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장애연금 지급

- 고통·통증보상금은 평생 매월 급여와 일시불 중 본인이 선택

□ 이 중 장애연금(DP)은 국가가 제대군인에게 군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공하는 급여로서, 그 급여액은 장애와 군복무 간 관련성(연금수급권)과 장애가 현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장애평가)으로 결정됨(김태완 외, 2021, p. 92).

○ 장애연금은 1919년 도입된 연금법(Pension Act, PA)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당시 연금법은 전쟁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군인과 그 유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보조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나치만, 2015; 김태완 외, 2021, p. 92에서 재인용).

○ 장애연금의 지원대상은 제2차 세계대전 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대군인, 상선해군(Merchant Navy, MN), 전쟁 중 캐나다군을 지원한 민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연금신청서를 제출한 캐나다 현역·제대군인(CAFMV) 그리고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RCMP)의 현역·전역 대원임(나치만, 2015; 김태완 외, 2021, pp. 92-93에서 재인용).

□ 장애연금(DP) 수급의 자격은 연금수급권과 장애평가로 결정됨.

○ 연금수급권은 제대군인의 장애와 군복무 간 연관성으로 결정하는 수급권의 수준(the level of entitlement)을 의미함.

- 인정되는 수급권의 수준은 장애 발생이 전적으로 군복무 때문(full entitlement)인 경우 5/5, 장애 발생이 군복무와 일정 정도 관련(partial entitlement)된 경우 1/5~4/5로 각각 책정(조영훈, 2006; 김태완 외, 2021, p. 93에서 재인용)

○ 장애평가는 장애의 수준과 장애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되는 장애발생의 정도를 의미함.

- 제대군인부 의사의 검진을 거쳐 장애등급표(Tables of Disabilities,

TOD)에 의해 결정됨.

- 장애등급표(TOD)는 1919년 연금법(PA)에 따라 제대군인부(VAC) 장관이 정함.
- 장애평가는 군복무 관련 장애에 대한 의학적 손상평가(Medical Impairment Assessment)와 장애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평가(The Quality of Life Rating, QOLR)의 2개 등급표에서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됨 (조영훈, 2006; 김태완 외, 2021, p. 93에서 재인용).
- 장애평가는 1~100% 사이 연속값인 장애율(Disability Rating)로 표시. 장애율은 그 값에 따라 장애등급 20개 범주로 구분. 장애 1급은 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상태이고, 장애급수가 커질수록 장애정도는 낮은 것임(조영훈, 2006; 김태완 외, 2021, pp. 93-94에서 재인용).

□ 장애연금(DP)의 급여 수준은 연금급여율(rate of pension)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 급여율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장애율 산정) 신청자가 2개 이상의 장애(multiple disability)를 가지면 장애별 장애율을 계산하고, 합산하여 결합장애율(combined disability rating)을 구함(조영훈, 2006, p. 93; VAC, 2021; 김태완 외, 2021, p. 94에서 재인용).
- (2단계: 조정된 장애율 산정) 조정된 장애율은 장애율과 연금수급권 수준의 곱임 (조영훈, 2006, p. 93; 김태완 외, 2021, p. 94에서 재인용). 예컨대, 장애율이 25%, 연금수급권 수준이 4/5이면 조정된 장애율은 20%(=25%×4/5)가 됨. 장애율과 조정된 장애율은 1~100% 사이에 있음.

조정된 장애율 = 연금수급권 수준 × 장애 수준(장애율)

장애 수준(장애율) = 신체적 손상에 대한 의학적 평가 + 삶의 질에 미치는 평가

- (3단계) 조정된 장애율이 장애 1급(98~100%)~20급(5~7%)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
- (4단계) 해당 장애등급에 상응하는 연금급여율(장애율 구간의 중앙값)을 확인함. 예컨대, 조정된 장애율이 14%인 경우 장애 18급(13~17%)에 속하고, 장애 18급에 해당하는 장애율 구간의 중앙값이 15%이므로 연금급여율은 15%가 됨. 연금급여율이 5%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5% 이상이면 연금으로 제공(조영훈, 2006, p. 93; 김태완 외, 2021, p. 94에서 재인용)

□ 장애연금액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신청자가 독신이면 기본급여(신청자의 연금급여율)만 제공함. 신청자에게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재학생이면 25세 미만)이 있다면 기본급여와 부양가족급여 제공(조영훈, 2006, p. 93; 김태완 외, 2021, p. 94에서 재인용)
- 2025년 기준 장애연금 등급별, 가구 유형별 급여액은 다음 표와 같음.
 - 추가 자녀 1명당 증가액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4인 가구에 자녀 1명이 추가될 때 증가하는 급여액임. 즉,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 자녀 1명당 급여액 증가가 동일함.
 - 연금급여율 5% 미만은 일시금으로 지급함. 4%는 4,448.60CAD, 3%는 3,336.47CAD, 2%는 2,224.28CAD, 1%는 1,112.18CAD임.

〈표 5-1〉 캐나다 장애연금 급여액: 장애등급별·가구 유형별(2025년 1월)

(단위: %, CAD/월)

| 장애등급 (20개) | 조정된 장애율 (%구간) | 연금 급여율 | 가구 유형별 급여액 | | | | 추가 자녀 1명당 증가액 |
|---------------|------------------|-----------|-------------------------|--------------------------|------------------|------------------|---------------------|
| | | | 기본급여 | 기본급여 + 부양가족급여 | | | |
| | | | 자녀 없는 독신 (Single) | 자녀 없는 부부 (Married) | 부부 + 자녀 1명 | 부부 + 자녀 2명 | |
| 1 | 98-100 | 100 | 3,444.59 | 4,305.74 | 4,753.54 | 5,080.77 | 258.34 |
| 2 | 93-97 | 95 | 3,272.36 | 4,090.45 | 4,515.86 | 4,826.73 | 245.43 |
| 3 | 88-92 | 90 | 3,100.13 | 3,875.16 | 4,278.18 | 4,572.69 | 232.51 |
| 4 | 83-87 | 85 | 2,927.90 | 3,659.88 | 4,040.51 | 4,318.66 | 219.59 |
| 5 | 78-82 | 80 | 2,755.67 | 3,444.59 | 3,802.83 | 4,064.62 | 206.68 |
| 6 | 73-77 | 75 | 2,583.44 | 3,229.30 | 3,565.15 | 3,810.57 | 193.76 |
| 7 | 68-72 | 70 | 2,411.21 | 3,014.01 | 3,327.47 | 3,556.53 | 180.84 |
| 8 | 63-67 | 65 | 2,238.98 | 2,798.73 | 3,089.80 | 3,302.50 | 167.92 |
| 9 | 58-62 | 60 | 2,066.75 | 2,583.44 | 2,852.12 | 3,048.46 | 155.01 |
| 10 | 53-57 | 55 | 1,894.52 | 2,368.15 | 2,614.44 | 2,794.42 | 142.09 |
| 11 | 48-52 | 50 | 1,722.30 | 2,152.88 | 2,376.78 | 2,540.40 | 129.17 |
| 12 | 43-47 | 45 | 1,550.07 | 1,937.59 | 2,139.10 | 2,286.36 | 116.26 |
| 13 | 38-42 | 40 | 1,377.84 | 1,722.30 | 1,901.42 | 2,032.31 | 103.34 |
| 14 | 33-37 | 35 | 1,205.61 | 1,507.01 | 1,663.74 | 1,778.27 | 90.42 |
| 15 | 28-32 | 30 | 1,033.38 | 1,291.73 | 1,426.07 | 1,524.24 | 77.50 |
| 16 | 23-27 | 25 | 861.15 | 1,076.44 | 1,188.39 | 1,270.20 | 64.59 |
| 17 | 18-22 | 20 | 688.92 | 861.15 | 950.71 | 1,016.16 | 51.67 |
| 18 | 13-16 | 15 | 516.69 | 645.86 | 713.03 | 762.12 | 38.75 |
| 19 | 8-12 | 10 | 344.46 | 430.58 | 475.36 | 508.08 | 25.83 |
| 20 | 5-7 | 5 | 172.23 | 215.29 | 237.68 | 254.04 | 12.92 |

자료: Veterans Affairs Canada. Monthly Rates of Pensions for Disabilities Based on Schedule "I" and Section 75 of the Pension Act. 중 대표적인 가구 유형을 발췌하여 제시하였음.

- 〈표 5-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급여율은 장애등급 간 정률 5%로 정해짐.
즉 2등급은 1등급 급여의 95%, 10등급은 55%, 20등급은 5%로 각각 산정됨.
- 비율이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되는 3인 가구의 1등급 기준 급여액은 4,753.54CAD이고, 2등급의 급여액은 4,515.86CAD로 237.68CAD(1등급 급여액의 5%) 만큼의 차이가 있음.

나. 고통·통증보상금(PSC)

- 캐나다의 고통·통증보상금(Pain and Suffering Compensation, PSC)은 기준 자격을 갖춘 캐나다 군인 및 재향군인, 그리고 생존 배우자·사실혼인자 및 생존 자녀에게 군복무 관련 장애로 인한 사망, 구금, 비경제적 영향⁴⁶⁾을 인정하고 보상(비과세)하는 프로그램
 - 캐나다 정부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오던 장애보상금(DA)을 대체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PSC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 기존 장애보상금은 상이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거나 연간 지급, 또는 이 두 옵션의 조합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PSC에서는 일시불이나 종신형 월간 지급(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음.
 - PSC로의 전환은 상이군인에게 평생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PSC 수급자는 DA의 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⁴⁷⁾
 - PSC 수급자가 영구적인 월간 지급을 선택할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약 1,392CAD/월(장애 인정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되어 변화함.
 - 연금급여 인상률은 전년도 10월 31일에 종료되는 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0.10%씩 반올림하여 조정
 - 소비자물가지수는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캐나다의 연평균 전 품목 소비자물가지수(계절 조정 제외)를 의미
 - 그리고 수급자는 언제든지 월간 지급에서 일시불(총 인정액 중 월간 지급 후 남은 잔여 금액) 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매월 PSC를 지급 받는 재향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잔여 금액이 남아 있을 때 유족이나 재향군인

46) 통증, 고통, 기능 상실, 영구 장애가 캐나다 군인·재향군인이나 그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함.

47) 다만, PSC 수급자는 의료 보고서, 지속적인 PSC 자격, 장애정도, 급여액 평가에 필요한 정보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제공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PSC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사망 당시 부양 자녀인 사람에게 그 잔여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

□ 새로운 재향군인 헌장(New Veterans Charter)이 발효된 2006년 4월 1일부터 PSC 전환 직전인 2019년 3월 31일 사이에 이미 DA를 받은 수급자들도 보상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PSC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때 PSC로 전환하는 수급자들의 월간 수령액은 이전에 지급된 DA 금액과 수급 개시 당시 월간 연금형 PSC를 선택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됨.⁴⁸⁾

□ 한편, PSC 일시불 금액은 캐나다의 민간 및 공공 보험플랜하에서 산재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또는 캐나다 법원이 비금전적 손해배상(non-pecuniary damages award)으로 지급하는 유사한 비경제적 보상금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정⁴⁹⁾

○ 2025년 기준으로 PSC 일시불 금액은 최소 4,528,99CAD(PSC 1% 기준)에서 최대 452,898.74CAD임(PSC 100% 기준).

〈표 5-2〉 고등·통증보상금(PSC)률에 따른 급여액(2023년 기준)

| PSC율(%) | 조정된 장애율(%구간) | 월 급여액(CAD) | 일시불 금액(CAD) |
|---------|--------------|------------|-------------|
| 100 | 98-100 | 1,391.98 | 452,898.74 |
| 95 | 93-97 | 1,322.38 | 430,253.80 |
| 90 | 88-92 | 1,252.78 | 407,608.87 |
| 85 | 83-87 | 1,183.18 | 384,963.93 |
| 80 | 78-82 | 1,113.58 | 362,318.99 |
| 75 | 73-77 | 1,043.99 | 339,674.06 |
| 70 | 68-72 | 974.39 | 317,029.12 |
| 65 | 63-67 | 904.79 | 294,384.18 |
| 60 | 58-62 | 835.19 | 271,739.24 |
| 55 | 53-57 | 765.59 | 249,094.31 |
| 50 | 48-52 | 695.99 | 226,449.37 |

48) 이자율, 물가상승률, 사망률 등을 반영한 "D" 공식에 의해 결정.

49) 캐나다 재향군인회(Veterans Affairs Canada, VAC)는 2017년 4월 1일에 장애보상금을 인상(최대 금액: 314,723.89CAD → 360,000CAD)한 바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인상 이전에 보상금을 수령한 수급자들에게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차액을 일시불로 지급함.

| PSC율(%) | 조정된 장애율(%구간) | 월 급여액(CAD) | 일시불 금액(CAD) |
|---------|--------------|------------|-------------|
| 45 | 43-47 | 626.39 | 203,804.43 |
| 40 | 38-42 | 556.79 | 181,159.50 |
| 35 | 33-37 | 487.19 | 158,514.56 |
| 30 | 28-32 | 417.59 | 135,869.62 |
| 25 | 23-27 | 348.00 | 113,224.69 |
| 20 | 18-22 | 278.40 | 90,579.75 |
| 15 | 13-17 | 208.80 | 67,934.81 |
| 10 | 8-12 | 139.20 | 45,289.87 |
| 5 | 5-7 | 69.60 | 22,644.94 |
| 4 | 4 | 55.68 | 18,115.95 |
| 3 | 3 | 41.76 | 13,586.96 |
| 2 | 2 | 27.84 | 9,057.97 |
| 1 | 1 | 13.92 | 4,528.99 |

주: 1) 2025년 1월 1일 기준임.

2) 고통·통증보상금(PSC) 수급자는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 지급방식은 일시지급방식과 월간 지급방식이 있음.
 자료: Veterans Affairs Canada. Schedule 3 - Pain and Suffering Compensation. <https://public.cdn.cloud.veterans.gc.ca/pdf/resources/rates/psc-2025.pdf>

□ PSC는 상이군인을 위한 종신연금(Pension for Life, PFL) 중 하나임.

○ PFL에는 PSC 외에 ‘추가적인 PSC(Additional Pain and Suffering Compensation, APSC)’와 ‘소득 대체 혜택(Income Replacement Benefit, IRB)’이 있음.

○ APSC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며 PSC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임. 이 혜택은 군 복무와 관련하여 전역 후 생활에 장애가 되는 심각하고 영구적인 장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함.

- 신청자에 대한 개별 평가를 통해 장애가 확인되면 평가에서 장애의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등급이 지정됨.

<표 5-3> 추가 고통·통증보상금(PSC) 급여액(2025년 기준)

| 등급 | 1 | 2 | 3 |
|------------|----------|----------|--------|
| 월 지급액(CAD) | 1,815.62 | 1,210.41 | 605.21 |

자료: Veterans Affairs Canada. <https://www.veterans.gc.ca/eng/resources/rates>.

- 'IRB는 재활서비스나 직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소득 능력 감소 (Diminished Earning Capacity, DEC)가 있는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총소득이 전역 전 총 급여의 90% 이상이 되도록 매월 보장하는 혜택(과세 대상)임. 2025년 기준 최소 급여액은 58,826.09CAD임
 - 65세 이후에는 그 이전에 지급된 IRB 금액의 70%를 지급받음.

□ 피복수당(Clothing Allowance)은 의류의 마모를 유발하거나 특수 제작된 의류를 착용해야 하는 질환으로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 제공되며, 등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음.

〈표 5-4〉 피복수당 지급액(2025년 기준)

| 등급 | 지급액(CAD) | 등급 | 지급액(CAD) |
|----|----------|----|----------|
| 1 | 258.29 | 6 | 74.59 |
| 2 | 206.59 | 7 | 68.84 |
| 3 | 154.99 | 8 | 57.34 |
| 4 | 103.27 | 9 | 45.94 |
| 5 | 91.77 | 10 | 28.64 |

자료: Veterans Affairs Canada. <https://www.veterans.gc.ca/eng/resources/rates>.

다. 기타 수당⁵⁰⁾

- 특별장애수당(Exceptional Incapacity Allowance)
 - (내용)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이 삶이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비과세 월별 지급액
 - (자격) 장애연금 등급(장애율) 98% 이상인 경우,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의 조합이 총 98% 이상인 경우, 장애연금과 전쟁포로 보상금 합산액이 98% 이상인 경우, 장애급여를 받는 조건과 관련된 예외적인 무능력이 있는 경우
 - (급여수준) 아래 〈표 5-5〉와 같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상이

50) Veterans Affairs Canada 홈페이지의 각 급여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표 5-5〉 특별장애수당 지급액(2025년 기준)

| 등급 | 지급액(CAD) |
|----|----------|
| 1 | 1,823.46 |
| 2 | 1,519.52 |
| 3 | 1,215.64 |
| 4 | 911.82 |
| 5 | 607.84 |

자료: Veterans Affairs Canada.

<https://www.vhhttps://veterans.gc.ca/en/about-vac/resources/rates#eia>

□ 중상수당(Critical Injury Benefit)

- (내용) 캐나다 군인이 입은 가장 심각하고 충격적인 복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의 즉각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일시금
- (자격) 2006년 4월 1일 이후 캐나다 군복무 중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삶이 질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경우
 - 손목이나 발목 위 또는 그 위의 절단, 5일 이상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입원 했거나 복잡한 치료를 받은 경우, 12주 이상 연속으로 지속되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 상태(양쪽 눈 실명, 하나 이상 사지 마비, 신장/방광 또는 장의 조절능력 상실, 16주 이상 식사, 입욕, 드레싱 등 3가지 이상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급여수준) 90,368.09CAD(2025년 기준)

□ 구금수당(Detention Benefit)

- (내용) 재향군인복지법(VWA)에 따라 제공되는 구금에 대한 보상
- (자격) CAF 복무 중 특정 기관에 의해 구금된 군인 또는 재향군인에게 구금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구금 기간에는 해당 군인 또는 재향군인이 특정 기관의 체포를 피하거나 탈출하는 데 관여한 기간이 포함(최소 30일 요건)
- (급여수준) 장애수당 또는 장애연금의 100% 한도 초과 지급 가능

□ 전쟁포로 보상금(Prisoner of War Compensation)

- (내용) 2006년 4월 1일 이전 30일 이상 구금되거나 체포를 피한 재향군인을 위한 비과세 급여
- (자격) 적군에 의해 최소 30일 동안 포로로 잡히거나 구금되었거나, 적에게 포로로 잡힌 후 최소 30일 동안 적의 포로를 피하거나 적으로부터 탈출한 경우
- (급여수준) 장애연금의 5~40%(예, 30~88일은 장애연금의 5%)

□ 간병수당(Attendance Allowance)

- (내용) 일상생활을 도와줄 간병인 고용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급여. 금액은 간헐적 돌봄부터 상시 돌봄 및 감독까지 필요한 돌봄 수준에 따라 결정
- (자격) 장애연금 등급 1% 이상인 경우 또는 전쟁포로 보상을 받는 경우, 군 복무와 관련성 무관, 일상생활 활동(식사, 목욕, 옷입기, 화장실 이용, 이동 또는 약물 복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급여수준) 아래 <표 5-6>와 같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상이

<표 5-6> 간병수당 지급액(2025년 기준)

| 등급 | 지급액(CAD) |
|----|----------|
| 1 | 2,279.29 |
| 2 | 2,051.47 |
| 3 | 1,367.63 |
| 4 | 911.82 |
| 5 | 364.81 |

자료: Veterans Affairs Canada. <https://www.vhhttps://veterans.gc.ca/en/about-vac/resources/rates#eia>

□ 간병인 인정수당(Caregiver Recognition Benefit)

- (내용) 장애가 있으면서 시설이 아닌 집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이 일상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여 지급되는 비과세 수당
- (자격) 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보상 또는 고통·통증 수당이 승인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인지적 건강상태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급여수준) 월, 1,239,46CAD(2025년 기준)

□ 보훈독립프로그램(Veteran Independence Program)

- (내용) 부지 유지 관리, 가사, 식사 준비, 개인 관리, 전문 건강 및 지원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연간 비과세 급여
- (자격) 장애급여 수급, 전쟁참여용사 수당 수급, 전쟁포로보상, 장기요양시설의 계약병상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급여수준)
 - 홈페이지 서비스: 부지유지 1,885.02CAD, 영양지원 끼니당 10.92CAD, 가사 관리는 Home Care Service 총액 등(5가지 가사관리 항목 총액이 연간 13,509,44CAD를 초과할 수 없음)

2. 주요 공공부조 급여(또는 대상선정)에 영향을 주는 보훈급여

- 주 또는 준주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제도와 관계되는 보훈급여 성격
 - 아래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캐나다의 공공부조제도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급여의 성격은 장애연금(DP)과 같이 피해보상을 위한 소득지원 성격의 급여가 아닌 부가적인 급여 성격이라 할 수 있음.
 - 주(또는 준주)마다 공공부조제도와와의 관계 설정에 차이는 있지만, 사례를 검토한 네 개의 주 모두가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급여는 고통·통증보상금(PSC) 이고, 가장 많은 급여를 공제하고 있는 서스캐처원주의 사례를 보면, 이 밖에 특별장애수당(EIA), 중상수당(CIB), 구금수당(DB), 전쟁포로 보상금(PWC), 간병수당(AA), 피복수당(CA) 등의 급여가 있음.

3. 공공부조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훈제도(급여)와 해당 공공부조와의 관계

□ Saskatchewan주 사례

- 보훈급여(Veterans Affairs Canada Benefits) 중 일부가 공공부조(서스캐처원 장애보장소득(Saskatchewan Assured Income for Disability: SAID))

산정 시 공제(Saskatchewan.ca, 2025)

- 모든 보훈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보훈급여 성격(보상성 vs 소득대체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 중 PSC(Pain and Suffering Compensation) 이 공제 대상. 즉 소득대체형이 아닌 보상성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공제
- 공제되는 보훈급여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음.
 - 고통통증보상금(PSC), 추가고통보상금(APSC), 특별장애수당(Exceptional Incapacity Allowance), 중상수당(Critical Injury Benefit), 구금수당(Detention Benefit), 전쟁포로 보상금(Prisoner of War Compensation), 간병수당(Attendance Allowance), 피복수당(Clothing Allowance), 보훈독립프로그램(Veteran Independence Program), 간병인 인정수당(Caregiver Recognition Benefit)

○ 서스캐처원주 공공부조 제도인 Saskatchewan Income Support(SIS)에서의 공제 (Saskatchewan.ca, 2020)

- 지방자치단체,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해당 정부 기관 또는 해당 정부 소유 기업으로부터 통증 및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금액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례⁵¹⁾

○ BCEA(BC Employment &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ulation)

- 비근로 소득(earned income) 정의에 전쟁 장애 연금(war disability pensions), 군인 연금(military pensions) 및 전쟁 참전 용사 수당(war veterans' allowances)이 포함. 즉,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만, 같은 규정에 “매월 연방 보훈부 급여 50CAD 면제”라는 부분 면제 조항 존재
- (b) 가족 단위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재향군인부(Veterans Affairs

51) British Columbia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bclaws.gov.bc.ca/civix/document/id/crbccrbcc/263_2002_pit_2024_06_01

Canada) 월별 급여 중 50CAD

- (Ivi) 공공안전 및 비상대비부(캐나다)의 권한으로 설립된 응급구조대원 추모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보훈관련 급여금은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의 급여로 참고)

□ 노바스코샤주 사례⁵²⁾

○ 고용지원 및 소득보조(Employment Support and Income Assistance: ESIA) 제도에서 보상금 성격은 면제 가능한 체계를 둠(세부 판단 규정 포함)(정책 6.3.3. Compensation Payments).

- ESIA은 대상의 독립과 자립으로의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함
- 공제항목에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
 - 2. 상선 해군 참전 용사 또는 상선 해군 참전 용사의 생존 배우자로서 전후 혜택으로 지급되는 보상금(a payment as a Merchant Navy Veteran or as a surviving spouse of a Merchant Navy Veteran for post-war benefits)
 - 4. 연방 또는 주 정부의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보상금
 - 7. 응급 구조대원 추모 지원금 프로그램에 따른 지급금

□ PEI(Prince Edward Island)주 사례⁵³⁾

○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정책에서 “Awards for Pain and Suffering” 면제가 명시되어 있음. 이는 VAC의 PSC/APSC와 유사한 급여로 추정

- 17. Awards for Pain and Suffering (Regulation 13(5)(p))
 - 고통, 슬픔이나 애도(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됨)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상금의 일부에 대해서 면제 조항을 적용

52) Nova Scotia 주정부 홈페이지.

https://novascotia.ca/coms/employment/documents/ESIA_Program_Policy_Manual.pdf

53) Prince Edward Island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princeedwardisland.ca/sites/default/files/publications/4-4social_assistance_policy_income_exemptions_updated_.pdf



제6장

국가 간 비교 및 정책 함의

제1절 국가 간 비교

제2절 프랑스와 일본에서 전후 공공부조와 보훈 관계의
논의

제3절 정책함의 및 검토 사항

제 6 장 국가 간 비교 및 정책 함의

제1절 국가 간 비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임.
 - 법령·고시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지정된 일부 급여만 예외로 제외되는 구조임.
 -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수당·각종 현금 급여) 등이 포함됨.

- 보훈급여는 현금성 보훈급여와 비현금성 보훈지원으로 분류됨. 소득인정액 산정 시 논점이 되는 것은 현금성 급여임.
 - 비현금성 지원은 현금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 산정되지 않음.
 - 보훈급여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소득평가액에 전액 반영함. 일시금 보상금·장제비·위로금 등은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소득 또는 재산 증가요인으로 보되 별도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처리함.
 - 따라서 해당 연도 지침에서 보훈 관련 일시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보훈급여금을 다른 공적연금과 유사한 현금성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임.
 - 따라서 적용 가능한 공제는 보훈급여와 무관하게 모든 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제임.

〈표 6-1〉 공공부조와 보충급여금의 관계 비교표

| 국가 | 공공부조 | 보충급여명 | 급여 성격 | 급여요건 | 지급금액 | 소득산정시 공제여부 및 범위 |
|----|----------|---------------|--------------------|------------------------------|---------------|-------------------------|
| 한국 | 국기초 생계급여 | 생활조정수당 | 저소득 대상 수당 | 독립유공자 중 세계군란 | 24.2~37만원 | 전액 |
| | | 참전명예수당 | 공헌·공훈 수당 | 65세 이상 참전자 | 45만원 | 전액(1인가구 중위소득 20% 이하 금액) |
| |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 개별수당 | 참전자 중 후유의증 | 59.6~123.4만원 | 장애인연금 수준 (25년 43.3만원) |
|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 개별수당 | 고엽제후유증자 2세 환자 | 137.1~219.8만원 | 장애인연금 수준 (25년 43.3만원) |
| | | 보상금 | 회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 진사, 순직자 및 상이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 45.6~754.7만원 | 비공제 (26년부터 장애인연금 수준) |
| | | 부양가족수당 | 보상금 부기수당 | 부양가족 있는 보상금수급자 | 10만원 | 비공제 |
| | | 고령수당 | 보상금 부기수당 | 60세 이상 보상금수급자 | 9.7만원 | 비공제 |
| | | 무공영예수당 | 공헌·공훈 수당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 51~53만원 | 비공제 |
| | | 6·25전몰자녀수당 | 개별 수당 | 6.25 전사자 자녀 | 58.5~169.4만원 | 비공제 |
| | | 4·19혁명공로수당 | 공헌·공훈 수당 | 4.19 건국포장자 | 46.1만원 | 비공제 |
| | | 간호수당 | 지출 보전 성격의 개별 수당 | 간호 필요 중상이자 | 214~321만원 | 비공제 |
| | | 중상이부기수당 | 지출 보전 성격의 보상금 부기수당 | 중상이자 | 122.1~289.9만원 | 비공제 |
| | | 전상수당 | 보상금 부기수당 | 전쟁 중 상이 | 9만원 | 비공제 |

| 국가 | 공공부조 | 보훈급여명 | 급여 성격 | 급여요건 | 지급금액 | 소득산정시 공제여부 및 범위 |
|----|-------|-------------------------|---------------|--|-------------------------------------|--|
| 국가 | 기초 연금 | 국가유공자 보훈 연금 |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상 전상·공상·순직·상이등급 기준 충족 군인·경찰·소방 등 공상·상이 인정 | 상이등급에 따라 월 30만원~100만원+부가수당 | 전액 |
| | |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상이) |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 순직·전사 등 유족 요건 충족 | 등급별 보상금·생활조정수당 등 월 지급 | 전액 |
| |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보상금(유족) |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 5·18 관련 희생·부상·공헌 인정 | 월 유족 보상연금 | 전액 |
| | | 5·18 민주 유공자 보상연금 |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 특수임무 수행 및 희생·부상 인정 | 등급별 보상금·보상연금 | 전액 |
| | | 특수임무유공자 보상금 |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 특수임무 수행 및 희생·부상 인정 | 등급·유형별 월 보상금 | 전액 |
|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중앙·지자체) | 공헌·공훈 수당 | 참전유공자 인정 | 중앙: 월 35,000원 지자체: 지역별 3~20만원 수준 | 전액 |
| |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 (일시금) |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 일부 법률상 일시 보상, 위로 성격 | 수십만~수백만원 일시 지급 | 원칙적으로 포함함. 단, 장례·재해 목적 항목과 동일한 경우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어 연도별 지침 확인 필요 |
| | | 보훈 장례지원금 |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원 | 약 100~300만원 유형별, 지자체별 상이함 | 조건부 제외 가능 - 기초연금 지급 중 장례비 등 목적성 일시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음 규정 적용이 가능함. 보훈 장례비가 해당 항목에 명시되는지 연도별 지침 확인 필요 |
| | | 의료지원 | 비현금지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진료비 감면 또는 현물 서비스 | 제외 |
| | | 교육지원 | 비현금지원 | 수급자 본인·자녀 교육지원 | 등록금 전액 또는 부분 감면 | 제외 |

| 국가 | 공공부조 | 보훈급여명 | 급여 성격 | 급여요건 | 지급금액 | 소득산정시 공제여부 및 범위 |
|----|---------------------------|--|--|--|--|--|
| 미국 | | 취업지원 | 비현금지원 | 보훈대상자 취업 혜택 | 금전 미지급 | 제외 |
| | | 보훈대부 | 비현금지원 | 보훈대상자 저리 대출 | 수백만~수천만원 대부 | 제외 - 대출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 | | 주택지원 | 비현금지원 | 보훈대상자 주거지원 | 현물·기회제공 | 제외 - 단 취득한 주택은 재산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 | 장애 보상금 (Disability Compensation) | (원칙적 산업·일부공제) 보상, 장애 | 군 복무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부상 (복무 연관성) 소득/자산과 무관 (비자산조사) 10%~100% 장애등급 판정 | 장애등급 10%(\$175.51) ~ 장애등급 100%(\$3,831.30) 장애등급 및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 | 원칙적 소득 인정. 복무 연 관 보상 성격이나 SSI 심사 시 비군로 소득으로 간주하여 전액 산입. (단, 일반 소득공제 \$20 적용) |
| | 재향군인연금 (Veterans Pension) | 소득지원성경, 전시 복무 이력 65세 이상 또는 영구·완전 장애 (비복무 연관) 의회가 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Net Worth Limit) 이하 (2025년 \$159,240) | 최대 연간 연금액에서 타 소득을 뺀 차액 지급. 최대 연간 연금액은 본인 (부양가족 없음)은 연 \$16,965 (월 \$1,413) 부양가족 및 간호·제가 수당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 | 원칙적 소득 산정. 저소득층 대상 소득지원 성격으로 공공부조와 목적이 유사하여 전액 산입. | 소득 인정(수급액 삭감) 보충적 소득보장(SSI)와 재대군인부 연금은 둘 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조사 기반 현금 지원임. (중복 불가) 재대군인부의 장애보장금과 연금을 동시에 지급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둘 중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함. | |
| | 간호수당 (Aid and Attendance) | 가구특성별 (간병) 지출 보전 성격, 재대군인부의 연금 또는 장애보상금 수급자 중, 타인의 | 연금 수급자가 간호수당 자격 시, 최대 연간 연금액이 연 \$28,300임 (월 \$2,358임) 부양가족 및 간호·제가 수당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 | 산별적 공제(제외),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간병비 보전 성격으로 간주하여 소득 산정 시 미인정. | 소득 미인정 (수급액 영향 없음) 사회보장국(SSA) 정책에 따라, 재대군인부의 간호·제가 수당은 의료비 보전 성격으 | |

| 국가 | 공공부조 | 보험급여명 | 급여 성격 | 급여요건 | 지급금액 | 소득산정시 공제여부 및 범위 |
|----|----------------------------|----------------------------|----------------------------|---|---|--|
| 영국 | 통합 크레딧 | 전쟁연금제도 (WPS)의 전쟁장애연금 (WDP) | 장애, 보상 | 2005년 4월 6일 이전 군 복무로 부상을 당하였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전쟁장애연금의 경우 장애 정도가 20%가 이상이어야 함 | £2,494~£12,471 장애연금(100%요율) 담당자 (연간 £) | 전쟁장애연금은 UC의 소득 산정에서 전액 공제 ※ 전쟁장애연금의 일시금 (gratuity)은 12개월 동안 급여 산정시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음(신탁될 경우 그 이후에도 산정에서 제외) |
| | | AFCS의 보장소득지급 (GIP) | 장애, 보상 | 2005년 4월 6일 이후에 부상을 당하였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 해당(장애율은 20% 이상) | 재해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해당 급여는 연령, 상해 및 질병 정도, 제대 당시 급여 등에 따라 달라짐 | 보장소득지급(GIP)은 UC의 소득산정에서 전액 공제됨 ※ AFCS의 일시금(lump-sum payment)은 12개월 동안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음(신탁될 경우 그 이후에도 산정에서 제외) |
| | 전쟁연금제도 (WPS)의 전쟁장애연금 (WDP) | 장애, 보상 | 상동 (통합 크레딧의 전쟁장애연금과 동일) | 상동 (통합 크레딧의 전쟁장애연금과 동일) | 상동 (통합 크레딧의 전쟁장애연금과 동일) | 주당 10파운드까지 공제됨 ※ 일시금(gratuity) 재산공제는 상동 |
| | AFCS의 보장소득지급 (GIP) | 장애, 보상 | 상동 (통합 크레딧의 보장소득지급과 동일) | 상동 (통합 크레딧의 보장소득지급과 동일) | 상동 (통합 크레딧의 보장소득지급과 동일) | 주당 10파운드까지 공제됨 ※ 일시금(lump-sum payment) 재산공제는 상동 |
| | 추기급여(HB) | 전쟁연금제도 (WPS)의 전쟁장애연금 (WDP) | 장애, 보상 | 상동 | 상동 | 주당 10파운드까지 공제하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전액 공제 가능 ※ 일시금(gratuity) 재산공제는 상동 |

| 국가 | 공공부조 | 보훈급여명 | 급여 성격 | 급여요건 | 지급금액 | 소득산정시 공제여부 및 범위 |
|----|---------------------------------------|---|--------|---|-------------------------------------|---|
| | | AFCS의 보장소득지급 (GIP) | 장애, 보상 | 상동 | 상동 | 주당 10파운드까지 공제하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전액 공제 가능 ※ 일시금(lump-sum payment) 재산 공제는 상동 |
| | 연금 크레딧 | 전쟁연금제도 (WPS)의 전쟁장애연금 (WDP) | 장애, 보상 | 상동 | 상동 | 주당 10파운드까지 공제됨 ※ 일시금(gratuity) 재산공제는 상동 |
| | | AFCS의 보장소득지급 (GIP) | 장애, 보상 | 상동 | 상동 | 주당 10파운드까지 공제됨 ※ 일시금(lump-sum payment) 재산 공제는 상동 |
| 호주 | 노령연금(Age Pension)· 장애연금(DSP) 등 사회보장급여 | 장애보상금 (Disability Compensation Payment) | 장애, 보상 | 군 복무로 인한 상이·질병에 대한 보상 상이 균경 보상금 제도 | 점수별 상이 최대보상액 A\$ 849.40/week | 소득 불산입 (2022년 재향군인부 법률 개정(VETERANS' AFFAIRS LEGISLATION AMENDMENT) 이후 보상적 성격 지원금으로 판단) |
| | | 영구장애수당 (Permanent impairment payments under the MRCA) | 장애, 보상 | 군 복무 중 또는 복무 이후 발생한 상이/질병이 인정되는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영구적 손상을 입은 자 | A\$ 431.84/week (2025년 7월 1일 기준) | 소득 불산입 (2022년 재향군인부 법률 개정(VETERANS' AFFAIRS LEGISLATION AMENDMENT) 이후 보상적 성격 지원금으로 판단) |

| 국가 | 공공부조 | 보충급여명 | 급여 성격 | 급여요건 | 지급금액 | 소득산정시 공제여부 및 범위 |
|----|------|--|--------|--|-----------------------------|---|
| | | 특별 장애 연금 (Special Rate Disability Pension, SRDP) | 장애, 보상 | 복무 관련 상이 또는 질병 상태가 인정되는 자 특수장해·임격 요건(50점 이상 + 취업불가능 등) | 최대 \$930.45 (2025년 기준) | 소득 불산입 (2022년 재향군인부 법률 개정(VETERANS' AFFAIRS LEGISLATION AMENDMENT) 이후 보상적 성격 지원금으로 판단) |
| | | 복무연금 (Service Pension) | 소득지원 |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영구적인 업무가 불가능인 경우 DVA에서 지정한 전쟁, 비전쟁 또는 평화유지군 복무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복무를 이수한 자. DVA 자산 심사서에서 평가한 소득 및 자산 한도 요건을 충족한 자 | 최대 \$1,178.70 (2025년 기준) | 소득 산입 (참전·보훈 대상자를 위한 소득지원으로 사회보장급여 내 노령연금 (age pension)과 급여성격, 급여수준, 소득·자산테스트 구조 동일) |
| | | 파트너 대상 복무연금 (Partner's Service Pension) | 소득지원 | 복무자(퇴역·재향군인 등)가 자격복무를 갖추었거나 복무연금(Service Pension)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지급 | 최대 \$888.50 (2025년 기준) | 소득 산입 (참전·보훈 대상자를 위한 소득지원으로 사회보장급여 내 노령연금 (age pension)과 급여성격, 급여수준, 소득·자산테스트 구조 동일) |
| | | 유족연금 (War widow(er)'s pension) | 소득지원 | 전사·공상 등으로 사망한 복무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또는 파트너) | \$1,200.80 | 소득 산입 (사회 보장 목적으로 일반 소득으로 평가) |

| 국가 | 공공부조 | 보훈급여명 | 급여 성격 | 급여요건 | 지급금액 | 소득산정시 공제여부 및 범위 |
|-----------------------|---------------|---|--------------|---|------------------------------------|-----------------|
| 캐나다 Saskatchewan 주 | 장애보장소득 (SAID) | 고통통증 보상금 (PSC) | 보상금 | 군복무 관련 장애로 사망, 구금, 비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정. 군인 및 재향군인, 생존배우자·사실혼인자 및 생존자녀에게 지급 | 14(1)~1.392CAD(100%) (2025년 기준) | 공제 |
| | | 추가고통 보상금 (APSC) | 보상금 | 전역 후 생활에 장애가 되는 심각한고 영구적인 장애에 대한 인정과 보상 | 605(3급)~1.816CAD(1등급) | 공제 |
| | | 특별장애수당(Excpotional Incapacity Allowance: EIA) | 보상금 | 장애율이 98% 이상인 경우 또는 장애연금과 장애보상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장애연금과 전쟁포로 보상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장애급여 조건과 관련된 예외적 무능력이 있는 경우 | 607.84(5등급)~ 1,823.45CAD(1등급) | 공제 |
| | | 중상수당 (Critical Injury Benefit) | 보상금 | 군 복무 중 입은 가장 심각하고 흉격적인 부상이나 질병을 가진 자 | 일시금 90,368.09CAD | 공제 |
| | | 구금수당 (Detention Benefit) | 보상금 | 군 복무중 적, 반대세력 또는 테러집단에 의해 구금(30일 이상)된 재향군인이나 CAF 구성원에게 지급 | 장애수당 또는 장애연금의 100% 한도 초과 | 공제 |
| | | 전쟁포로보상금 (Prisoner of War Compensation) | 보상금 | 적군에 의해 최소 30일 이상 포로로 잡히거나 구금 | 장애연금의 일정 비율 (5~40%)(30~88일은 5%) | 공제 |
| | | 간병수당 (Attendance Allowance) | 질병에 따른 지출 보전 | 심각한 장애로 매일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 365(5등급)~ 2,279CAD(1등급) | 공제 |

| 국가 | 공공부조 | 보험급여명 | 급여 성격 | 급여요건 | 지급금액 | 소득산정시 공제여부 및 범위 |
|---------|---|--|--------------|---|--|-----------------|
| | | 피복수당 (Clothing Allowance) | 장애에 따른 지출 보전 | 의류의 마모를 유발하거나 특수 제작된 의류를 착용해야 하는 질환으로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에 지급 | 26.73(10등급)~241.13CAD (1등급) | 공제 |
| | | 보훈독립프로그램 (Veteran Independence Program) | 질병에 따른 지출 보전 | 장애연금 또는 전쟁참전용사 수당 또는 전쟁포로 보상 수급자, 장기요양시설 계약명상 비이용자 | 1,885.02CAD(Grounds Maintenance) 10.92CAD(매 끼니 당) | 공제 |
| | | 간병인 인정수당 (Caregiver Recognition Benefit) | 질병에 따른 지출 보전 | 장애연금 수급자 중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인지적 건강 상태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설 미입소자 | 월 1,239.46CAD | 공제 |
| | Saskatchewan Income Support(SIS) | 통증 및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된 금액 (PSC로 추정) | 보상금 | 군복무 관련 장애로 사망, 구금, 비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정, 군인 및 재향군인, 생존배우자·사실혼인자 및 생존자녀에게 지급 | 1,297(1%)~1,297CAD(100%)(2023년 기준) | 공제 |
| 캐나다 BC주 | BCEA(BC Employment and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ulation) | 매월 연방 보험급여금 중 50불 | 성격 구분 없음 | | | 공제 |

| 국가 | 공공부조 | 보훈급여명 | 급여 성격 | 급여요건 | 지급금액 | 소득산정시 공제여부 및 범위 |
|-------------------------|---|---|-------|---|--|-----------------|
| 캐나다 Nova Scotia 주 | 고용지원 및 소득보조(Employment Support and Income Assistance: ESIA) | 상선 해군 참전 용사 또는 상선 해군 참전 용사의 생존 배우자로서 전후 혜택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 보상금 | | | 공제 |
| | | 연방 또는 주 정부의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보상금 | 보상금 | | | 공제 |
| | | 응급 구조대원 추모 지원금 프로그램에 따른 지급금 | 보상금 | | | 공제 |
| 캐나다 PEI주 |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 고통과 고통, 또는 슬픔이나 애도(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됨)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상금의 일부 | 보상금 | 군복무 관련 장애로 사망, 구금, 비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정, 군인 및 재향군인, 생존배우자·사실혼인자 및 생존자녀에게 지급 | 1,297(1%)~ 1,297CAD(100%) (2023년 기준) | 공제 |

제2절 프랑스와 일본에서 전후 공공부조와 보훈 관계의 논의

1. 일본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일본 헌법 제9조에 근거, 다른 나라처럼 정식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군사적인 포상과 서훈은 이뤄 질 수 없어 우리나라처럼 '국가보훈부' 같은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없음(최상권, 2011)
- 보훈 관련 업무는 총무성과 후생노동성 같은 일반 행정기구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최상권, 2011, pp. 238-239)
- 일본의 보훈제도는 은급제도에서 출발하는데, 은급제도는 메이지 초기의 군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연금제도로, 1875년 4월에 '육군무관 상이부조 및 사망자祭 粢 및 그 가족부조 개칙'과 같은 해 8월에 '해군은퇴령'이 제정되었음
- 이 외에도 교사, 순사, 간수 등 개별적으로 은급제도가 존재했는데, 1923년 제정된 '은급법'으로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었고 이후 총동원 시기 유족과 전상병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방향성으로 한 개정도 이뤄짐. 하지만 패전으로 인해 해당 법은 폐지됨(박환무, 2006, pp. 15-16)
 - 1946년 전후 연합군최고사령관 고시에 의해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1953년에 다시 부활(정성범, 2020, p.48)
 - 1959년에는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을 시행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은급에서 공제연금으로 이관함
- 2차 세계대전 패전의 공식 선포(1945년 8월 15일) 이후 1947년 5월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미군정 통치로 7년간 주권이 이양되었다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952년 4월) 체결을 통해 주권이 회복됨(최상권, 2011, p.237)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9조에 의해 정식군대를 가지지 못하며, 일본 자위대 역시 정식군대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사망, 부상, 질병 등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에 의해 보장되고 있음.
 - 일본의 전후 보훈 관련 사업은 일반 행정부(총무성, 후생노동성)에서 담당

하지만, 상호 시너지효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최상권, 2011, p.239).

- 첫째, 패전으로 해체된 군 소속의 구(舊)군인의 연금지급은 총무청의 은급국에서, 둘째, 전몰자 유골수집, 미귀환자 잔류가족에 대한 보훈, 피해 민간인 구제 업무 등은 후생성의 사회 원호국에서 관장하였음.
- 원호 대상자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있어 보훈단체와의 협조차원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짐(최상권, 2011. pp.239-24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보훈 관련 업무는 총무성과 후생노동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총무성의 인사은급국과 후생노동성의 사회 원호국이 보훈 관련 업무의 주무 부서임(정성범, 2020, p.48)

-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보훈 관련 업무를 담당
 - 전후 해외 체류 또는 거주 중인 일본인 귀국문제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해외 일본인의 귀국은 약 660만 명이었으며, 귀국을 원하는 재일 외국인은 약 130만 명 정도였음.
 - 또한 전몰자의 유족, 생활 곤란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 후생노동성의 원호 행정은 3단계로 구분해 보면, 제1단계인 1945~1960년의 전후 부흥기에 약 500만 명의 해외 일본인에 대한 귀국사업 추진
 - 제2단계인 1960~1972년의 시기는 전쟁미망인들의 구제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3단계인 1972년~현재까지는 전몰자를 위한 위령기념사업과 원호사업에 초점을 맞춤(정성범, 2020, p.48).
 - 후생노동성의 보훈관련 업무를 살펴보면,
 - 기획원호과는 미귀환자 원호 관련 사항 및 유골 수집, 귀국 후 자립 지원 등을, 원호과는 전상병자 본인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연금지급권 심사 및 특별 급부금 지급 등을, 업무1과는 미귀환자 상황 조사, 유족들을 위한 연금 관련 업무 등을 업무2과에서는 미 귀환자 채권, 연금 청구서 상신, 기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정성범, 2020, p.49)

- 총무성 인사은급국의 보훈업무는 은급제도 발족 이래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 총무성은 은급제도에 관한 기획과 입안, 은급수급권 제정,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정성범, 2020, p.49).
 -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은급 증서 작성 및 교부, 수급권 조사 및 지급, 관련 정보시스템 정비 및 관리, 관련 통계 작성, 관련 문서 보관과 같은 실제 은급업무부터 은급 심사와 기획에 대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음(박환무, 2006, p.18)
 - 은급수급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은급수급자의 대상이 고령화로 인해 매년 6만 명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정성범, 2020, p.49)..
 - 은급수급자 대상자의 대부분은 과거 군인인 신분이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문관의 신분이 2.6%의 비중을 차지
- 보훈을 지원하는 일본의 각 원호단체는 총 20개의 원호 단체가 있으며, 이 원호 단체 모두는 재단 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표적인 원호단체는 대만협회 등 7개의 법인이 있음.
 - 원호단체들은 전후 해외로부터 귀국한 사람들에 대한 원호와 전사상자 관련 원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구성됨
 - 일본 원단체의 역할을 사료보면, 상이군경과 귀국동포 그리고 전평희생자에 대한 원화와 복지증진과 함께 사망자 위령사업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압령단체로서의 활동에 있어 현실정치에 대한 깊은 간여를 특징으로 함(정성범, 2020, pp.51-52).

2. 프랑스

□ 개요 및 특성

- 프랑스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등 참전 경험이 많은 국가이며, 프랑스의 보훈 제도는 1, 2차 세계대전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1차 세계대전 후에는 대규모의 수용시설을 확충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립 참전자 전쟁 희생자

사무국(Office national des anciens) 설립과 같은 조직 확대에 초점을 맞춤(이상은, 서운석. 2022, pp.221-222).

- 세계대전 참전자와 관련 희생자에 대한 보상 대상의 선정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전자에 대한 연금이며, 이러한 연금은 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승계되었음.

○ 권리측면의 보훈제도

- 프랑스의 보훈제도는 수용 및 가료에서 출발한 보상권의 개념을 ‘연금권’을 거쳐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상권 적용’으로 확대되어 제도화됨(한중기, 2011, p.126).
 - 프랑스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부상자 및 관련 피해자를 위한 대규모의 수용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참전자와 전쟁희생자에 대한 자격 부여, 정신적·물질적 보상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이 참전자에 대한 연금권 부여임
- 1793년 국민의회에서 마련된 연금권에 대한 기본원칙은, 1831년 루이 필립왕에 의해 재확인되어 미망인 또는 고아에게 양도되는 ‘군연금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1919년 3월 해당 법령은 군 퇴직금과 상이연금을 분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에게 연금권을 부여(한중기, 2011, p.126).
 - 군연금법(1919년 연금법)은 군인의 노령연금과 상이연금 간 차이가 없도록 함. 즉 직업 군인뿐만 아니라 전쟁 미망인과 고아에게까지 국가의 지원을 보장하는 사회적 연대법의 성격을 가짐(권희영 외, 2012, p.16)
 - 해당 법령은 국가에 의해 차출되었거나 공화국 수호를 위해 무기를 든 민간인 및 민간인 전쟁 희생자까지 대상으로 규정, 수차례 수정을 거친 후 1947년 법령으로 확정되었으며(한중기, 2011, p.126). ,
- 1948년 8월에는 수용소 및 형무소 감금자, 대독협력 거부자, 강제징병자, 강제징용자, 레지스탕스 등과 같은 새로운 부류의 보상대상자를 공식적으로 전쟁희생자로 규정함(한중기, 2011, p.126).
- 군인상이·전쟁피해자 연금법(CPMIVG: Code des pensions militaires

d'invalidité et des victimes de la guerre) 제 L.711-7조에 다음과 같이 제시됨.⁵⁴⁾

- CPMIVG에 명시된 연금에 대한 권리와 이와 관련된 국가의 복무 중이나 국가의 이름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빚(부채)을 표현한 것임. “Le droit à pension et les droits annexes qui en découlent dans le CPMIVG sont l’expression de la dette de la Nation envers ceux qui ont été atteints à son service ou en son nom.”
- 국가는 단순히 ‘돕는 주체’(복지·자선)가 아니라, 이미 진 ‘빚’을 갚는 채무자이고, 전쟁부상자는 채권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다는 사고방식임. 프랑스의 PMI는 프랑스의 군인재해보상과 보훈보상 그리고 전쟁피해자 보상을 합치 제도임(Chat GPT, 25.12.7).

□ 군인상이연금(Pension militaire d’invalidité)⁵⁵⁾

○ 적용범위

- 군인 장애연금은 전시 또는 비전시 여부와 관계없이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겪은 재향군인, 직업 군인, 징집병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으로,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 강제 추방자, 정치범 및 저항군, 베트남 포로, 알제리 포로 피해자, 테러 공격 피해자에게도 지급됨.
- 이 제도는 복무 중 분쟁 또는 군사 작전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영구 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를 가진 재향군인들이 장애 관련 비용을 감당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급됨.
- 해당 급여는 퇴직연금과는 다르며 동시에 수령할 수 있음. 직업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직 군인은 민간 부문에서든 현역 군인으로서든 근무 중에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54) <https://codepensionsmilitaires.fr/articles/LEGIARTI000031710403>에서 발췌 및 수정

55) <https://www.carac.fr/actualites/retraite-mutualiste-combattant/pension-militaire-invalidite>에서 발췌 및 수정

- 군인상이연금은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와 테러 행위로 인한 특정 민간인 희생자에게도 제공됨.

○ 급여의 종류와 수준

- 군 장애연금 계산은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데, 하나는 신청자의 장애율과 일등병의 기본급임.
- 장애 등급은 의료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0~100%의 범위임. 장애등급을 평가하려면 지원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 이 분석은 의료 위원회에서 군인 장애 연금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실시
- 기본급은 국방부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연금 금액은 전쟁 희생자 인정 여부와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음. 이 경우, 인정되는 최소 장애율은 30%임. 장애로 인해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지원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 될 수도 있음.
 - 또한,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국가 재향군인 및 전쟁 희생자 사무소 (National Office for Veterans and War Victims)에서 의료 및 주택 개조를 위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군인 장애연금의 금액은 각 수혜자의 구체적인 필요에 최대한 맞춰 설계됨. 따라서 장애 등급과 군인 계급의 기본급 외에도 여러 요인이 최종 연금 금액에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전직 군인에게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특정 수당이 연금 금액에 추가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장애로 인해 전직 군인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 하기 위해 제3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 연금 금액에 특별 보조금이 추가될 수 있음.
 - 또한, 무공훈장 과 같은 특정 명예 훈장은 연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장애연금과 피해자연금은 소득세가 면제됨.

○ 급여 지급 기간

- 군인 장애연금은 수혜자의 건강이 개선되어 장애율이 업데이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지급됨.

□ 공공부조와의 관계 프랑스에서 보훈급여는 공공부조의 소득산정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추가비용 성격의 간병가산은 소득산정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즉, RAS의 경우 소득산정에 있어 간병가산은 제외됨

- “De la majoration de la pension d'invalidité attribu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33-1 du code des pensions militaires d'invalidité et des victimes de guerre”(“군인상이 및 전쟁피해자 연금법 (Code des pensions militaires d'invalidité et des victimes de la guerre) 제 L.133-1조에 따라 부여되는 상이연금의 가산액(간병가산)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⁵⁶⁾

56)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8841536/2024-07-01에서 발췌

제3절 정책함의 및 검토 사항

1. 사례국별 함의

-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훈급여들이 공공부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만 추가비용 개념의 지출들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하며 주별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함.
- 미국에서 공공부조 소득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비공제이지만 일부 수당은 공제를 반영
 - 보충소득보장(SSI),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등 대부분의 미국 연방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의 보훈급여(보상금, 연금) 모두를 비근로 소득(Unearned Income)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산정함.
 - 미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현금 유입을 소득으로 간주하되, 의료비 등 필수 지출 비용을 공제해 주는 방식을 택함. 보훈 급여가 비과세 대상임에도 공공부조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① 자산조사의 원칙: 푸드스탬프나 생계보조는 "당장 식료품을 살 돈이 있는가?"를 따지는 최후의 안전망 성격을 가짐. 따라서 급여의 명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구매력이 발생했다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
 - ② 조세정책과 복지 정책의 분리: 보훈 급여는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상실된 노동력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그러나 복지 정책상으로는 부양 자원으로 간주. 1987년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보훈급여는 재향군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소득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함⁵⁷⁾
 - ③ 순소득 개념을 통한 보완함: 미국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대신, 공제 제도를 통해 유연성이 있음. 예를 들어, 고령이나 장애가 있는 퇴역 군인이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소득에서 제외해 줌으로써,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57)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81/619/> 및 <https://www.loc.gov/resource/usrep.usrep481619/>를 참고하여 작성

○ 하지만 예외적으로 추가 지출 요인에 대해서는 선별적 공제

- 미국 시스템은 보훈급여 자체를 제외하기보다,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해주는 특정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거나(SSI), 장애 상태를 인정하여 '추가 공제'를 허용하는(SNAP) 방식임.
- SSI에서 간호 수당(Aid and Attendance, A&A)은 전액 공제,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의 경우 장애인 자격 부여를 통한 '의료비' 공제
- TANF의 경우 주별로 다르게 적용

□ 프랑스에서도 기본적으로 보훈급여들이 공공부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만 추가 비용 개념의 지출의 경우 소득산정에 제외됨.

○ 추가비용 성격의 간병가산은 소득산정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RAS의 소득산정에 있어 간병가산은 제외하고 있음.

□ 캐나다 보훈급여 중 대상규모나 지급액 수준 기준 주요 급여는 소득대체급여(IRB)와 장애급여프로그램(DBP)을 들 수 있음.

○ 소득대체급여(IRB)는 군복무중 발생한 건강문제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전역한 경우 전역 전 급여에 대한 보상 성격(전역 전 총 급여액의 90%)으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여부에 따라 가산. 가구지원 성격임.

- 장애급여프로그램(DBP)은 장애(질병)의 복무 관련성, 심각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자격과 급여액 결정되며, 이는 다시 장애연금(DP)과 고통통증보상금(PSC)으로 구분됨. 장애연금(DP)은 평생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부양가족(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이 있는 경우 가산함. 즉, 부양가족을 고려한 가구 대상 생활보장 또는 장기 소득지원 성격임.
- 한편, 고통통증보상금(PSC)은 평생 매월 지급되는 급여 또는 일시금으로써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지급됨. 장애로 인한 고통 및 기능 손실에 대한 비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급여 성격

○ 이 중 주요 주/준주에서 공공부조 소득산정에서 공제되는 보훈급여 유형은 장애로 인한 고통 및 기능 손실에 대한 비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고통통증

보상금(PSC)이 추가 됨.

- 소득대체급여나 장애연금은 소득평가액에 공제 없이 산입하고 있음. 즉, 가구 특성(부양가족 여부)을 고려한 소득지원 성격의 급여(가구 소득지원)는 공제하지 않고, 개인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의 급여(개인 피해보상)를 공제하고 있음.

○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의 보훈제도는 일반적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위험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즉,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보훈제도는 피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복지-보훈제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 같은 맥락에서 캐나다도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생계비 지원을 우선함에 따라 보훈급여금 중 생계비 지원 성격의 급여는 수급자격 평가 소득에 산입하고, 보상금 성격의 급여는 소득산입에서 제외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상을 실현한다는 방향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국과 호주의 보훈급여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됨.

○ 영국의 경우 보훈급여가 공공부조의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도입된 통합급여(UC)의 경우 전액 공제되는 반면 통합급여 이전의 급여들은 일부만 공제되고 있음.

○ 영국은 전쟁연금과 군인보상제도(AFCS) 지급금이 국가 연금 및 복지 혜택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특별 규칙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이러한 지급금은 국가 연금과 보편적 크레딧에서 이미 완전히 공제되고 있음.

- 전쟁연금 또는 AFCS 지급액의 주당 첫 10파운드(10파운드)는 소득 연계 고용 지원 수당, 소득 기반 구직 수당 그리고 소득 지원에서 제외됨. 군인 독립 지원금(Armed Forces Independence Payments)은 이러한 혜택에서 전액 제외되며, 수혜자는 추가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호주의 보훈 관련 급여는 보상(compensation)적 성격 급여와 생계를 위한 소득

지원(income support) 성격의 급여가 병존함. 이러한 특성과 관련 보훈급여를 사회보장 소득·자산조사에서 소득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변화해 왔는데, 2022년 이후 제도 개편으로 조정 장애연금(ADP)으로 통칭되었던 4가지 재향군인 보상금에 대해 사회보장 소득 심사 면제를 시행

- 즉, 2022년 1월 1일부터 이 금액은 더 이상 사회보장 소득자산조사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이러한 사회보장 소득 테스트 면제의 결과로 보훈부의 소득 지원 수당(DFISA)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
- 기존의 경우 사회보장 목적상 소득으로 모두 간주되었던 점에서 DVA 방위군 소득 지원 수당(Defence Force Income Support Allowance)를 통해 보전해주던 것에서, 후자인 보상 성격의 보훈 관련 급여금에 대해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는 법안 개정 및 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지원 성격과 보상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
- 법안 개정 배경⁵⁸⁾
 - 1) 정책 진단·권고에 대한 정부 대응
 - 특수/중증 상이연금(Totally and Permanently Incapacitated, TPI) Review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로 TPI 지급수준 검토(Tune Review)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보상급여를 사회보장 소득시험에서 제외하도록 개편
 - 보훈 보상성 지급을 복지 소득평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A Better Way to Support Veterans의 권고의 이행
 - 2) 형평성(Equity)·생활보장 측면의 문제 해소
 - 보훈급여금이 사회보장 자산조사 시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해당 가구의 사회보장 급여액이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DFISA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음.

58) Commonwealth of Australia Explanatory Memoranda. (2021). VETERANS' AFFAIRS LEGISLATION AMENDMENT (EXEMPTING DISABILITY PAYMENTS FROM INCOME TESTING AND OTHER MEASURES) BILL 2021. https://classic.austlii.edu.au/au/legis/cth/bill_em/valadpftaomb20211039/memo_0.html?utm_source=chatgpt.com /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홈페이지.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d/bd2122a/22bd036?utm_source=chatgpt.com

- 중증 상이자 주거비 지원에 대한 검토 결과 장애 정도가 클수록 임대료 보조(Rent Assistance)가 더 적게 책정되는 주거비 지원의 역차별 발생

3) 보훈급여금에 대한 제도의 목적 및 성격 명료화

- 보훈급여금의 경우 법률·지침·용어에서 ‘pension by way of compensation’으로 정리하면서 복지가 아닌 ‘보상(compensation)’으로의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일반 생계보장 급여의 소득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4) 행정 단순화: 보상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하면서 DFISA와 같은 보전성격의 수당이 불필요하게 됨.

□ 종합해 보면, 영국의 UC와 호주 공공부조 제도에서 보훈급여가 공공부조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현재 비공제되고 있는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며 그 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등은 장애인 연금 수준의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은 무공영예수당 수준의 금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 미국처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보훈급여를 비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산정에 포함하고 있음. 또한 상이등급이 높은 집단에 대해 추가적 공제 적용시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큼.

- 다만 수당 가운데 추가비용 보전의 성격이 큰 급여는 협의 과정을 거쳐 공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
- 프랑스도 일부 추가비용적 성격이 공제되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공제되지 않음.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으로 공제함
-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보상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일부 추가비용적 수당은 공제되며, 영국과 호준의 경우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이뤄짐.
- 이러한 적용은 보훈보상의 수준과 사회보장급여와의 관계 및 그 수준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검토사항

- 급여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공제 적용과 고령층, 장애인을 위한 보호 강화
 - 미국 사례를 볼 때 급여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공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보상 성격의 급여가 빈곤 탈피를 저해되지 않도록, 보상 성격의 급여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미국처럼 의료비 공제와 연동된 별도의 트랙을 마련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 또한 고령층, 장애인을 위한 보호 강화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 미국의 SNAP이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에 대해 더 높은 자산 한도와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듯,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중증 장애나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한해서는 보훈 급여의 소득 환산율을 낮추거나 공제 폭을 확대하는 대상별 맞춤형 완화 조치가 필요함.

- 제도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한 공제의 방향성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사회보장제도와 보훈제도가 병립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양자 간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되지 않았다고 봄. 특히 보훈관련 법령은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으로부터 출발한 반면, 사회보장 관련 법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으로 보훈관련 법령보다 늦게 제정되었음.
 - 두 제도가 양립하여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훈제도는 대상자의 생계지원과 피해 보상 두 유형의 지원을 담당해왔음. 최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과정에서 생활조정수당 등 생계비 지원 성격의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두 제도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보훈유형 중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유형에 대한 보상 또는 예우적 성격의 급여에 대한 공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제도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한 공제의 방향성

○ 보훈 관련 급여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두 가지 전제로 '1) (급여의 성격) 보상 vs 소득지원, 2) (대상) 본인 vs 유족'로 공제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 제안

- (급여의 성격) 손해배상과 생활소득 지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복무로 인해 희생,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 보상은 빈곤 대응이 아닌 보상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되, 소득지원형, 즉, 생활유지, 빈곤완화 목적의 생활비 지원의 성격이 구분된다면 소득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
- (대상) 본인 vs 유족
 - 유족급여는 '보상'과 '가구생계 유지'가 혼합되어 기능할 수 있음. 즉,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가구 생계 급여성 기능이 강하게 결합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 급여와 목적이 중복되는 범위에 한해서 소득으로 산입(혹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훈급여금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공제 방향

○ 보훈급여금 공제에 공통적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보훈제도의 복잡한 구조와 보훈급여금의 다양한 종류와 급여 수준 그리고 대상자간 형평성 문제로 일관성 있는 적용이 어려움

- 현재 공제되는 보훈급여금에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보상금, 참전명예수당⁵⁹) 등)와 소득보전적 성격의 급여(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추가비용 발생을 보전하는 급여(고엽제후유의증수당)가 모두 공제되고 있음.
-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보상적 성격의 급여인 보상금이 장애요인으로 인한 금품으로 간주되어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개념적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59) 공헌을 바탕으로한 사회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있음

- 보훈급여금은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및 관련 급여가 결정됨.
 - 희생과 공헌과 함께 일부 수당의 경우 대상자의 생활수준도 고려됨.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급여와 공헌에 대한 예우적 성격의 급여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전적 성격의 급여 들로 구분할 수 있음.
 - 상이보상금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으로 발생한 신체 손상 등에 대한 보상적 기능이 중심이지만 신체 손상으로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전적 성격도 가지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에 대한 공헌에 대해 예우 차원의 급여이지만, 대상 집단의 성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소득보전적 성격이 큼.
 -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등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보전적 성격의 급여임.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UC와 최근 호주 공공부조 제도의 적용 추이를 살펴보면 보훈급여금이 공공부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2026년부터 공제되는 보훈보상금에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미국처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현재 보훈급여금에서 이러한 수당(중상이 부가 수당, 간호수당 등)은 추가 지출에 대한 비용보전적 성격과 함께 대상별 보장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측면도 존재
 - 상이등급이 높은 집단에 대해 추가적 공제 적용시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큼.
 - 다만 수당 가운데 추가비용적 성격이 큰 급여의 경우 협의과정을 거쳐 공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추가비용적 성격이 공제되는 국가는 상이연금 등이 공제되지 않음. 그러나 영국(UC), 호주 등은 보훈급여금을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급여금의 소득 산정 또는 공제 여부에 대한 결정과 적용은 국가별 보훈보상의 수준과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보훈보상과 사회

보장급여와의 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영국의 경우 군인재해보상 성격의 급여도 공공부조 산정에서 (일부 제외됨. 이는 한국의 군인재해보상의 경우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
 - 2005년 이후부터는 상이연금 산정시 전시나 비전시 구분없이 장해율에 따라 동일하게 급여를 산정함. 이를 통해 대상자 또는 국가가 전시상황 인지 비전시 상황인지 파악할 필요가 없음.

〈표 6-2〉 보훈급여금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공제 방향성 검토

| 구분 | 지원 제도 | 공제액 | 단기 방향성 |
|----------------|---------------------------------|-------------------------|------------|
| 소득 산정 제외 | 생활조정수당 | 전액 | 유지 |
| | 참전명예수당 | 전액(1인가구 중위소득 20% 이하) | 확대(조건 폐지) |
| |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 전액 | 유지 |
| | 생계지원금 | 전액 | 유지 |
|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 장애인연금 수준 | 유지 |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 장애인연금 수준 | 유지 |
| | 상이 보훈대상자(본인) 보상금('26년 예정) | 장애인연금 수준 | '26년 도입 예정 |
| 소득 산정 | 상이 보훈대상자(본인) 보상금 | '25년 비공제 | '26년 도입 예정 |
| |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전상수당, | 비공제 | 유지 |
| | 중상이부가수당, 간호수당 | 비공제 | 적용여부 검토 |
| | 무공영예수당, 6.25전몰자녀수당, 4.19혁명공로수당, | 비공제 | 유지 |

자료: 본 보고서 '〈표 1-1〉 보훈 급여 공제 현황' 바탕으로 작성

○ 종합해 보면, 미국, 프랑스의 경우 중 추가비용 성격의 보훈급여가 공공부조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고 핵심 급여라 할 수 있는 상이보상금은 소득산정에 포함됨. 그러나 영국, 호주 등은 보훈급여금이 공공부조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공제되고 있음.

- 보훈급여금이 공공부조의 소득산정에서 제외거나 일부 공제되는 것에 대한 적용은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와 보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제도간 관계, 급여 수준 등이 다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단기 차원의 검토 방향으로 공헌에 대한 예우적 성격의 수당 중 경제

적으로 취약한 대상이 많은 급여(참전명예수당), 의료비용과 관련한 추가 비용적 성격의 수당에 대해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 역시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제 20278호 (2024).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0> (예우보상 보훈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 21065호 (2025).
- 김태완, 이주미, 강예은, 김동진, 정은희, 김문길, 송치호, 심창학, 최승훈. (2021). 보훈대상 인 구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기호, 박철수. (2025). 한국과 미국의 보훈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36-2, 3-29.
- 노대명, 이현주, 강신욱, 김문길, 신현웅, 신화연, 황덕순, 홍경준, 손병돈, 장덕호, 임완섭, 이주미.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건 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스 래너크셔 의회 홈페이지. [https://www.northlanarkshire.gov.uk/benefits-and-money/disability-and-carer-benefits/war-disablement-pensions#:~:text=What%20is%20it?%20The%20War%20Disablement%20Pension,service%20in%20His%20Majesty's%20\(HM\)%20Armed%20Forces](https://www.northlanarkshire.gov.uk/benefits-and-money/disability-and-carer-benefits/war-disablement-pensions#:~:text=What%20is%20it?%20The%20War%20Disablement%20Pension,service%20in%20His%20Majesty's%20(HM)%20Armed%20Forces)
- 박능후 외. (2018).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2.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동순. (2025). 세계 주요국의 보훈정책과 대한민국 보훈패러다임 전환. 재향군인회 안보전략 연구. 2025 no.14, pp.27 - 60, 대한민국재향군인회·안보전략연구원.
- 박상혁, 왕승우, 이재건. (2023).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 비교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9(1): 395-400.
- 박혜란. (2010). 미국의 보훈정책. 한국보훈논총. 9(2): 71-97.
- 박환무. (2006). 일본 보훈제도, 국가보훈처
-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878호 (2025).
- 소득세법. 법률 제 21065호 (2025).
- 여유진, 우선희, 김기태, 김명중, 정재훈. (2023). 공공부조 기준선 국제비교 연구. 용역보고서 2023-4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ar-disablement-pension-2019-rates/war-disablement-pension-rates-2025>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armed-forces-compensation-sch>

eme-afcs#overview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universal-credit-money-savings-and-investments>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ousing-benefit-adjudication-circulars-2023/a22023-war-pensions-uprating-for-the-financial-year-ending-march-2024>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ar-disablement-pension-2019-rates/war-disablement-pension-rates-2025>

이상은, 서운석. (2011). 프랑스 독일의 국가통합 상징기제로서의 보훈연구. 유럽사회문화 8호.

임완섭, 이주미, 정은희.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통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김기태, 김문길, 이주미, 최준영, 김명중, 이지은. (2024).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 기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김태완, 정은희, 황도경, 이아영, 형시영, 황정하, 윤여선, 박형준, 이주미, 김예슬, 최준영, 안영.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국가보훈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심창학, 황정하, 최연학, Romich, J., Jonas, E. and Serge, P. (2015).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연구: 미국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정은희, 황안나, 최혜진, 안영, 송치호, 이지은. (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영국·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2011). 영국의 복지 개혁: 일하는 복지(welfare that works)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성범. (2020). 일본 보훈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2020 한국보훈논총, 제19권 제2호, pp. 43-60

정성범. (2020). 일본 보훈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보훈논총 제19권 제2호. pp. 43-60.

최상권. (2011). 일본의 보훈정책 연구: 관련 법규에 의한 적극적 보훈. 한국보훈논총. 10(1).

최슬기. (2019). 미국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의 구매 식품 제한과 관련 쟁점. 국제사회보장리뷰. 봄호 (12호) ; Medicaid.gov (2025) About Us. <https://www.medicaid.gov/about-us#:~:text=The%20Center%20for%20Medicaid%20and,state-based%20health%20coverage%20programs;>

최윤희. (2018). 미국의 공공부조법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의 법리 연구-우리의 공공부조법 개정예의 함의-. 일감법학. 41, 209 - 230.

-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programs/federal-transfers/history-health-social-transfers.html>
- 하태연. (2006). 영국 보훈제도, 국가보훈처
- 한종기. (2011). 프랑스의 보훈정책: 가치-제도-선양 삼위일체의 기억장치. 2011년 한국보훈논총, 제10권 제2호 pp. 105-147
-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Compensation for Dependents. <https://www.dva.gov.au/about-us/inquiries-and-reviews/veterans-legislation-reform/veterans-legislation-reform-resources/compensation-dependants>
-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Eligibility for Disability Compensation Payments. <https://www.dva.gov.au/access-benefits/pensions-and-payments/support-when-you-cannot-work/eligibility-disability-compensation-payments>
-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Lump sum advance. <https://www.dva.gov.au/access-benefits/pensions-and-payments/lump-sum-advance>
-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Pension for orphans and war widow(er)s. <https://www.dva.gov.au/families-and-dependants/financial-programs-and-services/pension-for-orphans-and-war-widowers>
-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Permanent impairment payments under the MRCA. <https://www.dva.gov.au/access-benefits/claims-and-compensation-for-illness-or-injury/claims-if-you-were-injured-after-30-june-2004/permanent-impairment-payments-under-the-mrca>
-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Service Pension overview. <https://www.dva.gov.au/access-benefits/pensions-and-payments/service-pension-overview>
- 호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 Special Rate Disability Pension. <https://www.dva.gov.au/access-benefits/pensions-and-payments/support-when-you-cannot-work/disability-compensation-payments/special-rate-disability-pension>
- 호주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홈페이지. - Age Pension <https://www.dss.gov.au/older-australians>
- 호주 정부 Social Security Guide 홈페이지. Guides to Social Policy Law Social Security Guide, Version 1.334 - Released 15 November 2025. <https://guides.dss.gov.au/>

dss.gov.au/social-security-guide

호주 정부 Guides to Social Policy Law 홈페이지. <https://guides.dss.gov.au/social-security-guide/4/3/5/10>

호주 정부 Guides to Social Policy Law 홈페이지. <https://guides.dss.gov.au/social-security-guide/4/3/5/70>

호주 정부 Social Security Guide 홈페이지. Home Social Security Guide 4 Income & assets 4.3 Ordinary income 4.3.5 Income from DVA 4.3.5.10 How income from DVA is assessed. <https://guides.dss.gov.au/social-security-guide/4/3/5/10>

호주 정부 공개데이터 홈페이지. DSS Benefit and Payment Recipient Demographics - quarterly data. <https://data.gov.au/data/dataset/dss-payment-demographic-data> 2025.11.06. 다운로드

황정하. (2013). 외국의 보훈복지서비스의 실천사례: 미국,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33-155.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81/619/>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8841536/2024-07-01

<https://www.loc.gov/resource/usrep.usrep481619/>

ACF. (2025.7.8.). ACF-OFA-IM-25-01 (Restrictions on Federal Public Benefits for Non-Qualified Aliens), <https://acf.gov/ofa/policy-guidance/acf-ofa-im-25-01>

ASPE. (2025).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and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 Overview, <https://aspe.hhs.gov/aid-families-dependent-children-afdc-temporary-assistance-needy-families-tanf-overview>

Australian Government. (2024). A guide to Australian Government payments 1 July 2024 to 19 September 2024(<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sites/default/files/2024-06/co029-2407.pdf> 2024.08.29. 다운로드)

British Columbia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bclaws.gov.bc.ca/civix/document/id/crbc/crbc/263_2002_pit_2024_06_01

Brooke-Holland, L. (2017). The Armed Forces Compensation Scheme House of Commons Library.

Burke, V. (2001). Cash and non-cash benefits for persons with limited income:

- Eligibility rules, recipient and expenditure data, FY1998-FY200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congress.gov. (2025.10.30.). Veteran Disability Compensation and Pension Exams.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2799#:~:text=The%20purpose%20of%20a%20C&P,of%20disability%20or%20disability%20rating>.
- congress.gov. (2025.2.26.).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482>
- congress.gov. (2025.4.30). Medicaid: An Overview.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3357#_Toc197090835
- congress.gov. (2025.9.29.).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A Primer on Eligibility and Benefits.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2505>
- CPAG 홈페이지. https://cpag.org.uk/welfare-rights/benefits-scotland/more-info/veterans-benefits?utm_source=chatgpt.com#footnote18_YHD9UIuTDj-bC6JCRFA2p8MqioUUVIIg5osMKrGZvPY_wjrUpvwwgaYC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 Advice for Decision Making: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91c86325a253e2c40d706e5/adm-ch-h2_capital-disregards.pdf
- EBSCO. (2025).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health-and-medicine/temporary-assistance-needy-families-tanf>
- Enterprise. (2019) Transforming Federally Subsidized and Public Housing. https://www.enterprisecommunity.org/sites/default/files/2021-06/transforming-federally-subsidized-and-public-housing.pdf?utm_source=chatgpt.com
- Federal Student Aid. (2025). 2024-2025 Federal Student Aid Handbook. <https://fsapartners.ed.gov/knowledge-center/fsa-handbook/2024-2025/vol1/ch2-us-citizenship-eligible-noncitizens>
- FRAC. (2023). The SNAP Standard Medical Deduction for Older Adult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https://frac.org/wp-content/uploads/SNAP-SMD-National-Report-1.pdf?utm_source=chatgpt.com
- Hanson and Andrews. (2009). State Variations in the Food Stamp Benefit Reduction Rate for Earnings. https://ers.usda.gov/sites/default/files/_laserfiche/publications/44317/9663_eib46.pdf?utm_source=chatgpt.com

- Hill and Ponton. (2025.10.29.). What Is the VA Special Monthly Compensation (SMC). https://www.hillandponton.com/va-benefits-special-monthly-compensation/?utm_source=chatgpt.com
- <https://codepensionsmilitaires.fr/articles/LEGIARTI000031710403>
- <https://www.carac.fr/actualites/retraite-mutualiste-combattant/pension-militaire-invalidite>
- <https://www.dva.gov.au/families-and-dependants/financial-programs-and-services/pension-for-orphans-and-war-widowers>
- <https://www.gov.uk/universal-credit>
- <https://www.gov.uk/universal-credit/what-youll-get>
- HUD. (n/d). Assisted Housing: National and Local. https://www.huduser.gov/portal/datasets/assths.html?utm_source=chatgpt.com
- Jones. (2025.7.24.).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https://www.ers.usda.gov/topics/food-nutrition-assistance/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 KSCclaims 홈페이지. Comprehensive Guide to DVA Pensions: Rates, Eligibility and Special Benefits. https://ksclaims.com.au/blog/dva-pension-guide/#Age_Pension_Feature_and_Comparison
- Michael Klapdor. (2024). Veterans' Entitlements, Treatment and Support (Simplification and Harmonisation) Bill 2024. Bills Digest No. 3, 2024-25.
- Ministry of Defence. (2017a). Armed Forces compensation Scheme: State of Policy. Ministry of Defence.
- Ministry of Defence. (2017b). War Disablement Pension 2017 rates. Ministry of Defence.
- Moffitt, R. A. (2003). Welfare programs and labor supply (NBER Working Paper No. 916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9168/w9168.pdf
- Moffitt, R. A. (Ed.). (2003). Introduction. In Means-tested transf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pp. 1-1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coa. (2025). HUD Public Housing Program. https://benefitscheckup.org/program/housing_fd_hud_public_housing
- New York State. (2014.11.10.). Informational Letter. <https://otda.ny.gov/policy/dir>

- ectives/2014/INF/14-INF-10.pdf?utm_source=chatgpt.com
- Nova Scotia 주정부 홈페이지.
https://novascotia.ca/coms/employment/documents/ESIA_Program_Policy_Manual.pdf
- nyc. (n.d.). About Section 8. <https://www.nyc.gov/site/nycha/section-8/about-section-8.page>
- Oliveira, T.(2025). Social Assistance Summaries, 2024. Maytree
 Policy Manual – Employment Support and Income Assistance. (2021.8.1. 발효. 2025. 10.6. 개정). pp.79-80
- Prince Edward Island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princeedwardisland.ca/sites/default/files/publications/4-4social_assistance_policy_income_exemptions_updated_.pdf
- Purdy. (2025).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health-and-medicine/temporary-assistance-needy-families-tanf>
- Reg 17 (7) and Sch 4, para 1 State Pension Credit Regulations 2002 No.1792.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2/1792/schedule/IV>
- Rowe, G., & Roberts, T. (2002). Welfare rules databook tables: State policies as of July 2000. Urban Institute.
- Rudowitz, R., Tolbert, J., Burns, A., Hinton, E., Mudumala, A., Chidambaram, P. and Mohamed, M. (2025.10.8.). Medicaid 101. <https://www.kff.org/medicaid/health-policy-101-medicaid/?entry=table-of-contents-introduction>
- Saskatchewan. (2025). Saskatchewan Assured Income for Disability.
- Saskatchewan.ca. (2020). Saskatchewan Income Support Program Policy Manual. January 2020
- Saskatchewan.ca. (2025). Saskatchewan Assured Income for Disability Policy Manual. December 15 2025
- Senior Veterans Service Alliance. (n/d) 2025 Veterans Maximum Annual Pension Rates (MAPR). https://www.veteransaidbenefit.org/forms/VA%202025%20Pension%20Rates%20%26%20Survivor%20Pension%20Rates.pdf?utm_source=chatgpt.com
- Services Australia - JobSeeker Payment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s://www.serv>

- icesaustralia.gov.au/jobseeker-payment
Services Australia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Age Pension(<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age-pension>)
-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12.5.17.). Program Operations Manual System (POMS).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0830308>
- SSA.GOV. (n/d) SSI Federal Payment Amounts for 2026. <https://www.ssa.gov/oact/cola/SSI.html>
- Tabak Law. (2025). Does the VA Reduce Your Benefits if You Make Too Much?. <https://tabakattorneys.com/does-the-va-reduce-your-benefits-if-you-make-too-much/#:~:text=Spending%20on%20the%20program%20may,your%20benefit%20will%20not%20change.>
- The Canadian Encyclopedia 홈페이지.
<https://thecanadianencyclopedia.ca/en/article/social-programs-in-canada#Children>
-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홈페이지.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d/bd2122a/22bd036?utm_source=chatgpt.com
-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1). Veterans' Affairs Legislation Amendment (Exempting Disability Payments from Income Testing and Other Measures) Bill 2021. https://classic.austlii.edu.au/au/legis/cth/bill_em/valadpfitaomb20211039/memo_0.html?utm_source=chatgpt.com
- The Saskatchewan Income Support Regulations
TN.GOV. (n/d).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Excess Medical Expenses Deduction. <https://www.tn.gov/content/dam/tn/human-services/documents/SNAP%20Medical%20Deduction%20Information.pdf>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2025).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Fiscal year 2026 cost-of-living adjustments (pp. 4-5). <https://fns-prod.azureedge.us/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snap-cola-fy26memo.pdf>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Ways and Means. (2000). Background material and data on program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n.d.). Title XIX of the Social Security Act and related federal guidance.
-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24.5.2.) VBA embracing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to enhance customer experience, <https://news.va.gov/130935/vba-embracing-organizational-transformation-to-enhance-customer-experience/#:~:text=When%20it%20came%20to%20the,our%20workforce%20to%2036%2C000%20employees.>
-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25a). VA Structure. <https://www.ruralhealth.va.gov/aboutus/structure.asp#:~:text=VA's%20Administrations,%2C%20their%20families%2C%20and%20survivors.>
- USA Facts. (2024.8.20.). How much money does the federal government spend to support disabled veterans?. <https://usafacts.org/articles/how-much-money-does-the-federal-government-spend-to-support-disabled-veterans/>
- usa.gov. (2025). Government benefits. <https://www.usa.gov/benefits>
- USAFacts. (2025). government spending - What does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do?. <https://usafacts.org/explainers/what-does-the-us-government-do/agency/us-department-of-veterans-affairs/>
- VA. (2024.12.2.). Current pension rates for Veterans. <https://www.va.gov/pension/veterans-pension-rates/>
- VA. (2024.7.18.). VA Aid and Attendance benefits and Housebound allowance. <https://www.va.gov/pension/aid-attendance-housebound/>
- VA. (2025.7.18.). Eligibility for Veterans Pension. <https://www.va.gov/pension/eligibility/>
- VA. (2025.9.16.). VA disability compensation. <https://www.va.gov/disability/>
- VA. (n/d). Budget. <https://department.va.gov/administrations-and-offices/management/budget/#:~:text=President's%20Budget%20Request%20%E2%80%93%20Fiscal%20Year,for%20the%20Toxic%20Exposures%20Fund.>
- Veteran UK 홈페이지. <https://community.veteranuk.com/war-pension-scheme-what-is-it-how-is-it-calculated-and-how-much-will-you-get/>
- Veterans Affairs Canada. <https://www.canada.ca/en.html>
- Veterans Affairs Canada. <https://www.veterans.gc.ca/eng/resources/rates>
- Veterans Affairs Canada. <https://www.vhhttps://veterans.gc.ca/en/about-vac/resour>

154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충성 관련 보훈급여 공제에 대한 해외연구 사례

ces/rates#eia

Veterans Affairs Canada. Schedule 3 - Pain and Suffering Compensation. <https://public.cdn.cloud.veterans.gc.ca/pdf/resources/rates/psc-2025.pdf>

Chat GPT(2025.12.7). 'dette de la Nation' 검색



Abstrac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cheme as a Supplementary System

: Excluding Veterans' Benefits from Income Assess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Project head: Lim, Wan-Sub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public transfer income is generally reflected in the income assessment amount of recipients' countable income. However, certain veterans' benefits, classified as public transfer income, are exceptionally excluded from income assessment, and amendments to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o expand this exclusion are pending. Despite this, clear standards and grounds for excluding or deducting veterans' benefits from the income assessment amount under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re lacking. Therefore, systematic and objective evidence is required to support such determination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key characteristics of veterans' benefits and public assistance system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ss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ystems, and provide supporting data and policy guidance on whether and how veterans' benefits should be deducted from income assessmen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nd key characteristics between the veterans' welfare systems and public assistance benefit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to use these findings as a basis for policy judgment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future supplementary application, such as whether and to what extent veterans' welfare benefits can be deducted from the income assessment amount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to suggest related policy implications.

A comprehensive review of international cases suggests that deductions for veterans' compensation benefits that are currently non-deductible may be justified. However, the level of such deductions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Moreover, in Korea's current veterans' compensation system, allowances primarily serve to enhance the level of coverage for certain groups, rather than being simply supplementary expenditures. As a result, extending additional deductions to groups with higher disability levels may raise equity concerns among beneficiaries. Nevertheless, for allowances that entail substantial additional costs, the application of deductions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a process of social consultation.

In countries like the US and France—which deduct allowances that compensate for additional expenses—core veterans' compensation benefits, such as disability pensions, are generally not deducted. Most countries apply deductions selectively rather than across all benefits. This practice highlight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veterans' compensation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Key word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upplementary System, Veterans' Benefits, Income Assessment, compensation